

630.951
L293L
1999 v.4

19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8. 11. 12

(축산업구조개선)

총6권중 제4권



농 립 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9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9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시스템운영과(전화 589-2039)
 - 구입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총 무 과(전화 589-2034, 2036, 2048)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3
제3장 공공사업	1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5장 보칙	23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5
1. 배경	27
2. 주요골자	28
3. 주요 변경사항	32
4. 해설	36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965호)	55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	107
V. 참고사항	137
1. 42조원 지원계획	139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141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151
2. 토양개량사업(자율)	180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02
4. 발기반정비(공공)	212
5. 경지정리사업(공공)	232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60
7. 배수개선(공공)	272
8.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5
9.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331
10.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57
11. 농촌생산기반조사 및 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공공)	375
① 지하수개발조사 ② 농업용수수질조사·연구 ③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④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412
13. 지역특화사업지원(공공)	427
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②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14. 서남해안간척(공공)	462
II. 농업기계화	481
15.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83
① 일반농가 ② 벼직파 및 밭작물용 ③ 생산자조직 ④ 쌀전업농	
16.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575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② 농기계수리봉사지원 ③ 광역농기계수리센터설치	
17. 시설농업기자재생산 및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공공)	612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②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	
III. 생산 및 유통개선	627
18.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자율)	629
19.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51
20.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공공)	654
① 규모화촉진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93
21. 고품질수량증자개발(공공)	695
II. 생산 및 유통개선	705
22.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707
① 시설원예 ② 노지채소 ③ 특작 ④ 과실	
23. 농산물규격출하(자율)	800
① 포장자재비지원 ② 포장개선시범	
24. 생산자조직육성(자율)	822
25. 산지유통기반확충	83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및 집하장시설보완 ②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26.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건설(공공)	891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및 공판장건설 ② 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보완	
2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922
28. 농축산물판매촉진(공공)	933
29. 농산물물류센터(시설)건설(공공)	938
① 물류센터 ② 소비자단체물류시설	
30.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959
31.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출하촉진자금(공공)	976
32.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983
33.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90
34.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1013
35. 수출농산물저장시설설치(공공)	1019
36. 우수농산물수매 및 유통지원사업(공공)	1026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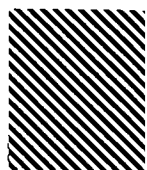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1043
37.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자율)	1045
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② 축산분뇨처리시설 ③ 경주마육성사업	
38.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107
39.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120
40. 소산업정보화사업(공공)	1135
41.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141
 II. 생산 및 유통개선	1151
42.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1153
43.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159
①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② 등급판정	
44. 경영상담·홍보 및 기술개발(공공)	1186
① 경영상담 및 홍보 ② 가축공제 ③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45. 축협조합 경영개선(공공)	1199
46.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공공)	1211
47.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216
48.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공공)	1234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②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49.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258
50. 축산자조금(공공)	1266
 III. 가축개량	1271
51. 가축개량사업(공공)	1273
① 한우개량 ② 젖소개량 ③ 돼지개량 ④ 닭개량	
52.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311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19
5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및 환경농업지구조성(자율)	1321
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② 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④ 환경농업교육사업	
54. 농촌가공산업육성(공공)	1371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특산단지육성 ③ 농산물가공공장 경영·기술지도 ④ 명품개발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57
55. 농림기술개발(공공)	1459
56.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468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57. 기술보급사업*(공공)	1488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III. 인력육성	1515
58.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517
59. 전업농육성(자율)	1552
60.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자율)	1597
6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15
62. 농업계학교동교육지원(공공)	1627
①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 ②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63.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8
IV. 소득원개발	1677
6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679
65. 농공단지육성(공공)	1739
66. 한계농지정비(공공)	1756
67.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770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 생활환경개선	1785
6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787
① 일반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도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69.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공공)	1867

제6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891
70.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893
71.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897
72. 임도시설(공공)	1902
73. 영림계획(자율)	1907
74. 임업기술개발보급(공공)	1912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17
75. 임산소득증대(자율)	1919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정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76. 임산물이용가공 및 저장시설(자율)	1944
77. 임업협동조합 및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공공)	1956
① 임업협동조합육성 ②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7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967
79. 합판 및 보드류시설지원(공공)	1997
III. 인력육성	2003
8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05
81.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011
① 임업전문인력양성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IV. 환경임업육성	2023
82.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025
83. 사방사업(공공)	2031
84. 산림생태보전(공공)	2036
85. 산촌종합개발(공공)	2043
V. 산림자원조성	2055
86. 해외조립사업(자율)	2057
87. 산림조성(공공)	2063



I. 사 육 기 반 학 층

여 백

I.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이상수)입니다

1. 목적

- IMF이후 환율상승 등에 따른 사료비 및 자재대 인상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절감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유희지와 부존 조사료 자원을 활용한 축산물 생산 이용으로 식량자원화
 - 조사료 생산 기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2. 시행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한우·젓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벼짚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공급체계 확립
- 청초기 산품배기운동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96	'97	'98 (예산안)	'99	2000	2001-2004
총사업비	61,600	63,333	63,333	49,429	57,143	228,572
보 조	19,700	19,000	20,000	18,000	20,000	80,000
음 자	17,900	19,000	20,000	22,000	20,000	80,000
지 방 비	8,500	9,500	9,500	-	-	-
자 부 담	15,500	15,833	15,833	9,429	17,143	68,572

※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 (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목로개설·용수개발·전기시설·부지정지·목책시설 및 진입로개설사업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및 사료작물재배사업(답리작 포함)
- 볏짚등 사료화 : 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 볏짚(보릿짚)암모니아처리사업
- 장비 및 기타 : 조사료생산장비, silo시설, 조사료물류유통기지지원사업 등
- ※ 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1> 참조
- 청초기 산플베기운동 : 산플베기운동 참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나. 지원대상

- 한우 : 젖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5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 산플베기운동 : 실직자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지원분(경쟁력강화사업등 포함)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3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 및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등 지원비율은 <별표 2> 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가 포함되어야함
-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15년(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5%
- 산품배기 : 보조100%, 1인당 1일 8시간 기준 22,000원

라. 사업 시행체계

- 사업 신청(사업희망자→시·군)→사업타당성 검토(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발위)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시·도예산 배정(농림부)→시·군예산배정(시·도)→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사업대상자(농가)
- 산품배기운동 세부사업 시행지침은 별도 시달

마.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발위 심의를 받도록 함

바. '99 사업비 내용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계
용 자	보 조	계			
백만원					
22,000	18,000	40,000		9,429	49,429

※ 청초기 산품배기운동 예산은 별도 시달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정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 한 후 사업시행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사업비지원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3)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시공 제한 및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할 것
 - 계약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 관계관 입회 및 청약자·낙찰자 공개
 -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는 시공자(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징구토록 할 것

라. 기타사항

- 지방 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사업의 지도·감독 및 평가실시
- 축협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비료·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은 <별표 3>에 의하여 추진
- 농촌지도기관 및 관련단체
 -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은 『농가유형별·경영규모별 조사료확보 보급모델』을 개발하여 시·군단위 행정 및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급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군에서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추진 기록장부와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월 소요액을 시·도로 신청하고 시·도에서는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에서는 월별 소요액을 읍·면사무소 및 시·도에 배정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여 지원자금 집행
- 시·도 및 축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자금에 대하여는 정산시 자금회수 또는 집행 제외
 -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시 별첨[서식3]에 의거 정산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전기·수도·도로시설	시설설치	12년	매매·양도	○ 사업자의 질병, 사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 시설·기자재의 화재, 손·망실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을 거쳐 사후관리를 해제할 수 있음
영구목책	시설설치	15년	"	
- 콘크리트재	"	10년	"	
- 철 재	"	5년	"	
- 목 재	"	5년	"	
사일로시설	시설설치	15년	"	
- 철근콘크리트재	"	10년	"	
- FRP재	"	10년	"	
트랙타(트레일러포함)	구 입	5년	"	
경운기(트레일러포함)	"	5년	"	
기타 조사료생산용 장비	"	5년	"	

나. 보고

○ 사업계획·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 고 일	비 고
- 사업계획(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매년 3. 10한	< 서식 1 >
- 사업추진실적	시·도	익년 1. 20한	< 서식 1 >
- 사업추진·점검실적	시·도	매분기 익월20일한	< 서식 2 >

※ 하반기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6. 2000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5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의 쌀 전업농(생벚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

라. 구비 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마.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자
- 초지·사료포부지를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한우 및 젓소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 20ha 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 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 농업회사법인(생볏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

바. 선정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다. 기타사항

- '99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세부사업내용

1. 조사료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지원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
- 진입로(목로)개설 : 목장·초지의 진입로·목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 지원우선순위

- 휴경지, 한계농지의 단지화 지역
- 대상면적이 넓고 참여농가가 많은 지역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한하여 지원하되 2~3개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지원우선순위
 - 휴경지, 한계농지의 단지화 지역
 - 대상면적이 넓고, 참여농가가 많은 지역
 - 조사료생산기계화 단지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다.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영구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 우선순위
 - 기성초지관리자 및 신규초지조성자
 - 불경운초지 및 임간초지
 - 경사도, 요철 및 자갈·돌이 있어 방목이용이 불가피한 지역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 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 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생산 이용

가.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 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하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자재공급
 - 목초종자
 - 축협중앙회장(지역축협·낙협 포함)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별표3]정책 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 석회 및 비료
 - 농촌지도기관의 토양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비료는 초지조성용 복합비료를 기준하되, 가격이나 비용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비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농·축협을 통한 일괄구매 또는 구매처 알선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 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 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하급초지에 한하여 지원
- 유�휴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과 연계추진

다. 사료작물(전작사료포·답리작) 재배

- 재배면적 : 시·군의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계획중 전체 재배면적의 70%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0%수준은 농가 자력에 의한 의한 권장사업으로 추진
- 재배대상지 : 경사, 구릉지등 사료포(田作), 휴경지, 한계농지, 답리작 시범마을, 조사료기계화단지등
- 시·군은 농촌지도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

< 종자공급 >

- [별첨3]의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다만, 권장 사업은 농가자력 조달 가능

< 비료공급 >

- 시장·군수는 재배농가별 비료수요량을 조사하여 농·축협을 통하여 재배농가에 공급(다만, 비료를 공급코자 하는 농·축협은 비료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비료를 공급)
 - 보조금은 농·축협에 직접 지급토록 하며 농가에게는 현물로 보조
 - 농가에서 구입한 비료에 대하여 현금지원은 불가
 - 사료작물용 비료를 일반 농사용 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
- 사료작물재배용 비료소요량 : 시장·군수가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농촌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주요 사료작물의 파종량 및 시비량(예시)

(단위 : kg/ha)

작 물 명	파종량	기준 시비량 (질소-인산-가리)	가축분 퇴비 사용기준		
			가축분 퇴 비	보충시비소요량	
				질 소	가 리
호 맥	180	150-100-100	4,000	80	54
이탈리안라이그라스	40	200-150-150	10,000	140	155
수수, 수단그라스	50	200-150-100	7,500	125	101
연 맥	180	150-150-100	4,000	80	74
유 채	20	150-150-100	4,000	110	54
옥 수수	30	200-200-150	7,500	125	101

- 시장·군수는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가급적 가축분퇴비를 사용토록 권장·지도

3.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

가. 볏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매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결정(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군과 지역축협(낙협)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

나. 생뿔짚 등 곤포silage제조 사업

○ 목 적

- 벼재배와 연계한 생뿔짚사료화이용과 논뒷그루등 사료작물재배의 일관
기계화작업으로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축산경영 합리화 도모

○ 대상작물

- 콤바인 등으로 수확한 생뿔짚
- 벼 수확후 재배한 논뒷그루 사료작물(맥류·이타리안라이그라스등)
- 목초 및 청예사료작물(Straw류) 등

○ 대상지역

-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ha이상 논외 경지정리지역(평야지대)
- 대상작물 이용면적이 전체 20ha내외의 집단화된 생산지역

○ 대상자(우선순위)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 전업농
- 소전업농중 3~5호 단위로 조직한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축협
※ 협업체의 운영은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운영 요령에 준함

○ 제조공정

- 벼수확·예취 → 즉시 베일링(또는 발효제첨가) → 랩포장 → Silage제조
→ 사료이용[原形뿔짚·사료작물 → 가공처리이용]

○ 생뿔짚 등 곤포 Silage제조 장비 : [별표4] 참조

- 곤포 Silage필수장비 : 원형베일러·랩피복기·적재기

○ 농기계·장비구입 및 관리

-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하고 사후관리(A/S 기간 최소한 1년이상)가 용이한
기종을 선정구입

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조성 사업

- 조사료 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협업체·조합 및 농가들이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조사료생산장비를 구입 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상지역(대상자) 선정조건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단지화되고 전업규모 이상의 소 사육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답리작시범마을, 조사료생산단지를 구성하여 농기계의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일관기계화작업이 가능한 지역
 - 신규초지의 조성 또는 기성초지의 대리관리자 지정 등에 의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휴경지 또는 한계농지를 활용하여 초지나 사료작물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
- 단지 및 사업규모
 -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 10ha 이상
 - 소사육농가 : 3농가 이상(한우 및 젖소농가를 구분하지 않음)
 - 농기계구입 : [별표 4] 참조
 - 기본장비(동력원) : 중대형 트랙터
 - 부속작업기 : 사료작물재배, 수확(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작업기 일체
 - 농기계보관창고 : 농기계 공동보관용 창고 50평 내외
 - 지원규모 : 단지별 실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되 단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 단지조성 및 정관작성
 -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의 합의에 의한 단지의 구성 및 사업계획서의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회원의 탈퇴·가입 등 정관변경시 시장·군수에게 변경정관 제출)
 - 단지운영정관에는 임원의 선정·임무, 기계의 구입, 보관, 수선, 교체, 이용 및 회원의 임무·책임등 단지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함

○ 단지운영요령

- 농기계·장비의 보관은 회원공동용 창고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기계의 이용은 사업목적대로 조사료생산 작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일반 농사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별 이용료 규정과 이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하고 단지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부는 도에서 일괄 인쇄하여 배부, 단지별로 비치 기록토록하며
- 이미 조성된 단지를 포함한 모든 단지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분석하여 보완
- 농기계·장비의 사용료는 단지운영비와 기계의 감가상각에 따른 기계·장비 대체를 위한 기금적립등 단지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
- 농기계·장비의 운영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인근 농가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위탁작업을 실시하여 가동을 제고

○ 농기계·장비구입 및 공동관리

- 농기계, 장비구입을 위하여 단지회원 및 관계자로 단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기종별 수량, 구입방법, 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
- 단지위원회에서는 조사료 기계·장비를 시·군 또는 지역축협(낙협)에 신청하여 축협중앙회를 통해 공동구매 하거나 직접 공개입찰방법 등에 의해 공정한 방법으로 구입(A/S기간 최소 1년이상 의무화)
- 농기계·장비는 단지 공동소유로 관리운영

○ 조사료생산장비 구분

- 생산장비
 - 동 력 원 : 트랙터, 경운기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등
- 처 리 장 비 : 수확기, 곤포기, 포장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 반 장 비 : 로다, 트레일러

4. 장비 및 기타

가. 조사료생산용 농기계·장비지원

- 조사료생산용 농기계·장비는 조사료기계화단지·생벚짚등 곤포사일리지 일관 기계화시범사업 대상자와 농업회사법인·협업체·영농조합법인·조합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
 - 개별농가는 1대, 생산자단체 등은 2대이내, 3대이상인 경우는 생벚짚곤포 사일리지사업 또는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사업으로 지원
- 개별농가는 초지·사료작물재배 면적이 호당 3ha이상 이거나 쪼소(착유우) 50두, 한우(성우) 100두이상인 경우 지원
 - 2~3호가 협업체 등을 구성하여 지원조건 충족시에는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나. 조사료생산용 농기계·장비구입 및 품질관리

- 시·군은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조사료생산용 농기계·장비는 사업농가의 경영 규모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 구입토록 지도
 - A/S기간 최소 1년이상인 기종선정을 의무화 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축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지역축협(낙협)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 생산용 농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 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농기계·장비의 개별 구입을 병행 추진

다. 조사료 저장용 silo 설치

- 대상자 우선순위

- 젓소(착유우) 10두이상, 한우(성우) 20두 이상 사육농가중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농가

- Silo시설이 없거나 간이 silo(토굴형)를 영구 silo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지원기준 : 호당 2기 이내(50톤 × 2기)

- Silo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랜치 또는 FRP silo

- Silo 용량(1기당) : 50톤(78m³) 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맞도록 30~100톤 내외 조정 가능

- ※ 연간 2모작에 의한 ha당 생산량 : 100톤

- 옥수수 60톤, 호맥·연맥등 40톤

- 시·도(시·군)는 토목기술관련부서 및 농촌지도기관의 협조하여 silo설계 및 이용에 관한 기술 보급

- 축협중앙회장은 기자재의 공동구매 또는 사업지도

라. 조사료 물류유통기지 설치

- 시·도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을 통하여 축협(낙협)에 지원

- 대상지역 :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각1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중부권부터 추진

- 사업내용 :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부대시설등 지원

- 기 능 : 조사료 및 목초·사료종자 상설판매소

<별표 2>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				지원단가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		70	30	km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용수개발						
생 산	전기시설	}				km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ha당 3백만원	
	부지정지						
	영구목책시설						
	진입로개설						
조 사 료	초지조성	}	-	50	50	별도시달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보조지원사업분)						
장 비 기 타	벚짚암모니아처리	}	-	50	-	50	
	생벚짚등곤포silage						
기 타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	-	-	70	30	<별표 4>에 의함 “ 대당 5백만원 50평이내(평당30만원) 1기(50톤)당 5백만원 개소당 2,000백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장비보관창고						
	silos시설						
	조사료물류유통기지						

- ※ ① 지원단가는 상한액이며 그 이상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
- ②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③ '99년 실제 적용할 지원 단가는 필요시 별도로 정함
- ④ 부지구입비는 자부담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

종자공급원칙

종자신청 · 보조사업자가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직접 신청

종자공급 ·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직접공급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축협(낙협)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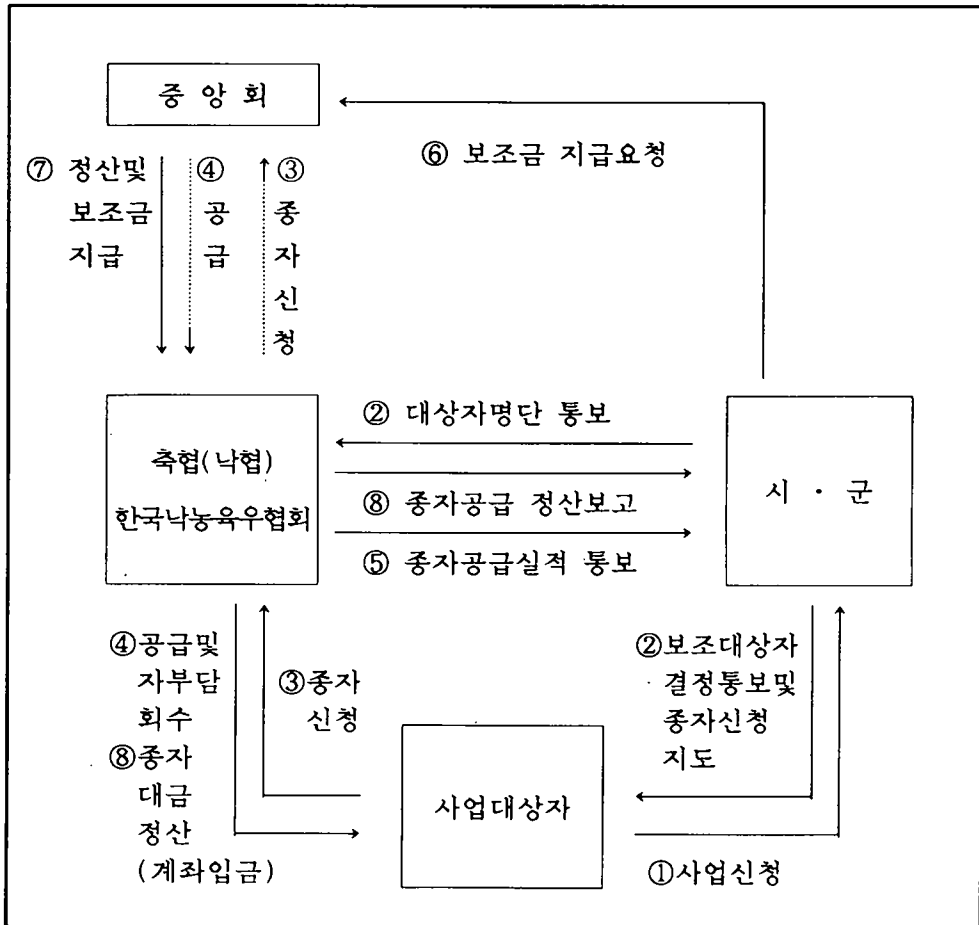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사업대상자(초지조성 및 관리, 사료작물재배) 명단을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
 - ※ 한국낙농육우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TEL 02-588-7055, FAX 584-5144)
- 종자신청지도
 - 사업대상자가 직접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축협(낙협)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 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축협중앙회(도지회)에 축발기금 지급 요청
- 축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축협(낙협),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 신청 접수. 단, 축·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로부터 인수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 종자공급
 - 축협(낙협)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징수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종자 공급 체계도



- 주) 1.→은 축협·낙협만 해당됨
 2. ⑧ 종자대금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별표 4>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예시)

작업명	농기계명	규격	예시가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	70HP내외	34,000천원	벼농사용 농기계사용 (자력확보)
경운	플라우	4연	2,200	"
정지	로타베이터리	200cm	3,300	"
시비	퇴비살포기	4톤	8,700	"
파종	파종기	320kg	7,400	"
방제	동력분무기 (주행형)	400ℓ	2,800	"
운반	트레일러	4톤	2,600	"
곤포 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 드럼폭 174cm내외	27,000	필수지원
	랩피복기	랩피복기	13,000	"
	적재기	적재기	4,500	"
예취	모우어	2.1m	7,600	선택지원
집초	레이크	3.0m	3,800	"
합계			116,900	"

- 주) 1. 생볏짚 등 곤포silage는 필수 및 선택지원 기종에 한하여 지원
(융자한도액 40백만원)
2.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는 전 기종에 대하여 지원 가능(융자한도액 80백만원)
다만, 곤포장비(필수지원)는 조사료생산기반 20ha이상에 한하여 지원
3. 지역실정에 따라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기종 변경가능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실적

○○시·도

(단위 : 호, 천원)

세부사업내용.	농가수	물 량	축 발 기 금			자 담	합 계
			보 조	용 자	소 계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km					
	용수개발	공					
	전기시설	km					
	부지정리	ha					
	목책시설	km					
	진입로개설	km					
	소 계						
초 지 · 사 료	신규초지조성	ha					
	기성초지보완	ha					
	사료작물재배	ha					
	소 계						
벗짚암모니아처리							
조 사 료 장 비 등	조사료장비	대					
	기계화단지	개소					
	곤포Silage	개소					
	사일로	기					
	기 타						
	소 계						
합 계							

주) 농가수 소계는 중복농가에 관계 없이 각 사업별 총 농가수를 기재하되
합계는 중복농가를 제외한 실제 농가수 만을 기재

<서식 2>

사업추진 점검현황

점검시기	세부사업명	점검실적(개소수)	주요점검내용	조치사항
	· · · ·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합 계				

<서식 3>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고			지방비보조	자부담
		보조	음자	소계		
	(100%)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						
합계							

※ 합계는 총표 합계와 같아야 함

II. 축산분뇨처리시설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최상태, 사무관 최염순) 입니다.

1.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 삭감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 지역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대상 농가에 우선 지원
- 기설치된 농가의 노후기계설비 보완 및 4대강 유역의 특정지역내 소규모 농가에 축산분뇨시설 지원

※ 汚糞法에 의한 특정지역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에서는 모든 축사시설자금의 신규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은 우선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汚糞法 제25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5	1996	1997	1998(P)	1999	2000~2004	
사 업 량	36,678	9,696	5,389	4,662	5,000	25,000	
사 업 비	계	330,062	135,300	158,250	170,375	117,250	853,525
	보 조	119,715	59,050	81,125	88,188	61,625	451,063
	용 자	177,236	59,180	46,275	49,312	33,375	249,037
자부담	33,111	17,070	30,850	32,875	22,250	153,425	

5. 19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 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 지역
-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개별)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기지원분을 포함한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축산분뇨시설을 1990.12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농가

(나) 공동시설·통합제조시설등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통합제조시설은 임업조합 포함)
 - 공동시설은 1990.12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

(3) 사업내용

(가) 단독(개별)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 정화방류시설 : 활성오니법시설, 산화구법시설, 톱밥토양여과법시설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에 저류조 시설 포함)

-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 스키드로다(트랙타·경운기등 운반장비 제외)

(나) 공동시설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 저장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바큇카·압롤카·살포차량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시설

(라) 톱밥제조시설등 : 공동시설공급용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마)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자부담분 포함)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단가(조정시 별도 통지예정) (단위 : 천원/㎡)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3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기준(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등 축사 신·증축계획면적 포함)
- ② 젓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은 닭 평사, 말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오리·산양·말 이외 기타가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
- ⑤ 노후기계설비 보관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 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자부담분 포함)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개 별 시 설	300	200			
공 동 시 설	1,500	800	1,000		
툰밥제조시설	150				

- ※ ① 사업비에는 부지구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음
- ② 나환자 정착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④ 닭 케이지의 경우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⑤ 돼지 무창돈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 전체 돈사가 무창돈사일 경우에만 1.4배를 가산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여 적용
- ⑥ 노후기계설비 보안을 위한 지원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설비의 교체에 따른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기존 건물의 개·보수비는 자부담

3) 지원조건

- 단독시설·공동시설·툰밥제조시설
 - 지원비율 : 보조 50%이내, 융자 30%이내, 자부담 20%이상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 : 연 4.5%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100%

4)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자부담분 포함)

-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 10백만원이내
- 축산분뇨 운반장비 : 30백만원이내
- * 축산분뇨퇴비처리 및 운반장비는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4) '99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지원예산액(농특회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별·공공시설	4,980	54,875	32,925	87,800	21,950	109,750
정착촌구조개선	10	6,000		6,000		6,000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10	750	450	1,200	300	1,500
합 계	5,000	61,625	33,375	95,000	22,250	117,250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가) 단독(개별)시설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나)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톱밥제조시설등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금집행, 사업시행과 그 지도·감독,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등 본 사업추진상의 제반업무 수행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4-9431~3)
- 시·도 : 축산과(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

(3) 사업기간 : 1999.1.1부터 1999.12.31까지(1년)

(4)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발위)→대상자 선정(시·군, 시·도)→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시·군에 예산배정(시·도)→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사업대상자(농가)→보조사업 교부신청(사업대상자→시·군, 시·군 경유 시·도)→보조사업 교부결정(시·군, 시·도가 시·군 경유)→사업대상자→축산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사업 완료(사업자)→준공검사(시·군)→보조금집행(시·군, 시·도)→사업실적·정산 보고(사업대상자→시·군→시·도→농림부)

(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등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로하여 1999.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1999.1.31한 선정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도에 구성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사업계획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자료를 함께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보조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전문가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요령에 의하여 운용
 - 시·군·자치구 : 농업기술센터·축산담당·환경담당 공무원, 대학,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및 축협조합의 축산분뇨시설관련 전문가
 - 시·도 : 농촌진흥원·축산기술연구소, 축산담당·환경담당 공무원, 대학, 농어촌진흥공사 지사 및 축협중앙회 도지회의 축산분뇨시설관련 전문가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기술연구소·축협중앙회·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또는 민간전문컨설팅기관(정착촌은 한성협동회)에 협조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평가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을 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사육규모, 축산분뇨·세정수의 발생량, 처리시설능력, 운영비 부담등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교부조건을 반드시 붙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 신청 및 융자금 신청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등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원칙적으로 당초 합리성 있게 검토하여 확정 통지한 보조금교부결정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부득이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변경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 변경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변경승인내용을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 보고

(7)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汚糞法 제24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행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때는 허가청은 汚糞法 제26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를 한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8) 축산분뇨처리장비등의 정보자료 제공

- 축협중앙회는 汚糞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자,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자와 축협중앙회가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업체”로 선정한 업체의 각 현황을 시·도, 시·군 및 축협조합등 생산자단체에 각각 배부하여 안내
-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협회자체의 축산분뇨처리시설기계품질보증업무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 받거나 축산기술연구소 및 축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축산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등의 종류별 시공 또는 제조·판매업체, 장비의 제원(처리능력·규격·용량등), 거래가격, 연락처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시·도, 시·군, 축협조합등 생산자단체에 배부하여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적극 알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및 자금계획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기계·장비에 관한 시세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축협중앙회와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시 이를 활용하거나 사업대상자에게 알선

(9) 시공업체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공동시설과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단독시설을 발주하거나 부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축협중앙회의 선정업체,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및 관련전문기관에서 안내하는 우량업체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법령에 의하는 경우 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 및 축협의 관계자가 입회하고, 계약청약자 또는 낙찰자를 공개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축산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시에도 이를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의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위의 우량 유자격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

(10) 지명경쟁입찰제 도입실시

- 실시주관 : 사업대상자(사업주관기관과 축협이 상호 협의하여 행정업무 지원)
- 입찰대상 : 공동시설
- 실시지역 : 전국
- 입찰참여 시공업체 : 사업대상자가 건설업면허소지업체(건물)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시공업등록업체(기계설비)등 시공능력이 있는 우량 유자격업체를 시공업체로 선택하고, 이중 2개업체 이상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 유효
- 기타사항 : 낙찰예평가,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여업체의 시공능력평가서를 작성등 지명경쟁입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시에 시·도지사가 정하여 시행

※ 기타 입찰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참조

(11)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모든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 경우 “축산분뇨자원화 시설표준설계도”(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 '99.1~2월중 공고예정) 및 “축산폐수정화 시설표준설계도”(환경부, '95.11)등을 활용 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설계비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으로 하되,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건설부 공고 제1993-227호)의 75% 적용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자재 및 기계·장비의 규격화·국산화 촉진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규격기준품을 사용하고, 기자재는 축협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장려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
 - 감리비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으로 하되,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건설부 공고 제1993-227호)의 75% 적용
 - 시·도는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단독시설은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나환자 정착촌은 한성협동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검사시 각각 확인)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토록 조치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12)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상의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관리방법등 기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축협중앙회·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건설팀 및 지역축협·업종조합의 축분처리기술상담실을 활용
- 축협중앙회는 '99년도 본 사업대상자 교육계획을 '99.2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 이전에 실시
- 축협중앙회는 해당 도와 협조하여 도당 1개소씩 지역축협(업종조합)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축분퇴비의 판매 촉진
- 시·도는 가급적 汚糞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 시설의 설치 권장
 - 도는 축산분뇨 액비화 대상농가를 도당 2~3개소씩 선정하여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본 사업자금 우선 지원등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을 수립 추진
 - 저장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환경부 고시제1997-86호, '97.9.18)

구 분	초 지	농 경 지	
		논	밭
소	1,240 m ² /두이상	2,360 m ² /두이상	1,530 m ² /두이상
돼 지	470 m ² /두이상	900 m ² /두이상	1,580 m ² /두이상

- 톱밥등 수분조절재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톱밥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톱밥 대체 수분조절재 사용의 공법 권장
 - 수분조절재로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하는 경우 발효된 수분조절재를 건조시켜 재차 수분조절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영경비 절감 유도
- 표준설계도서 이외의 방법으로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의 (11)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지침에 의하여 汚糞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시공토록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후관리 및 사후봉사(A/S)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 정화방류시설과 저류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설치대상자에게는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퇴비사를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저류조를 설치하는 농가의 경우 汚糞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류조의 설치기준을 적용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스킨드로다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하되 구입기종은 가급적 중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중량 1톤 미만의 장비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
- 트랙터 부착용 스킨드로다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소형 톱밥제조기,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농가에 지원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제작·배부

-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98.1~2월중 공고 예정)
 - 종류 :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저장액비화, 통풍식·교반식 톱밥발효시설)
 - 배부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축협조합 등
- 환경부('95.11)
 - 종류 : 축산폐수정화시설 표준설계도(저장액비화, 통풍식 및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톱밥토양여과상, 회분식활성오나법, 산화구법)
 - 배부처 : 시·도 환경보호과

다. 사업자금의 집행과 정산

(1) 적용 원칙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99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등 관계법·규정과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제13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자금을 집행 관리

(2)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역의 축산여건등을 고려한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3)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축산정책과)에 자금을 배정요구
 - 보조금 및 융자금 구분 기재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자금배정요구를 종합하여 농림부(축산정책과)에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매월 배정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요구
 - 다만, 사업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요구 가능
-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은 매달 20일까지 농림부에 도착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4)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3·4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 3·4>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축협중앙회와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서 제공받은 정보자료, 2개이상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의 가격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세조사결과등을 근거로 하여 축산분뇨처리의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여 정산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보조·용자사업의 축산분뇨처리시설,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용자, 자부담으로 구분) 내역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국고 보조 50%이내, 용자 30%이내, 자부담 20%이상(정착촌구조개선은 국고보조 100%)의 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지침에 의하여 축종별 축사m'단위당 사업비단가와 개소당 사업비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을 지켜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는 낮은 가격의 공사단가를 적용)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한 검정 및 정산(자부담분 포함) 임무가 있으므로, 특히 용자금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축협조합이 대출을 취급했다고 하여 검정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용자금을 유용·전용하거나 허위,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신용보증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자부담분 포함)에 충족되는 시설와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조치
 -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1999.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변경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동 상태등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회수등 적절히 조치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2) 사업추진상황 전산입력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 및 농림업무평가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의거 별지 <서식5>에 의한 '99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추진상황을 사업대상자별로 작성하여 시·군(시·도)의 농정담당부서의 전산망을 통하여 1999.4.30한 전산입력
- 입력자료는 <서식5>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담당계장이 작성하고, 담당과장이 최종 확인하여 시·군(시·도)의 농정담당부서에 전산입력을 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본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서식5>에 의하여 작성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전산입력

(3)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99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결과보고	'99.3.31한	시·군(시·도) → 시·도(농림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 '99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 사업추진 중간실적보고	'99.6.30한	"	※ 별지 <서식6>에 의하여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실적보고	'99.12.31한	"	
○ '98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99.1.31한	"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단독시설 : 시·군·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면
- 그외 시설 : 시·군·자치구 경유 시·도

나. 신청자격

(1) 단독(개별)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농가
- 축산분뇨시설을 1991.12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축산농가

(2) 공동시설·툽밥제조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협조합(툽밥제조시설은 임업조합 포함)
 - 공동시설은 1991.12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3) 정착촌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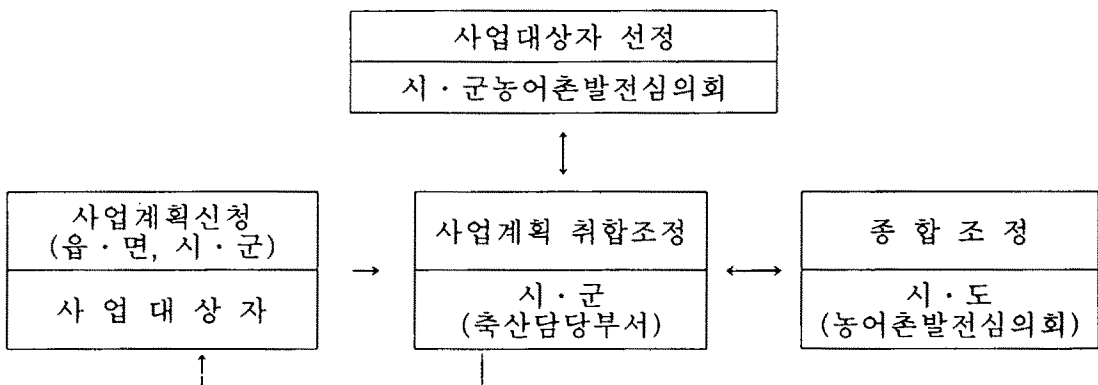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 또는 축산농가

다. 신청절차

(1) 단독시설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도에 구성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사업계획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999.1월말까지 시·군(또는 읍·면장을 경우 시·군)에 제출
- 시·군은 단독시설의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1999.2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2000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1999.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확정된 시·군별 예산배정내역을 1999.12월말까지 시·도에 통보
- 시·군은 자체사업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2000.1.15일까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2) 공동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톱밥제조시설등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도에 구성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사업계획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1999.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1999.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위의 개별시설의 신청절차에 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늦어도 1999.10월말까지는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2000.1.15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지원조건

- 대상사업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정착촌구조개선 · 톱밥제조시설
- 지원비율 : 보조 30%, 융자 70%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 : 연 4.5%

마.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과 첨부서류(시·군 또는 시·도에 구성된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사업계획검토의견서 추가)
 - 사업희망자는 시·군(시·도)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바.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본 사업지침에 의함

사. 기타사항

- 1999년도 본 사업지침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신고기관
 - 중앙 : 환경부 생활오수과(02-504-9255, 500-4296/7)
 - 시·도 : 환경담당부서
 - 시·군 : 환경담당부서

7. '99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단독·공동시설					정착촌·툽밥제조시설등					합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보조	용자	자담	계		국비보조	용자	자담	계		국비보조	용자	자담	계
부산	2	26	16	11	53						2	26	16	11	53
대구	8	88	53	35	176						8	88	53	35	176
인천	57	630	378	252	1,260						57	630	378	252	1,260
광주	1	9	5	4	18						1	9	5	4	18
대전	1	9	5	4	18						1	9	5	4	18
울산	4	44	26	18	88						4	44	26	18	88
경기	915	10062.5	6037.5	4,025	20,125						915	10062.5	6037.5	4,025	20,125
강원	390	4,304	2,583	1,722	8,609						390	4,304	2,583	1,722	8,609
충북	300	3,338	2,003	1,335	6,676						300	3,338	2,003	1,335	6,676
충남	787	8,660	5,196	3,464	17,320						787	8,660	5,196	3,464	17,320
전북	620	6,832	4,099	2,732	13,663						620	6,832	4,099	2,732	13,663
전남	622	6,856	4,114	2,742	13,712						622	6,856	4,114	2,742	13,712
경북	638	7,021	4,213	2,808	14,042						638	7,021	4,213	2,808	14,042
경남	385	4,236	2,541	1,694	8,471						385	4,236	2,541	1,694	8,471
제주	250	2,759	1,656	1,104	5,519						250	2,759	1,656	1,104	5,519
미 통지						20 (10)	6,750 (6000)	450	300	7,500 (6000)	20	6,750	450	300	7,500
합 계	4,980	54874.5	32925.5	21,950	109,750	20	6,750	450	300	7,500	5,000	61624.5	33375.5	22,250	117,250

- ※ ① 단독·공동시설의 사업량은 잠정 계획이며, 사업량은 평균 2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 ② 정착촌구조개선 및 툽밥제조시설등은 사업량을 각각 10개소씩 책정
- ③ ()내는 정착촌구조개선 사업비

<서식1>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 1. 보조사업명 :
- 2. 보조사업자 : 주 소
 성 명(명칭)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4. 사업 기간 :
- 5. 보조금 신청액 : 원
-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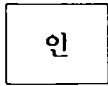
구 분	총소요액	국비보조금	융자금(농특회계)	자 부 담
금 액 부담율(%)				

- 7. 첨부서류
 가.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
 나. 보조금 교부 조건
 다.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등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1999년 월 일

시장·군수(시·도지사)



<서식2>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갑)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위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및 A/S 책임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p>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불임서류 : 1.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지명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p> <table style="width: 100%; margin-left: 300px;"> <tr> <td style="width: 70%;">갑(법인 대표)</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right;">인</td> </tr> <tr> <td>을(공사수급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을의 연대보증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입회 및 승인자(시·도, 시·군 관계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갑(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도, 시·군 관계자)	인
갑(법인 대표)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도, 시·군 관계자)	인										

<서식3>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형식)	제조 번호	수량(대)	단가(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양을작성 여부(○/×)	비 고
						계	국고보조	음 자	지방비 보조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개별시설(시장·군수), 공동시설·정착촌구조 개선·톱밥제조시설등(시·도지사)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 다만, 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계좌입금증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한함
-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4>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비보조	읍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고
○○○○	계 ○○○○ ○○○○ · · ·						
○○○○	계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시장·군수) :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공동시설(시·도지사)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정착촌구조개선(시·도지사) : 축분발효시설, 공동액비화공동시설, 공동퇴비사동
 - 톱밥제조시설(시·도지사) :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융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융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하여 검정 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5>

1999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작성자	소속	(계장)	확인자	소속	(과장)
	성명	(인)		성명	(인)

사업주관기관	시·군(시·도)	¹ 조사기준일	년	월	일
--------	----------	--------------------	---	---	---

1. 일반사항

² 사업체명	³ 사업시작년도	⁴ 구분	1.개인 2.법인 3.회사 4.공동 5.농협 등		
⁵ 대표자	⁶ 주민번호	-	⁷ 전화번호	-	-
⁸ 주소	시도	시군	읍면동	리	⁹ 학력
¹⁰ 직업	1.농업 2.축산업 3.어업 4.임업 5.기타		¹¹ 영농종사경력		
¹² 경영장부 기록여부	1.일별기록 2.주별기록 3.월별기록 4.미기록		개월	¹³ 교육훈련	주

2. 생산기반 사항

[단위: 평]

¹⁴ 기반	자작지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대지	기타
	차용지							
	대부지							
	합계							
¹⁵ 시설	축사	창고	관리사	운동장	싸이로	자동급이급수	목책시설	기타
¹⁶ 농어기구	트랙터	경운기	벼질수거기	예취기	기타조사료생산장비	차량	우형기	기타
¹⁷ 가축	한우	두	젓소(송)	두	돼지	두	닭	수 송아지

¹⁸ 퇴비처리장비	스키드로다	소형톱밥제조기	교액분리기	분뇨건조기	왕겨분쇄기	기타
¹⁹ 분뇨운반장비	바큘카	살포차량	교반기	기타	축사형태	1.슬러리 2.스크래퍼 3.개폐식 4.톱밥축사 5.채래식 등 기타

3. 농어가 경제현황

[단위: 천원]

²⁰ 부채	조합	시중은행	기타	총계	²¹ 자산평가액
²² 예금액	저축	현금		총계	²³ 연간소득
²⁴ 농어업수입	²⁵ 농어업경영비	²⁶ 농어업소득	²⁷ 농어업이외소득		

4. 사업현황

²⁸ 사업축종	<input type="checkbox"/> 1. 소 2. 돼지 3. 닭	²⁹ 사육두수	두(수)
분뇨처리 시설유형	㉓ 개별사업	부업규모처리 시설	<input type="checkbox"/> 1.저장액비화 2.퇴비화 3.톱밥축사 4.정화조 5.톱밥토양여과상 6.기타
		전업규모처리 시설	<input type="checkbox"/> 1.활성오니 2.저장액비화 3.퇴비화 4.톱밥축사 5.정화조 6.톱밥토양여과상 7.기타
	㉔ 공동사업	비료화시설	<input type="checkbox"/> 1.통풍식 2.교반식 3.건조식 4.화력건조식 5.기타
		축산발효시설	<input type="checkbox"/> 1.교반식 2.건조식 3.통풍식 4.생석회 5.기타
	정착층구조개선 분뇨저장탱크	<input type="checkbox"/> 1.축분발효시설 2.공통저장탱크 3.공동퇴비사 4.활성오니 등 기타	
³⁰ 1일분뇨발생량	톤	1일처리량	톤
분뇨처리시설용량	톤/일	총사업비	천원

5. 운영실태

♫ 비료제조업허가	<input type="checkbox"/> 1.유 2.무	비료 판매실적	톤/년
♫ 정화방류시설 가동실태	<input type="checkbox"/> 1.정상가동 2.수질기준초과 3.수시가동		

6. 추진상황 ³⁷

계 획						실 적				
사업명	사업량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사업량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합	계					합	계			

【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고서 기재요령 】

1. 조사시점
2. 사업대상자 또는 단체명
3. 사업대상 선정년도
4. 사업대상자 구분 표시
5.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 성명
6.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 주민등록번호
7. 사업대상자의 시설설치장소 전화번호
8.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현주소
9.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 최종학력
10.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 직업
11.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의 총영농종사경력
12.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대표자의 전문교육훈련실적
13. 경영장부기록 여부사항을 기재
14.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 소유, 차용, 대부(임대)한 토지
15. 소유시설 평수
16. 소유농기구 대수
17. 소유 가축두수
18. 소유 퇴비처리장비 대수
19. 소유 분뇨운반장비 대수 및 축사형태
20. 조합, 시중은행, 사채등 부채상황을 기입
21. 2. 생산기반사항의 자산평가액
22. 예금 및 현금액수 기입
23. 1년간 총소득액
24. 농축어업의 해당년도의 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
25. 농축어업의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일체의 비용
26. 농축어업의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잔액(24-25)
27. 농축어업이외의 총수입
28.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의 사육 축종
29.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의 사육두수 현황
30. 사업대상자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유형 기입
31. 사업대상단체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유형 기입
32.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대상단체의 1일 분뇨발생량 및 1일 처리량
33. 비료화시설 설치시 비료생산량
34. 사업과 관련 민원발생 회수
35. 비료화시설 설치 개인 및 단체의 비료제조업 허가 유무 및 비료판매실적
36. 정화방류시설 설치시 가동실태
37.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서식6>

1999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중간·완료 및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획				실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읍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읍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읍자	국비 보조	읍자		
단독시설	자원화 시설																
		계															
	정방시 화류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동시설	자원화 시설																
		계															
	정방시 화류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용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용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용자	국비 보조	용자		
정 착 촌 구 조 개 선	자원 화 시 설																
		계															
	정 방 시 화 류 설																
		계															
	부 대 기 계 · 장 비																
	소 계																
툰 밥 제 조 시 설 이 동 식 툰 밥 제 조 기																	
합 계																	

※ ① 1. 한육우, 2. 젓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②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개별·공동시설 구분표시) 및 톰밥제조시설·이동식툰밥 제조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Ⅲ. 경주마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 (과장 최상태, 사무관 노수현)입니다.

1. 목 적

-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 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도 제고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 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예산	2000	2001-2004
사 업 량	호		53	27		
사업비	계	12,603	6,031	5,174	3,230	
	용 자	9,863	4,570	3,935	2,365	
	보조(국고)	-	-	-	-	
	지 방 비	-	-	-	-	
	자 부 담	2,740	1,461	1,239	865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사업기간 : 1년

○지원대상

- 경주마를 생산 하고자하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축협, 경주마 생산자협회

○지원내용

- 종빈마, 기반시설, 사육시설, 육성조령시설, 장비 및 기타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1] 참조),

○지원규모 및 조건([별표 1] 참조)

- 개별농가 : 호당 3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등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축협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 균분상환
(단, 종빈마도입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5%)

나. '98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기금)	보조(국고)		
계	23호		3,230	2,365		865	
종빈마 도입	47두		470	423		47	
사육시설등			2,760	1,942		813	

주 :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4-9431)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축산계)
- 한국마사회 : 마사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업양축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농가에게 소액 분산 지원하여서는 아니 됨.
- 월별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의함

○기 타

- 대구·경북 재경지정리 지역은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 회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2월말까지	
○사업추진실적	시·도	반기별	

6. 2000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나. 신청자격

- 종빈마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 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법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구성원의 2/3이상이 해당 축종 사육경력 3년이상이어야 하고 운영실적이 2년이상인 법인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 시·군·구 농발심의위원회 심의후 대상자 선정

※ 사업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조치
- 한국마사회는 종부지원 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라. 구비서류

○ 시행지침서에 의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통합신청서

마. 선정 우선순위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의 종부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 방목장(600평 이상)을 많이 확보한 농가

○ 농발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대상자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되 동 순위자 중에서는 자부담을 많이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별 표 1]

경주마 생산사업비 조정기준

구 분	세부사업	비율(%)		지원규모		비 고
		용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90	10	신규 5두이내 기존 10두이내	10,000 천원/두	○자금지원한도 : 9백만원 -도입단가가 천만원 이하일 경우 투자비율 준수
○기 반 시설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70	30		100백만원/ km 45/km 30/1개공 5.5/km	○노폭 4m, 포장 3m ○노폭 4m ○한전산출실비 적용 가능
○사 육 시설	○마 사	70	30	4.5평/두이내	900천원/평	○사육규모(확보계획두수포함) ×4.5평이내에서 지원가능
	○관리사	70	30	15평/호이내	1,500천원/평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15평이내만 지원
	○창 고	70	30	2평/두이내	600천원/평	○사육규모×두당 지원 규모 범위내에서 지원
	○패 독	70	30	12평/두이내	100천원/평	○12평×마방수 범위내에서 지원
○육성조 련시설	○실내마장	70	30	300평/개소	1,000천원/평	
	○자동 보행기	70	30	0.17대/두	4,900천원/ 두	○종빈마 보유두수의 50%규모내에서 지원
	○약.목욕장	70	30		500천원/평	○제주도만 지원
	○주 로	70	30		70천원/평	○폭 15m
○장 비	○수송차량	70	30	1대/호	35,000천원/대	○2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조정지)	70	30	1대/호	1,300천원/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등 기타장비	70	30			

※ 조사료생산관련사업비(초지조성 및 장비포함)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원

※ 상기 지원기준 및 세부사업명을 벗어난 지원 불가

※ 신규참여농가의 경우 육성조련시설 및 장비지원은 2년차이후 지원

※ 지원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담 추진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3억원 초과 지원 불가

※ 지방비 보조가 있는 경우 투자비율조정 가능(단 용자는 70%초과 못함)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실적 보고

1. 투자실적

구 분	사업 대상자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음자	자담	합계		음자	자담	합계
종빈마도입									
기 반 시 설									
사 육 시 설									
조 련 시 설									
장 비									
합 계									

2. 사육실태

구 분	개별농가		축협, 법인등		합 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초지보유(ha)						
사육두수(두)						
자마생산(두)						
경주마공급(두)						
사업대상자수(명)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 및 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소계 ○○○ ○○○						거래처등 기타필요한 사항
○○○○	소계 ○○○ ○○○						
○○○○	소계 ○○○ ○○○						
합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이재용, 이상수),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진국, 사무관 신대식)입니다.

1. 목 적

- 가축사육시설의 규모화·단지화를 통한 시설현대화 추진
- 축산기자재의 구입, 생산물의 판매, 방역, 분뇨처리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경영의 이점을 살리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98년도까지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성중에 있는 기존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보완사업만 추진
 - 신규단지 조성사업은 중단('99~2000년)
- 기존축산단지에 대하여 사양관리기술·방역·경영지도를 통하여 경영개선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5까지	'96	'97	'98	'99예산안	2000-2004
사 업 량		83 개소	71	77	30	16	
사 업 비	계	2,721	880	1,007	408	325	
	기금보조	220	61	70	43	1	
	기금융자	1,791	553	627	139	226	
	지방비	145	50	34	26	1	
	자담	565	216	276	200	97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기반시설 : 부지정지, 진입도로, 목도, 용수개발, 전기인입시설 등.
- 건물설치 : 축사, 창고, 인공수정설 등의 건물시설
- 기계·기구 : 축산물생산(사료급이기·급수기등), 운반처리용 차량·기계·기구 환기·온도·습도등 환경조절시설, 가축방역용 장비류등
- 기타시설 : 계란가공시설, 계란집하장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
 - ※ 단, 분뇨처리 관련사업은 별도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지원
 - ※ 가축구입비, 부지·건물구입비, 사료비, 임차료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대상축종 : 한우, 돼지, 닭
- 사업대상자
 - 이미 축산단지 조성계획이 확정 지정된 단지 또는 기초성이 완료된 단지로서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자
 -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단지(지원기준은 축산종합자금제의 시설사업 참조)
 -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입식하고자 하는 자(제주도에 한함.)
 - ※ 재해(농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것) 또는 그외의 사고로 인하여 축사 등 피해를 입은 농가(다만, 법령에 의한 재해대책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함)는 상기 순위보다 우선지원 가능
 - 단지구성원 : 한우는 3호이상, 돼지·닭은 5호이상~10호 이내인 단지

(3) 사업기간 : '99~2000년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액

- 협업체 : 단지구성원당 3억원이내(산란계 5억원 이내)
- 영농조합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지원비율 : 축산단지 지원기준 참조[별표 1]

○ 지원조건(융자)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

나. '99사업비(예산안) 내역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 계	용 자	보 조		
합 계	16	32,482	22,753	22,618	135	50	9,679
한 우	3	1,262	910	775	135	-	352
돼 지	7	15,645	10,951	10,951	-	-	4,694
닭	5	14,775	10,342	10,342	-	-	4,433
교잡우한우대체	1	800	550	550	-	50	2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 축산물유통과(02-504-9436)
- 시·도 : 각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보완사업계획(기존시설물이 현저히 노후 또는 부족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시설의 증·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신청시 사업대상 토지는 단지구성원이 자체로 확보하여 소유권 등기가 되었거나 매매계약서등 부지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법적제한 사항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시설노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첨부 또는 시설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 민원발생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 기관은 추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할것(단, 재신청시 대상지이외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사업규모는 자금능력, 경영능력, 축산분뇨처리능력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조성
- 단지 참여농가는 현재 사업현황과 자금부담능력, 담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단지내에서는 가급적 종축 또는 사료를 통일하여야 하며, 생산물에 대한 판매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육가공(수출)업체, 계열주체 등과 생산·출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규격돈 생산두수의 50% 이상을 수출용으로 출하토록 함.
- 출입차량, 출입인의 소독 또는 통제시설, 방역시설과 자율방역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교잡우의 한우 대체입식 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수립·시행함.
 - 사업량 : 1,000두
 - 두당단가 : 800천원(육자 550, 지방비 50, 자부담 200)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지사)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3) 기 타

-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역은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의 논에 있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등 보다 후순위로 인정

< 행정사항 >

가. 사업자 준수사항

- 단지내 종축 및 사료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공동경영은 의무시행)
- 축종별, 사육단계별 사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양돈단지구성원은 양돈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양돈단지의 경우 계열화업체 및 수출가공업체와 생산,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규격돈을 출하하여야 한다

나. 자금집행 세부요령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99년도 착공사업분부터 적용)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영수증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간이영수증 제외)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기계, 장비 구입비 등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외)
- 당해 연도 계획된 자부담 금을 우선 집행토록 할 것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에 포함 불가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공사 시공부터 완공까지 단계별로 사진촬영
 - '98까지 공정분은 제외할 수 있음

다. 사후관리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별표2 참조)(신규 및 기존단지포함)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
- 여신관리계좌 입금액에 대한 자금집행등 사후관리 철저
-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대상자를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함.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98.9.9개정)에 의거 자부담 노력비는 불인정
- 시·도지사는 조성이 완료된 축산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하고 자금이 상환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실태를 매년말 기준으로 익년 1월말까지 보고
- 기타 세부요령은 축산발전기금 운영요령등에 의함.

다.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관	보고 일	서 식
○ 대상자선정결과 보고	시·도	3.31까지	별표2
○ 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실태 (실적)보고 - 조성중인 축산단지에 한함	시·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별표3 (완료시 사진첨부)
○ 사후관리 실태보고	시·도	익년 1월말까지	별표4

6. 2000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농촌지도소)

나. 신청자격

- 사업대상축종 : 돼지, 닭(한우, 젓소는 제외)
 - 신규단지조성은 제외(기존 단지의 보완사업만 신청가능)
 - 보완사업(기존시설물이 현저히 노후 또는 부족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시설의 증·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경우 당초지원받은 사업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보완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총사육 계획두수는 돼지 15천두, 닭 300천수 이내로 단지를 조성(보완)코자 하는자
 - 단지조성시 과도한 사육규모 증가(확대)로 시설자금의 자부담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여 단지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를 확보한 자
- 민원소지가 없는 자
- 공동사육하는 단지(단, 단지구성원의 개별운영은 제외한다)
- 단지구성원이 돼지, 닭 5호이상~10호이내인 단지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 참조

- 시·도지사는 축산단지조성사업 계획서를 축협중앙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후 '98.3.31까지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중·개축에 의한 사육규모가 기 완료된 사업규모의 5%이상시에만 사전심사를 받고 5%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 신청)
 - 축협중앙회장은 사전 심사요령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라. 구비서류 : 시행지침서에 의한 축산종합자금사업 통합신청서

마. 선정 우선순위

- ① 돼지의 경우 기초성된 단지로서 지역특성 브랜드화업체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축협중앙회, 한냉 및 돼지고기 냉장육 수출가공업체 포함)과 생산·출하 계약을 체결한 단지가 보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닭의 경우 기 조성된 단지로서 종계·부화장을 개선하여 규모화, 현대화하려는 자
 - ②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③ 시설비 자부담 능력과 시설후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된 자
 - ④ 사육경력이 오래된 자
 - ⑤ 이전 명령을 받은 자
 - ⑥ 산란계의 경우 계란집하장, 난가공장 등 유통기능을 확대하려는 자
- ※ 재해(농업재해대책법 및 자연대책대책법에 의한 것) 또는 그외의 사고로 인하여 축사 등 피해를 입은 농가(다만, 법령에 의한 재해대책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금은 제외한 금액에 한함)는 상기 순위보다 우선지원 가능

바. 선정절차

- 사업구분 : 지방공공사업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1월말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지여건을 조사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2.15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 축협중앙회에 심사요청(2월말까지)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예산 신청(3.31까지)

사. 사업타당성 검토

- 축협중앙회장은 도지사로부터 요청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축산단지 및 가축계열화사업계획서 사전심사요령”에 의거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지확인을 한후 심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아. 기타사항

- 양돈단지는 2000년까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향후 신규조성 여부는 2000년도에 재검토 계획임.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단가 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있을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함
- 축사시설은 “논”보다는 가급적 산지나 받기반정비 구역등에 설치토록 유도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논”에 축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받, 산지보다 후순위
- 양돈단지 참여농가는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양돈전문기술 교육 이수후 수료증 사본 제시(단지구성원중 교육 미이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자. 단지조성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대상지의 입지조건
 - 위치, 면적, 인·허가여건(타법의 제한사항여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여건 등)
- 투자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사육 및 시설규모(현재 농가별 규모, 시설후 단지 총규모, 축사별 형태 및 규모, 생산(출하)능력등)
 - 재원별투자계획(공동사업, 세부사업별, 년도별 등 구분)
 - 시설배치도(시설별, 용도별 등 구분)
 - 추진일정(세부사업별로 작성)

○ 경영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경영방법
- 사업비조달 및 상환계획
- 생산물 판매계획(생산, 출하계약 포함)
- 축산분뇨처리방법 및 계획
- 방역계획
- 사료공급계획(사료통일 여부 포함)
- 수지분석

○ 기타사항

- 시설부지 확보내역(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등), 부지에 대한 법적제한 여부
확인서류, 민원발생 해소 관련 증빙서류
- 자본능력(자부담 및 운영비조달) 및 담보능력제시
- 축협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제시
- 축협중앙회의 심사(요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내역 포함)에 필요하여 요구
하는 사항

[별표 1]

축산단지조성사업 지원기준

	재원별투자계획					사업계획작성기준
	보조		읍자	자담	합계	
	지방비	기금				
○기반조성					%	
- 진입도로	20	50		30	100	○ 1km당 1억원이내 선별 지원(노폭 4m, 포장 3m)
- 목도						○ 1km당 45백만원이내 (한우 : 노폭 4m)
- 용수개발						○ 1개공당 : 30백만원이내
- 전기인입						○ 1km 당 5,500천 원
- 부지정지	-	-	70	30	100	
○ 축사신축·증축·개축						<축사시설설치비:평당>
○ 급이·급수시설			70%	30%		○ 한우사 : 300천원 이내 (지붕개폐식은 400)
○ 환경개선시설(자동환기시설 보온시설 등)			이내	이내		○ 개방돈사 : 780 "
○ 창고, 인공수정실, 소독시설 등 부대 시설						○ 무창돈사의 경우 각동별 면적, 소요예산 등을 구분 작성
○ 기타 축사내부시설, 기타관리용 기계장비 등						* 축사표준설계도 - 93-돼지-자(번식) } 연계 - 93-돼지-차(비육) }
						○ 계사 - 육 계 : 340천원이내 - 산란계 : 620 "
						* 축사표준설계도 - 육 계 : 92-10000-파 - 산란계 : 92-30000-타

- ※ 1. '98년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한우단지의 경우 기반조성의 재원별 투자 계획은 '98년 지원기준에 의함
2. 축사설치비중 돼지, 닭의 경우 예시된 축사표준설계시설을 기준한 것이며, 무창축사등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실소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예산반영시 조정될 수 있음(무창돈사의 경우 산출근기 첨부)
- 축사시설내용 및 면적등 동 축사설계개요를 참조하되 동 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3. 지방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지원비율의 상향가능
4. 전기인입시설 및 용수개발비는 한전 및 농진공 등의 설계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적용할 경우 산출 증빙자료 첨부

[별표 2]

축산단지조성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보고

1. 단 지 명 : (축종 :)

2. 사업장위치 :

3. 대 표 자 : (전화 :)

4. 사업규모 :

부지면적	축사면적	부대시설	참여호수	사육목표	비 고
평	동/평	동/평	호	두(수)	사업기간 :

5.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1년차				2년차				합 계							
		지방비		기 금		자담	지방비		기 금		자담	지방비		기 금		자담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6.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인·허가 및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7. 첨부 : 단지별 사업계획서 1부

[별표 3]

축산단지조성사업(계획, 실적) 정산보고

○○ 시·도

- 단 지 명 : ○○○ (대표자)
- 소 재 지 : ○도 ○군 ○면 (전화번호 :)
- 선정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기간 : ○년 ~ ○년
- 참여농가수 : ○호
- 사육두수 : ○두
- 운영형태 :
 - ※ 개별운영, 공동운영, 영농조합법인 유무 등 표기
- 사업계획 변경일시 : ○년 ○월 ○일
 - ※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기재
- 투·융자 현황

세부사업내용		물량	계 획					실 적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기금보조	기금융자	소계				기금보조	기금융자	소계			
기 반 조 성	- 진입도로	km												
	- 목도	km												
	- 용수개발	공												
	- 전기인입	km												
	- 부지정지	평												
	소 계													
사 육 신 설	- 축사신축	○동○평												
	- 축사보완	○동○평												
	- 급이·급수	식												
	- 환기시설	식												
	- 각종내부시설	식												
	소 계													
부 대 시 설 및 기 타 시 설	- 관 리 사	○동○평												
	- 창 고	○동○평												
	- 소독장비 - 기타기계 및 기구	식												
	소 계													
합 계														

[별표 4]

축산단지 사후관리 실태보고

1. 일반현황

- 단지명 :
- 소재지 :
- 대표자 및 참여농가 : 외 호

2. 사후관리조사

(단위 : 백만원)

사육현황		운 영 상 태			년간소득		상 환 상 황			
당초사육계획	현사육두수	정상	휴업	폐업	조수입	소득	당초 음자액	상 환		
								기 상환액	당년 상환액	계
기타 :										

39 가축계열화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이재용),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사무관 신대식)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므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
- 계열사업체의 신규지정을 지양하고 기존계열사업체의 경영개선 방향으로 추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6까지	'97	'98	'99예산안	2000~2004
○ 돼 지	물 량	13개소	2	9	6	
	금 액	43,084	5,290	11,022	15,161	
○ 닭	물 량	14	6	5	1	
	금 액	49,470	7,546	13,173	2,500	
합 계	물 량	27	8	14	7	
	금 액	92,554	12,836	24,195	17,661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사업기간 : '99~2000년(신규사업은 3년차로 추진)
- 지원내용 : [별표] 참조
- 대상축종 : 돼지, 닭
- 가축계열사업형태 : 완전계열화, 부분계열화, 조합형계열화
- 자금지원대상자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축산물종합처리장(이하 축협중앙회·한냉포함) 참여업체

나. 자금지원방법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양돈계열화 사업의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할 경우에만 지원
- 민원발생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단 재신청시 대상지이외 사업계획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이미 다른 축산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가당 축산종합자금사업 지원한도 범위내에서만 지원가능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융자조건에 의함.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출규격돈 생산 소요액의 70%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 계열화사육비 집행계획서 작성방법

- 지원대상업체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로서 수출규격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소요되는 종돈입식 또는 자돈구입비, 사료비,약품비, 위탁사육 수수료
- 작성내용 :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두수, 월간 및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수출규격돈 생산계획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연간 종돈입식비, 기타운영사항

○ 지원조건

- 지원액 : 사업계획 기간내에 분할차등 지원(월별소요액 신청에 따라 배정)
- 지원비율
 - 시설비 : 융자 70%이내, 자담 30%이상
- 상환조건
 - 시설비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8%

나. '99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개소, 백만원)

	신규사업		계속사업 2년차		기존사업 보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돼지	-	-	6	15,161	-	-	6	15,161
닭	-	-	1	2,500	-	-	1	2,500

※ 업체별 지원내역은 별도 통보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돼지 : 축산경영과(02-504-9434), 한우·닭 : 축산물유통과(02-504-9436)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확보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이며,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조정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2)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

○ 협의체 구성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별로 계열사업 참여농가등으로 가족계열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을 지도하여야 함.

○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육두수 조절 및 수매·비축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하여야 함.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선정시 양돈단지를 우선 선정하여 수출규격돈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야 함.
- 양돈계열주체가 운영하는 종돈장의 관리자와 계열농가는 「양돈전문기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농가경영기술을 향상시켜야 함.

< 행정사항 >

가. 지원집행 세부요령(사업주관기관)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선정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 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기술직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기계, 장비구입비 및 사업비 집행시는 자금집행영수증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 (간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제외)
- 여신관리계좌 입금액에 대한 자금집행등 사후관리 철저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에 포함 불가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나. 사업계획변경

-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계획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91년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로 하며 자금상환이 완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별표3)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대한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년2회이상 계열화사업자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한다(추진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시정지시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한다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한다.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계획서	시·도	3. 31까지	별표3
○가축계열화 평가 운영 실태(추진실적)보고 - 미완료된 업체포함	시·도	매분기 익월5일까지	별표3, 별표4

6. 2000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월말까지)→시·도→축협중앙회
사전심사(2월말까지)→시·도(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예산신청
(3월말까지)

다. 대상자선정

(1) 신청자격

○축산법, 축협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등록된 축산업, 부화업, 종축업 및
도축(도계)업, 축산물종합처리장(육가공업 포함),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및 축산업협동조합(지역, 업종) 및 중앙회

-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 사업장 건설대상토지가 확보된 자
(축산단지조성사업의 부지확보 조건 준용)

-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돼지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육계 :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육가공장 사업중 2종이상 보유자

- 기 타

·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

·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

· 육계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실적(사업신청 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완전계열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생산물을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자
- 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축산종합자금사업 지원기준 참고)

(3) 신청절차

-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격요건 및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축협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신청기한 엄수)

(4)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축협중앙회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학계, 축협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축협중앙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축협중앙회의 사전심사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축산단지 및 가축계열화 사업계획서 사전심사요령”에 의거 실시하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한다.
 - 주요심사내용 : 단지구성원 및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지역 주민민원발생 및 법적제한사항유무, 계열요소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축협중앙회장은 심사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경우 “적합”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

- 시도지사는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
 -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보완하게 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동 사유가 충족되기 이전에는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없음.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는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한 자돈 구입비 및 사료비 등 계열화사육비를 신청 할 수 있다(별표 1 참조)
 - 신청자격 : 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출규격돈을 생산하고 있는 계열화 주체
 - 지원대상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소요되는 자돈구입비, 사료비,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 신청범위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이내
 - 신청방법 : 계열주체는 사업주관기관(시·군 경유)에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사육두수,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등을 제출

(5) 계열화사업자 지정(별표2)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축산법규정에 의거 기사달된 서식에 의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한다.
-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라. 기타사항

- 대상축종 : 돼지, 육계(산란계는 제외)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춘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1.5천두×2회×15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이상 (종계 40천수×100수)
농가확보 : 25호이상
-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
 - 돼지 : 상기 규모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
 - 닭(육계) :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과 부화장
(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98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생산기반시설	○자돈 및 모돈생산시설, 종돈장 시설 ○종계장 및 부화장 시설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 8%(축협등 생산자단체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2.계열주체사육시설	○계열주체직영 비육돈·육계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가축을 도축, 도계 및 가공 하여 수출하는 계열주체만 지원
3.계열농가생산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육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 5%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축산종합자금 사업과 동일
4.도계시설	- 도계장 및 부대시설 (오 폐수처리시설포함)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8%(축협등 생산 자단체 5%) -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수출용닭을(2 .5~3.0kg)도계 하여, 수출하 는 주체에만 지원
5.가공시설(육가공 공장등)	- 가공장시설 및 부대시설 (오 폐수처리시설포함)	“	
6.유통·판매시설	- 유통·판매장 및 부대시설 - 냉장·냉동·물류등 유통·판 매시설	“	부지·건물구입비 및 임차료는 제외
7.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 자돈구입비, 사료비,약품비 등	- 소요액 50%이내 - 연리8%,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수출규격돈 생산에 한함

- ※ 1.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2. 계열화사육비는 2,000년 사업내용에 해당.

[별표2]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사업장소재지			
주사업내용			

축산업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199

사업주관기관의 장 (인)

[별표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년도				()년도			
			합계	음자	자담	합계	음자	자담	진척도 (%)	합계	음자	자담	진척도 (%)
생산기반시설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도계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 완료분은 실적으로 하여 계열주체별로 작성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추가지원분 공란에 추가 기재
 ○ 생산기반시설,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 완료분은 실적으로 기재하여 계열 주체별로 작성
- 양돈의 경우 계열농가호수는 번식 또는 비육농가로 비교란에 구분하고, 자축공급란에 번식농가에는 종돈공급두수, 비육농가에는 자돈공급두수를 기재

[별표4]

계열화사업추진실적보고(추진실태점검)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실적(기간 : -)

사업명	사업량	완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당기실적				누계실적				비고	
			합계	유자	자담	합계	유자	자담	진척도 (%)	합계	유자	자담	진척도 (%)		
생산기반시설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도계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완료분은 실적으로 하여 계열주체별로 작성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추가 지원분 공란에 추가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실적(기간 : -)

구 분		()년도 계획		당기실적			누계실적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비율	금액	사업량	비율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양돈의 경우 자축공급은 모돈공급 두수를 기재

40	소산업 정보화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진국)입니다.

1. 목 적

- 개체식별이 필요한 소관련 축산시책사업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하부기반 (Infra)구축
- 소산업관련 각종 정보들을 수집·분석후 필요기관·단체 및 농가등에게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 개체식별이 필요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및 소를 대상으로 개체식별 (ID)관리시스템 구축
- 가축개량, 사양, 위생, 방역등 각종 전산망들과 연계한 다양한 축산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95	'96	'97	'98	'99(예산안)	'00~'04
사 업 량	2,530천두	1,180	1,180	826	260	
사업비(보조)	13,946백만원	12,024	12,709	6,603	1,551	
- 축발기금	13,946				1,551	
- 농특회계		12,024	12,709	6,603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계획

- 사업량 : 260천두
- 사업내용
 - 정부시책 5개사업에 참여중인 소 및 이들이 생산한 암·수송아지에 대하여 지정된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입력하여 사후관리 단,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 특수가축공제사업, 종축등록사업의 참여우가 생산한 송아지는 제외
 - 지역축·낙협 담당직원이 조사표를 취합·확인하여 축협 금융전산망(BBS)을 이용하여 전산입력하면 정보화 본부에서 취합하여 귀표장착비 지원·정산
 - 등급판정결과를 원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Feed-back system구축
※ 자세한 내용은 축통 51550-468 ('98.8.4)호에 의함
- 지원사업
 - 바코드 귀표장착비 : 농가에서 직접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숙달시까지 지역축·낙협 직원, 한종협 직원, 부락 또는 리·동 단위로 지정된 기자재 관리농가등은 해당농가의 요청에 의거 귀표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장착자등에게 두당 3,000원 지급
- 재원 및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0%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천두,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551	
○ 민간경상보조(304)			
- 바코드 귀표장착비	260	780	
- 전산관리제비용		771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중앙), 지역축·낙협등(지방)

나. 사업담당부서

- 총괄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02-504-9436~7)
- 중앙 : 한국종축개량협회 정보화본부(02·588-9301~5)
- 지방 : 지역축·낙협(사업별 업무담당자)
- 기타 : 축협 축산기획부(02-224-8078)
축협중앙회(축산물등급관정소, 02-574-2541)

다. 신 청

- 자격 : 정부시책 5개 사업에 참여중인 농가

라. 추진체계

- 귀표장착 및 조사표작성 → 지역축·낙협(사업별담당자)에 조사표제출 → 취합·확인후 전산입력(지역축·낙협) → 종축개량협회(장착우관리, 기자재공급, 장착비 지원) → 지역축·낙협에서 장착자등에게 지급

< 별표 > 사업시행체계도 참조

마. 사업시행

- 축통51550-468('98.8.4)호의 소산업 정보화사업 실시요령에 의하여 추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소관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획, 계획교배등 개량사업 및 부수적인 자료등 축산진흥 목적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
- 해당 사업별 담당기관, 단체는 귀표장착우 조사자료의 불법유출금지
- ※ 전산입력자료 불법 유출시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 4734호, '94.1.7)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장비등 취득재산	재산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장관승인없이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 취득장비의 사후관리 책임자는 수시 정비·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함

○ 각종 조사표관리

- 귀표장착우 조사표, 원장등은 해당기관의 관련 내부규정에 의거 제작·보관, 관리

○ 장비 및 기자재 관리

- 지역축·낙협 등에 배치한 장비 및 기자재는 배치받은 기관 소유로 하며, 배치기관 부담으로 유지·보수·교체
- 다만, 장착기 및 귀표의 경우 정보화본부로부터 전배요청을 받은 지역축·낙협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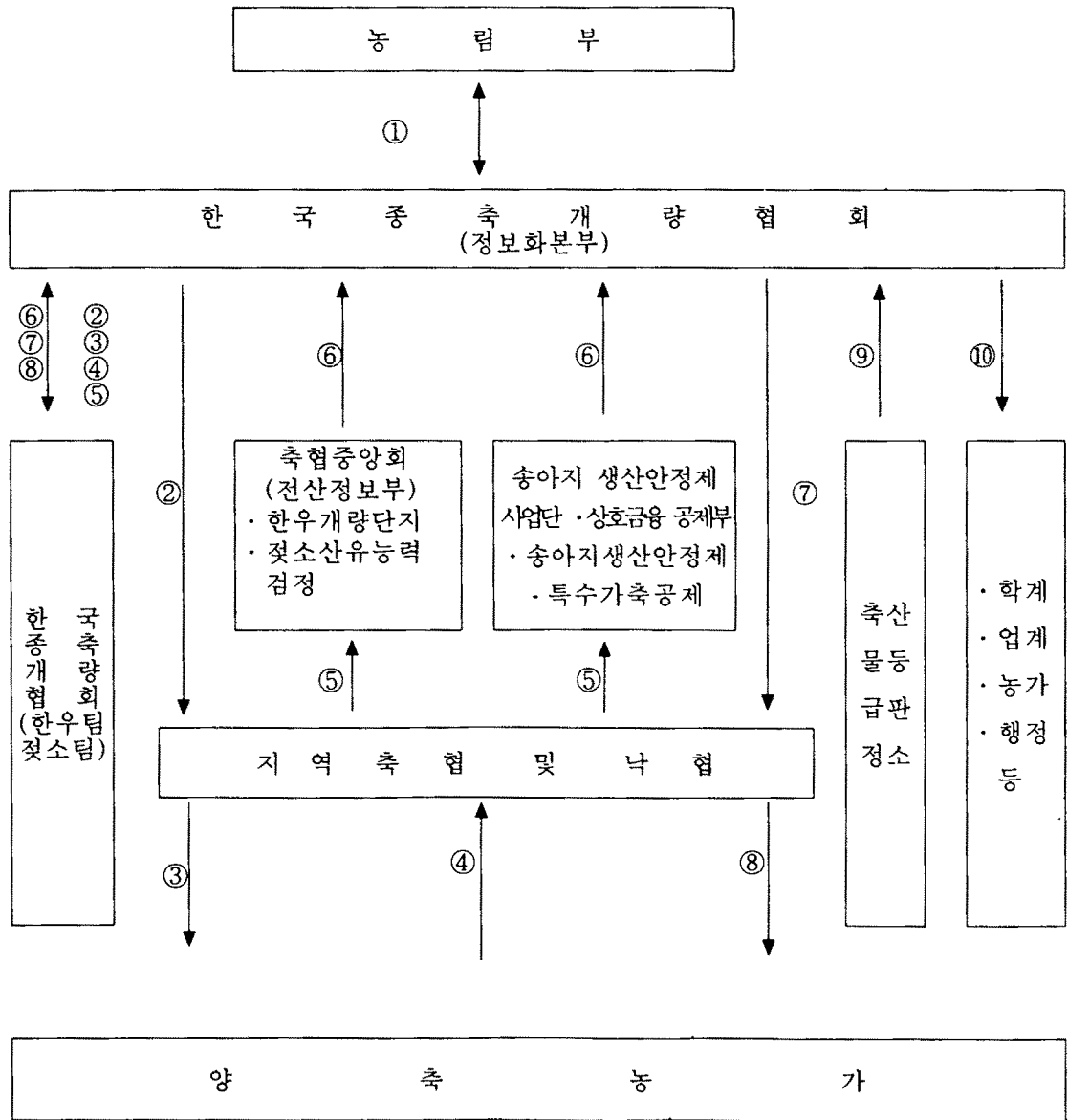
나. 사업비 지원

- 축협중앙회장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의 분기초 개산불 지급 신청에 의거 분기별로 개산불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에 정산

다. 보고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익월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축협중앙회장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결과를 익년 2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산

< 별표 > : 사업추진체계도



- ① : 사업계획 시달 및 실적보고 체계
- ② ~ ③ : 기자재 공급 체계
- ④ ~ ⑥ : 귀표장착 조사자료 전송체계
- ⑦ ~ ⑧ : 장착비 지급 체계
- ⑨ : 도축결과 수집 체계
- ⑩ : 정보서비스 체계(Inter-net)

※ 축협중앙회 가축개량본부는 한우개량단지과 젓소산유능력검정 사업보고서 식에 귀표장착우 조사표상의 항목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을조속히개발·운용함으로써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보화본부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노력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공공사업으로 해당없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사무관 최이규)입니다.

1. 사업 목적

-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 농가의 송아지 단순재생산유도로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고
 -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사업대상은 한우번식농가로서 한우암소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참여농가 부담금 납부
 - 정부, 지방자치단체, 참여자의 일정률 부담금납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5조(육용송아지의 생산안정조치), 동법 제57조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지역축협 사업의종류), 제102조(업종별축협사업의 종류), 제123조(축협중앙회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6	'97	'98	'99	2000~6	계
사업량	-	-	373천두	(323천두)	(50천두)	(373천두)
사업비			8,595	29,262	4,000	41,857
- 촉발			3,000	27,397	4,000	34,397
- 농특			-	-	-	-
- 지방비			1,865	1,865	-	3,730
- 자부담			3,730	-	-	3,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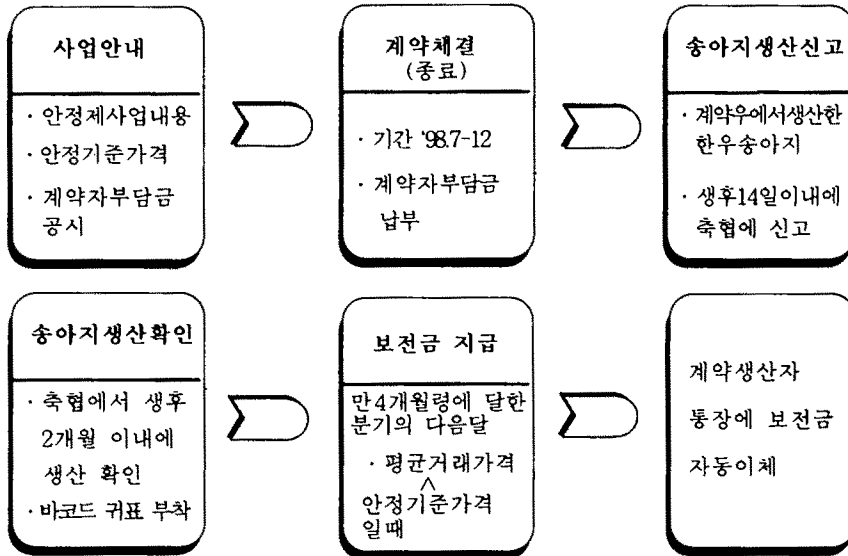
주) - '98사업량 1차분 16개 시범대상조합 : 184.5천두(조합당 11.5천두)
 2차분 16개 시범대상조합 : 188.7천두(조합당 11.8천두)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업무추진절차



- 32개 시·군(1차 2차 각16개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하여 전산운영 프로그램, 제규정 서식과 농가계약, 개체확인 및 보전금 교부절차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농가호응도 및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323천두	29,262	27,397	27,397	-	1,865	-
관리비	-	1,521	1,521	1,521	-	-	-
보전금	323천두	27,741	25,876	25,876	-	1,865	-

다. 사업시행시기

시범사업기간 : '98. 7. 16~'99. 12. 31

라. 사업대상 : 32개 시·군(도별 4개소)

구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1차분	안성시	춘천시	청원군	공주시	임실군	순천시	영주시	남해군
	여주군	횡성군	보은군	홍성군	장수군	장흥군	영천시	하동군
2차분	화성군	삼척시	충주시	서산시	정읍군	나주시	상주시	함안군
	양평군	홍천군	제천시	부여군	김제시	함평군	구미시	함천군

마. 자금조성 및 관리

○ 조성

- 보전금재원별부담 : 국고80%, 지자체10%, 계약자부담10%

○ 관리

- 축협중앙회내 『송아지생산안정제 특별회계지침』에 의거 운영

< 추진체계 >

가. 사업추진기관 및 담당부서

- 사업주관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02)500-2691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단 02)224-8078~8, 지역축협
- 협조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 한국종축개량협회

나. 계약 및 추진절차

- 계약대상
 - 계약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내 한우 암소 사육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 제외
 - 계약대상우 : 바코드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 암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99.12월말까지
 - 청약기간 : 1차분 : '98. 7.16~10.31, 2차분 : '98.10.20~12.31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지역축협
 - 계약자 부담금 :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10천원
 - 계약자 준비사항
 - 계약자 부담금, 주민등록증, 도장, 축협통장
 - 계약대상우의 바코드 귀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 임신중이면 임신개월수, 임신예정우면 수정예정월을 기록하여 지참
- 송아지 생산신고
 - 송아지 생산신고 : 생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계약축협(전화 또는 구두)
- 송아지 생산확인 및 바코드귀표 부착
 - 확인기관 : 지역축협
 - 확인기간 : 송아지 생후 2개월이내(확인시 바코드귀표 부착)
 - 조건 : 계약우와 송아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 기준가격 등

안정기준가격

- 내용 : 송아지의 생산 여건 및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송아지의 단순재생산 기반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격
- 결정 : 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고시 또는 공고
 - ※ 시범사업기간중의 잠정적인 안정기준가격 : 700천원

평균거래가격

- 내용 : 송아지의 시장 실제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격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가격
- 산출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에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천원 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액 : 100,000원/두당

- 시범사업 기간중 재원의 과다소요 방지와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시·군의 농가와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계약생산송아지 두당 보전금 지급상한선을 설정

계약자부담금 : 10,000원/두당

- 내용 : 사업계약시 계약자가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부담하는 금액
- 결정 : 안정기준가격의 1~3% 범위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
- 공시 : 축협중앙회장이 사업개시전까지 천원단위로 고시 또는 공고

지방자치단체부담금

-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관할지역 한우암소 사육자가 축협에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

라.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의 지급

지급사유

- 계약자의 송아지 생산신고에 의거 바코드귀표부착 및 등록이 완료된 송아지가 만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계약 당시의 안정기준가격 미만인 때

지급절차

- 축협중앙회장은 분기 송아지평균거래 가격 공고후 20일 이내에 지역축협을 통하여 계약농가의 계좌에 보전금을 입금

지급액 = 지급대상두수 × (안정기준가격 - 분기 평균거래가격)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은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까지 유보할 수 있음
- 자치단체부담금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시까지 보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축협은 계약약관 및 사업요령에 의해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 사진의 제출제외

6.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부담금관리 : 조성된 자금잔액은 안정제사업재원으로 운영
-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자금의 운용 및 관리는 특별회계 지침에 의거 타 사업회계와 구분·경리

나. 보고

- 축협중앙회장은 자금운영상황 및 추진상황보고 : 분기별 보전금지금액상황을 장관에게 보고
(별지 1, 2호서식 참조)
 - 매분기가끝나는 익월15일
- 축협중앙회장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에 보고
- 보전금 부족예상시 축협중앙회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실시요령 제29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에 보고

7.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은 '99년말까지 실시하고 농가호응도, 사업 결과의 평가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도별	시·군	가입 대상			계약실적			계약율			비고
		사육 호수	1.5세이 상암소	번식율 기준가 입두수	호수	계약우	송아지	호수	계약우	평균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정산실적보고

(단위: 천원)

시·도	시·군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또는 집행잔액		
					보조 (C)	지방비	자담	계	보조 (D)	지방비	자담	계						

여 백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여 백

42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 건설 (공공)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동홍, 사무관 어중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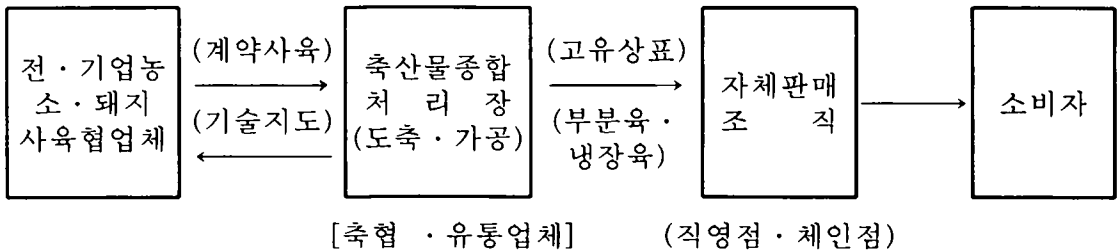
1. 목 적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중심으로 생산·유통의 계열화 유통체계를 확립, 육류 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제로 전환하여 국내 축산물 유통구조의 선진화
- 생산자단체의 육류수급 및 가격조절기능을 강화하여 양축가 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0년까지 LPC 10개소(대규모 6, 중규모 4)를 건설, 국내산 육류의 30~40% 를 부분육·냉장육으로 공급하여 국내산 육류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생산·유통 모델



- 축산물공판장 건설목표 : 6개소 (설치 완료 : 5, 건설중 1)
 - 건설중인 부천공판장 지속 추진
 - 기존 공판장의 도축, 가공시설 개선을 통한 육가공산업과 연계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7	'98	'99 예산안	2000	2001
축산물종합 처리장 건설	사업량	10	(9)	(5)	(2)	
	사업비	백만원				
		보 조 용 자 지방비	40,764	15,588	20,659	11,949
		자 담	-	-	-	-
		소 계	10,836	6,284	5,492	3,176
소 계	51,600	21,872	26,151	15,125		
부천 축산물 공판장 건설	사업량	1	(1)	(1)	(1)	
	사업비	보 조 용 자 지방비	2,716	2,721	5,653	2,006
		자 담	1,086	1,088	2,261	804
		소 계	1,086	1,054	2,261	838
		소 계	545	580	1,132	362
소 계	5,433	5,443	11,307	4,010		
계	사업량	11	(10)	(6)	(3)	
	사업비	보 조 용 자 지방비	2,716	2,721	5,653	2,006
		자 담	41,850	16,676	22,920	12,753
		소 계	1,086	1,054	2,261	838
		소 계	11,381	6,864	6,624	3,538
소 계	57,033	35,365	37,458	19,135		

※()는 계속사업임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개요

1)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개념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ivestock Processing Center)이란 선진국 위생수준(미, USDA시설기준)의 도축시설(계류·도축) 및 가공, 보관시설(냉장·냉동)을 동일 장소에 갖추고 자체생산 내지 양축농가(전업농·협업체·단지 등)와 계약생산된 소, 돼지를 부분육, 냉장육으로 도축·가공, 등록된 상표(브랜드)를 부착하여 자체판매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및 수출하는 일련의 축산물 종합유통시설

○ 건설 및 가동계획

- 2000까지 10개소(대규모 6, 중규모 4) 건설 완료
- 가동계획 : '98까지 4개소, '99년 3개소, 2000년 3개소

○ 종합처리장 도축, 가공능력 (개소당).

- 대규모 : 1일 소 100두, 돼지 1,500~2,000두
- 중규모 : 1일 소 50두, 돼지 750~1,000두

○ 표준 건설비 (개소당) : 추후 조정계획

- 대규모 : 15,332백만원 (융자 12,091, 자담 3,241)
- 중규모 : 8,000백만원 (융자 6,320, 자담 1,680)

○ 지원기준

- 도축시설 : 융자 80%, 자담 20%
- 오·폐수시설 : 융자 100%
- 육가공시설 : 융자 70%, 자담 30%

○ 자금용도 : 도축, 가공, 오·폐수시설 관련 건축, 기계 등 (부지매입비 제외)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지침”(축통51557-399호, '97.9.25)에 의거 운영할 것

2) 부천 축산물공판장 건설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시설규모

사업기간	규 모		처 리 능 력	
	부 지	건 물	도 축	경 매
'95~2000년	평 7,832	3,830	소: 120두/일 돼지 : 1,500	소 : 120 돼지 : 1,500

○ 투자계획

구 분	계	'97까지	'98	'99	2000
	백만원				
보 조	13,096 (50%)	2,716	2,721	5,653	2,006
융 자	5,239 (20%)	1,086	1,088	2,261	804
지방비	5,239 (20%)	1,086	1,054	2,261	838
자 담	2,619 (10%)	545	580	1,132	362
계	26,193	5,433	5,443	11,307	4,010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융자 20%, 지방비 20%, 자담 10%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 자금용도 : 부지매입비,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등 (판매시설 제외)

나. '99 사업비(예산) 내용

구 분		사 업 비					
		계	예 산 안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축산물 종합처리장	진승산업	백만원 2,053	1,621	-	1,621	-	432
	하이미트	5,468	4,320	-	4,320	-	1,148
	박달한우	5,390	4,258	-	4,258	-	1,132
	푸른육원	7,544	5,960	-	5,960	-	1,584
	거평팜랜드	5,696	4,500	-	4,500	-	1,196
	소 계	26,151	20,659	-	20,659	-	5,492
부천공판장 건설		11,307	7,914	5,653	2,261	2,261	1,132
계		37,458	28,573	5,653	22,920	2,261	6,62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500-2691~2)
- 시·도 : 축산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산업과, 산림·축산과등)

다. 대상자선정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 대상자 선정 완료되어 추가 선정계획 없음
- 축산물공판장 : 계속사업 (부천공판장)

라. 사업시행

- 시·도에서는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비는 시·도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집행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 훈령제959호, '98.9.9)에 의거, 지원자금 집행 요건, 절차 및 증빙서류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구)은 매년 말(회계년도 말)에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반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또는 위원회 운영
 - 1차 책임 : 시·군(공판장은 축협), 2차책임 : 시·도(공판장은 축협)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공판장 시설	2000	2004	사업완료후 5년	

- 건설 지원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시·도 주관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도 담당국장
 - 위 원 : 축산과장, 공업과장, 농어촌개발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개발과장, 복합민원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도 및 시·군 담당과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대상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 등
 - 위원회 기능
 - 도축 및 가공시설 설계안 심사
 - 부지확보 및 인허가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 지원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

-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정 : 매분기말 1회이상 실시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 훈령제959호, '98.9.9)에 의거, 지원자금 집행 요건, 절차 및 증빙서류 확인
 - 특히, 사업체의 자금배정 신청시 기성고를 철저히 확인한 후 농림부에 배정 신청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 시·도 주관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지침”(축통 제51557-399호, '97.9.25)에 의거 사후관리 및 운영지도 실시

나. 보고 기타

- 추진실적
 - 사업대상자는 전분기 추진실적을 <서식 1>에 의거 다음달 5일 까지 해당도에 보고, 시·도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완료 보고 :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 (사진 첨부 등)

6. 2000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추가 사업계획 없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이재용)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동홍, 사무관 어중원,신대식)입니다

I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1. 목 적

-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 및 국제경쟁력 제고
-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로 건전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기반 확대
- 고품질 냉장육·브랜드육 유통 확대로 국내산 육류의 우수성 인식 제고
- 규격돈 생산체계 확립으로 돼지고기 수출 촉진
- 축산물 소비자가격을 산지가격과 연동시킬 수 있는 소비지 축산물직판장 설치
-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직거래사업의 가시적 효과 조기 거양
- 축협공판장,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부분육가공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축산물공판장, 도매시장에 출하한 소·돼지의 출하대금을 신속히 정산하여 양축가 보호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하여 식육판매처 확대로 소비자가격 인하유도
- 소매단계의 육류등급별, 부위별, 축종별 구분판매 및 냉장육 판매기반 구축을 통한 유통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의 브랜드육(냉장육) 직판 가맹점 설치
 - LPC는 가맹점 50~100개소씩, 생산자단체·브랜드업체는 10~20개소씩
- 생산자, 농가 등의 축산물 직판장(한우고기, 육우고기 전문점) 설치
-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계란 소비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계란가공장 및 계란집하장 설치
- 식육판매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위생적인 육류유통 확대
- 산지도축에 의한 부분육 상장경매 추진으로 축산물 유통개선
- 축산물공판장, 도매시장 활성화추진
- 슈퍼, 편의점, 음식점 등의 식육판매업 신고시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비지원
- 공판장의 부분육 가공·집배기능과 연계한 냉장·부분육 유통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92~'97	'98	'99	2000	2001 ~2004
○ 브랜드육 가맹점					
- 사업량(개소)	130	160	280		
- 사업비(음자)	9,750	12,000	39,200		
○ 한우고기 전문점					
- 사업량(개소)	548	65	87		
- 사업비(음자)	122,000	13,861	15,897		
○ 육우고기 전문점					
- 사업량(개소)	23	13	14		
- 사업비(음자)	3,450	1,500	1,960		
○ 식육업소 시설개선					
- 사업량(개소)	391	-	50		
- 사업비(음자)	12,785	-	1,500		
○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지원					
- 사업량(대)	-	-	8		
- 사업비(음자)	-	-	392		
○ 부분육가공시설지원					
- 사업량(개소)	-	-	10		
- 사업비(음자)	-	-	4,900		
○ 규격돈 구매자금지원					
- 사업량(천두)	4,441	3,500			
- 사업비(음자)	51,550	38,400			
○ 계란가공장 설치					
- 사업량(개소)	5	2	(2)계속		
- 사업비(음자)	11,517	1,184			
○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 사업량(개소)	-	-	-		
- 사업비(음자)	-	-	7,000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					
- 사업량(개소)	-	-	800		
- 사업비(음자)	-	-	5,600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 판매점					
- 사업량(개소)	-	-	100		
- 사업비(음자)	-	-	2,000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이 연동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이 계열화된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의 브랜드육(냉장육) 가맹점 설치
- 식육이동판매차량지원과 부분육가공시설 지원
- 생산자단체 등의 축산물직판장 설치와 식육업소의 시설개선
- 돼지고기 수출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및 생산자단체등의 계란가공장 설치
-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쇠고기 판매처를 확대하여 인화 유도

○ 세부 사업종류

-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사업
- 한우고기·육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사업
- 식육업소 시설개선사업
-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지원
-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사업
- 계란가공장 설치사업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 지원
-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구입자금 지원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 판매점

나. 세부사업별 내용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

- 설치 기본계획 : 업종별로 총 사업량 범위내에서 연차별 설치
 - 축협중앙회(목우촌)·한냉 가맹점 : 150개소씩, 대규모 LPC : 100개소, 중규모 LPC : 50개소, 생산자단체·브랜드 업체 : 10~20개소
- 지원대상 : LPC·생산자단체·브랜드업체("가맹업체")의 브랜드육(냉장육) 직판점 또는 이와 연계된 가맹점(식육판매업소)
 - LPC·생산자단체·브랜드업체에서 자체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 가맹점을 모집 선정

- 자격요건
 - 가맹업체 : 냉장육 생산라인이 있는 가공장을 운영하고 자기상표를 보유
 - 직판 가맹점 : 판매장은 면적 15평이상으로 설치할 것
- 사업량 및 사업비 : 280개소, 39,200백만원
 - 가맹점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 (유자 140, 자담 60)
- ※업체별 가맹점 지원 개소수 및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 지원조건 : 유자율 70%,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인테리어비
 - 건축·매입·임차료는 사업비의 50%범위까지 인정(유자금의 50%까지 집행)
- 가맹업체 및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업체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 냉장육·브랜드육을 진공 포장하여 가맹점에 부분육으로 공급
 - 가맹점 공급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을 산지가격과 연동 실시
 - 가맹점에 대한 표준 인테리어 기준 설정 체시 (연동제 시행업소 표시 등)
 - 가맹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실시
 - 가맹점
 - 육류의 경우 가맹업체의 냉장육·브랜드육만을 판매
 - 가맹업체에서 제시한 판매가격 준수 (연동제가격 시행업소 표시)
 - 가맹업체의 표준 인테리어 설치
 - 가맹업체의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 실시에 적극 협조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축협조합, 농협중앙회,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냉, 식육유통업체, 양축농가, 식육판매업소(신규 포함)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 87개소, 15,897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 (유자 140, 자담 60)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 지원조건 : 연리 5~8%, 융자율 70%, 5년거치 10년상환
 - 연리 5% : 축협, 농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한농, 축산관련협회, 농가
 - 연리 8% : 민간 (식육유통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 자금용도 :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인테리어비
 - 건축·매입·임차료는 사업비의 50%범위까지 인정(융자금의 50%까지 집행)
- 시설기준
 - ┌ 판매장 면적 15평이상
 - └ 진열장 4m·숙성실 3평·냉동실 1.5평이상, 냉장 육절기
- 사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준수 (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 기타 농·수·축산물은 국내산 판매

<육우전문 판매점 설치>

- 지원대상 : 축협, 낙농관련 영농조합법인·협업체, 낙우회, 낙농농가
- 사업량 및 사업비 : 14개소, 1,96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 (융자 140, 자담 60)
-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 지원조건 : 연리 5%, 융자율 70%, 5년거치 10년상환
- 자금용도 : 매장 건축·매입·임차료,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인테리어비
 - 건축·매입·임차료는 사업비의 50%범위까지 인정(융자금의 50%까지 집행)
- 시설기준
 - ┌ 판매장 면적 15평이상
 - └ 진열장 4m·숙성실 3평·냉동실 1.5평이상, 냉장 육절기
- 사업자 준수사항
 - 시설기준 준수 (축산물 매장면적은 총 판매장 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쇠고기는 육우고기만 판매하여야 하고, 기타 농·수·축산물은 국내산 판매

<식육판매업소 시설개선>

- 지원대상 : 식육판매업소 (기존 또는 신규)
 - 자격요건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축협 식육기술교육 수료자
- 사업량 및 사업비 : 50개소, 1,5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43백만원 (음자 30, 자담 13)
- ※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 지원조건 : 연리 5%, 음자율 70%, 3년거치 5년상환
- 자금용도 : 냉장육 판매와 관련된 시설 및 인테리어비 (임차료 등 제외)
- 시설기준

{	판매장 면적 10평이상
	진열장·숙성실·냉장(동)실·냉장 육절기·진공포장기
- 사업자 준수사항
 - 냉장육 위주로 판매하고, 냉동육은 가급적 판매하지 말 것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사업량 및 사업비 : 식육이동판매 특장차량 8대, 392백만원
 - 대당 70백만원(음자49, 자담 21)
- 지원조건 : 연리 5%, 음자율 70%, 3년거치 5년상환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협공판장,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
- 사업량 및 사업비 : 10개소, 4,9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700백만원(음자 490, 자담 210)
- ※ 시도별 지원대상자 사업비 : 추후 별도시달
- 지원조건 : 연리 5%, 음자율 70%, 5년거치 10년상환

- 자금용도 : 도축장내에서 부분육 처리를 위한 시설(부분육 가공을 위한 기계시설 및 냉동·냉장 보관시설)
 - 시설규모 : 소의 경우 30두/일, 돼지의 경우 300두/일 이상
-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또는 입찰등의 방법으로 시행(자가 시공 제한)
- 자금집행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에 의함(자가노력비는 불인정)
- 사업지원은 공판장, 도매시장 신청자를 우선 지원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돼지고기 수출업체
 - 자격요건 : 규격돈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한 육가공업체로서 전년도 규격돈 구매실적이 우수한 업체
- 사업량 및 사업비 : 5,000천두, 33,750백만원
- ※ 지원대상 업체 및 사업량, 사업비 : 추후 별도 시달
- 지원조건 : 규격돈(생체중 105~120kg, 수태지의 경우 거세, TLC검사 합격)
 -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의 30~40% 융자
 - 융자조건 : 연리 5%, 융자율 30~40%, 1년거치후 일시상환

<계란가공장 설치>

- 지원대상 : 2개소 (강원춘천 양계조합, 전남나주 에그월드)
- 사업비 : 1,579백만원(춘천양계 1,385, 에그월드 194)
- 지원조건 : 연리 5~8%(계란가공업체 8%), 융자율 70%, 5년거치 10년상환
- 자금용도 : 건축, 가공시설, 냉장(동)시설, 폐수, 발전시설 등(부지매입비 제외)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슈퍼, 편의점, 음식점등 식육판매업소
- 사업량 및 사업비 : 800개소, 5,6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10백만원(융자 7, 자담 3)
- ※ 지역별 사업량등은 추후 별도 시달

- 지원조건 : 연리 5%, 용자율 70%, 3년거치 5년상환
- 자금용도 : 냉장, 냉동육 판매를 위한 냉장, 냉동 쇼케이스 구입
- 사업집행과 정산시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에 의함

<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

- 지원대상 : 축산물공판장, 도매시장
- 사업비 : 7,000 백만원
-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연리 3%, 1년단위 회전자금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장 >

- 지원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축산물 공판장 직거래판매장 설치
- 지원액 : 2,00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소요자금의 50% 지원
- 지원조건
 - 용자조건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5%
- 자금용도 : 냉장육 판매, 보관, 가공, 진열시설 장비, 인테리어 시설 및 원료육 구매를 위한 운전자금
 - 원료육 구매를 위한 운전자금은 사업비의 50%까지 인정
- 사업자 선정조건
 - 매장면적 10평이상으로 축종별, 등급별, 부위별 및 냉장육 구분판매하여야 함
 - 사업비중 자부담을 부담하여야 함
 - 축협중앙회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함
 - 축협중앙회에서 정하는 지정간판을 부착하여야 함
-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식육학교 교육이수자 우선 선정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 비		자부 담
			계	보조	융자			
계		백만원						
○ 브랜드육 가맹점	280	56,000	39,200	-	39,200	-	16,800	
○ 한우 전문판매점	87	21,117	15,897	-	15,897	-	5,220	
○ 육우 전문판매점	14	2,800	1,960	-	1,960	-	840	
○ 식육이동판매 차량 구입자금 지원	8	560	392	-	392	-	168	
○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10	7,000	4,900	-	4,900	-	2,100	
○ 식육업소시설개선	50	2,150	1,500	-	1,500	-	650	
○ 규격돈 구매자금	천두 5,000	112,500	33,750	-	33,750	-	78,750	
○ 계란가공장 설치	2	2,256	1,579	-	1,579	-	677	
○ 계란집하장	-	-	-	-	-	-	--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 지원	800	8,000	5,600	-	5,600	-	2,400	
○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	7,000	7,000	-	7,000	-	-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점	100개소	4,000	2,000	-	2,000	-	2,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및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사업주관기관	담 당 부 서
○ 브랜드육 가맹점	○ 축협·한냉 시·도지사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02/504-9436) ○ 축협 육가공사업부(02-224-8821) 한냉 영업체(02-822-1610) ○ 시·도 축산(농정)과
○ 한우 전문판매점	○ 시·도지사	○ 시·도(군, 구) 축산(농정)과
○ 육우 전문판매점	○ 시·도지사	○ 시·도(군, 구) 축산(농정)과
○ 식육업소 시설개선	○ 시·도지사	○ 시·도(군, 구) 축산(농정)과
○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지원	○ 축 협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02-504-9436)
○ 부분육가공시설 지원	○ 축협, 시·도지사	○ 시·도(군구) 축산(농정)과
○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농림부	○ 농림부 축산경영과 (02/504-9434)
○ 계란가공장, 집하장 설치	○ 시·도지사	○ 시·도(군, 구) 축산(농정)과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 지원	○ 시·도지사	○ 시·도(군·구) 축산(농정)과
○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원료 구입자금	○ 축협, 시·도지 사	○ 시·도(군·구) 축산(농정)과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 판매 점	○ 축협	○ 축협중앙회 유통사업부 시·도 축산과

나. 대상자 선정 및 절차

세 부 사 업 명	대상자 선정 및 절차
○ 브랜드육 가맹점	○ 가맹업체 : 농림부에서 선정 ○ 가맹점 : 가맹업체가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한우·육우 전문판매점	○ 시·도지사가 사업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농림부는 시·도별 사업량내에서 우선순위대로 선정
○ 식육업소 시설개선	○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자격요건 갖춘 자를 추천 ○ 농림부는 시·도별 지원대상자 통보(시·도에서 추진)
○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지원	○ 축협중앙회
○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선정하여 농림부제출 ○ 농림부는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세부내역 통보
○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협회는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농림부 제출 ○ 농림부는 업체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통보
○ 계란가공장, 집하장 설치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선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업체별 지원대상자 및 세부내역 통보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 지원	○ 슈퍼, 편의점, 음식점등의 식육판매업체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농림부에서 시도별 통보(시도에서 추천)
○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 축협, 시·도지사가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 제출 ○ 농림부는 시도별 대상자 통보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점	○ 축협중앙회가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선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다. 사업시행

○ 사업추진계획서 확정

- 브랜드육 가맹점 : 3월말까지 업체별 가맹점 명단 및 세부시설내역 등을 첨부
 - 축협중앙회, 한농 : 우리부에 직접 제출
 -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 시·도지사에게 제출 → 우리부 보고
- 한우·육우전문점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한우(육우) 전문판매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 (별첨1 참조)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자에 대하여 현지점검후 지정서 발급(별첨2 참조)
 - 시·도지사는 위반업소 적발시 위반조치기준(별첨3) 및 (별첨4)에 의거 조치
 - 시·도지사는 한(육)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후 간판부착 지시(간판기준 : 별첨 5)
- 식육업소 시설개선
 - 축산기업중앙회는 2월말까지 시·도별 사업자 추천(신청자 명단, 자격요건 구비여부)
 - 시·도는 3월말까지 검토후 농림부 제출(신청자 명단, 자격요건 구비여부)
 - 농림부는 이를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통보
 - 시·도는 축산기업 시·도지부별로 사업계획서(지원대상자 명단, 시설 및 투자 내역, 자격요건 구비)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 시·도지사는 지역별 사업량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 배정
- 규격돈 구매자금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신청
 - 협회는 사업계획서 검토후 농림부 제출 → 농림부는 업체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계란가공장 : 시·도지사는 업체별 세부투자내역 및 추진계획을 확정 보고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
 - 시·도지사는 슈퍼·편의점·음식점 등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대상자 선정
-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 시·도지사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농림부 제출
- 축산물 공판장 직거래판매점
 - 축협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하고 등급별(해당지역에 한함) 부위별 축종별 구분판매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소
 - 조건 미이행시 자금회수 조건부여 및 각서 징구
- 사업비 집행 : 축발기금 운영규정 및 축협 여신규정에 의거
 - 축협중앙회, 한냉 가맹점 : 축협, 한냉의 기성고 통보후 축협에서 집행
 -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가맹점 : 시·도지사의 기성고 통보후 축협 집행
 - 한우·육우 전문점, 계란가공장, 부분육 가공시설,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 : 시·도지사의 기성고 통보후 축협에서 집행
 - 규격돈 구매자금 : 규격돈 구매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는 명년도 상환 월에 재 배정하고 신규업체는 명년도 3~4월에 선지급
 -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 공판장(도매시장)에 출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축종 : 소·돼지
 - 축산물 공판장 직거래판매점 설치
 - 시·도의 사업실적 확인과 사업추진 증빙서류등을 확인하고 축협에서 집행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 훈령제959호, '98.9.9)에 의거, 지원자금 집행 요건, 절차 및 증빙서류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매년 말(회계년도 말)에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 간 :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사후관리 책임자(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자금용도 준수여부,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감독
 - 자금집행 부적정, 사업목적 위배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조치

사 업 별	사 후 관 리 내 용
브랜드육 가맹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협중앙회, 한냉 가맹점 : 축협, 한냉 - LPC 등 가맹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업체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한우·육우 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업체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식육업소 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축협 ○ 사후관리내용 :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규격돈 구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농림부(1차) ○ 사후관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돈 구매실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출하대금은 현금으로 10일 이내에 지급 의무
계란가공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사업목적 준수여부, 정상 가동 여부 등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1차), 시·도지사(2차) ○ 사후관리 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 사후관리 내용 : 농가 출하대금은 경매 다음날까지 지급
축산물공판장 직거래 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 축협중앙회 ○ 사후관리 내용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조건 미이행시 및 위법부당행위 적발시에는 주관기관에 자금회수 요청

○ 보고 기타

세부사업명	보고 종류	보고 주기	보고 서식 (근기)
브랜드육 가맹점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서식 4 (수시보고 가 26-60)
한우·육우전문점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식육업소 시설개선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규격돈 구매자금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계란 가공장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 구입자금 지원	반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20일 이내 완료후 20일이내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점	매분기 추진실적 사업 완료	익월 10일 까지 완료후 1개월이내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서류

세부사업명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구 비 서 류
○ 브랜드육 가맹점	○ 농림부 ○ 시·도지사	○ 농림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가맹점 설치방향, 지역 및 모집기준, 연차별 설치 및 투융자계획, 연차별 운영수지 계획) ○ 냉장 진공포장육 생산설비 사진 및 상표등록증 사본첨부
○ 식육업소 시설개선	○ 시장·군수	○ 농림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업소개요, 시설 및 투자계획, 운영수지 계획) ○ 식육처리기능사 또는 식육기술교육 수료증
○ 식육이동판매 차량 구입자금	○ 농 립 부	○ 농림사업신청서
○ 규격돈 구매 사업	○ 농 립 부	○ 농림사업신청서 ○ 회사개요 ○ 전년도 규격돈 구매계획 대비실적(월별) ○ 당해년도 규격돈 구매계획 - 단지(조합)별 규격돈 출하계약내용 ○ 잔여육처리 및 판매계획등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 지원	○ 시·도지사	○ 농림사업신청서
○ 계란집하장 계란가공장	○ 시장·군수	○ 농림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업체 개요, 참여농가 현황, 시설 및 투자 계획, 연차별 운영수지 계획 등)
○ 축산물공판장 (도매시장) 원료구입 자금 지원	○ 시·도지사	○ 농림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점	○ 시·도지사	○ 농림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나. 신청자격

세 부 사 업 명	신 청 자 격
○ 브랜드육 가맹점	○ 가맹업체 :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 가 맹 점 : 가맹업체 자체기준에 의함
○ 식육업소 시설개선	○ 식육처리기능사 및 식육기술교육 수료자
○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자금	○ 축협중앙회
○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육가공업체로서 전년도 규격돈 구매실적이 우수한 업체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	○ 식당·슈퍼에서 식육판매업소를 한자로서 진열장 신규 또는 교체 희망자
○ 계란 집하장, 가공장	○ 축협, 계열화업체, 양계 영농조합·농가, 가공업체
○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구입자금 지원	○ 축산물공판장, 축산부류 도매시장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 판매점	○ 식육판매업소 경영자

다.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세 부 사 업 명	신청 및 선정절차
○ 브랜드육 가맹점	○ 축협중앙회, 한냉 : 농림부 신청 및 사업량 배정 ○ LPC,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 시. 도에 신청
○ 식육업소 시설개선	○ 시.도(군)신청 → 농림부 사업량 배정→시. 도 선정
○ 식육이동판매차량 구입자금	○ 축협중앙회 → 농림부
○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희망자 신청→ 농림부 선정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	○ 시·도지사 신청 → 농림부 사업량 배정
○ 계란 집하장, 가공장	○ 시. 도(군)신청 → 농림부 사업량 배정→시. 도 선정
○ 축산물공판장(도매시장) 원료구입자금 지원	○ 축산물 공판장 및 축산부류 도매시장 → 시·도에 신청 → 농림부 사업량 배정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 판매점	○ 축협중앙회가 시·도지사와의 협의후 선정

라. 우선순위

세 부 사 업 명	우 선 순 위
○ 브랜드육 가맹점	○ LPC를 우선으로 생산자단체, 브랜드업체 순
○ 식육업소 시설개선	○ 매장면적 및 대도시 소재지
○ 식육판매용 진열장 구입지원	○ 식당, 슈퍼, 음식점 등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면서 냉장육을 취급하는 업체
○ 규격돈 구매자금 지원	○ 규격돈 구매실적, 원료육 등급에 따라 현금지급, 냉장육 수출업체
○ 계란 집하장, 가공장	○ 축협 등 생산자단체, 원료 및 판매망 확보 등
○ 축산물공판장 직거래판매점	○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축협 식육센터 교육이수자 ○ 축협중앙회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을 준수 할 수 있는자 ○ 식육점포면적이 10평이상인자

[별첨1]

□ 한(육)우전문 판매점 지정 신청

한(육)우전문판매점 지정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반규정 및 서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행치 못하였을시
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한(육)우 전문판매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 ○ ○ 시 장(도지사) 귀 하

< 구비서류 >

- 1. 식육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2.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한(육)우전문판매점을 지정받아 영위함에 있어 정부시책에 적극 호
응하여 성실히 운영함으로써 소 및 쇠고기 가격안정과 축산물유통체계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만일 아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한(육)우전문판매점 간판을 부착하겠습니다.
- 2. 지정된 판매점에서는 한(육)우고기를 제외한 어떤 쇠고기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 3.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위별로 구분하여 항상 진열하겠습니다.
- 4. 한(육)우고기는 지정된 구입처에서 성실히 구매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겠습니다.
- 5. 양질의 한(육)우고기를 취급하여 소비자 보호와 쇠고기 소비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6. 국내산 축산물 및 가공품(식료품과 농산물 포함)만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 7.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따르겠습니다.

19 . . .

상호명 :

주 소 :

성 명 :

○ ○ ○ 시 장(도지사) 귀 하

한(육)우전문판매점 지정서 발급 지침서

- ① 시·도지사는 대상자가 한(육)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자, 지정번호,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 ③ 지정번호는 공문서수신기호표 상의 각 시·도의 고유번호를 먼저쓰고 발급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 서울시 : 지정번호 서울시 제 01-1호
- ④ 한(육)우전문판매점 영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전문판매점 영업을 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축산물유통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한(육)우전문판매점 대상자가 판매부진등에 따른 판매장을 이전 및 신체건강상의 문제등으로 일정기간 판매점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장 휴업사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휴업기간을 정하여 지정서를 회수하고, 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점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토록 축협중앙회에 통보
 - 한(육)우전문판매점 경영자는 판매장을 휴업사유 발생시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판매점 지정서의 명의변경은 개인(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포함)일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에게만 가능하고, 법인·주식회사등 개인이외의 경우에는 판매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은 불가함
 - 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의 지정서 명의변경은 정관상 임원과 회원간의 직계비속은 가능함

[별첨 3]

한(육)우전문판매점 점검사항 및 조치기준

점검사항	조치기준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 판매점에서 취급품목이외의 쇠고기 판매행위	지정취소 (지정간판철거 및 지정서회수) 육자금 회수 세무조사 의뢰		
○ 판매점을 명의변경없이 타인에게 임대 및 전매할 경우(직계존·비속은 신고하여 명의변경 가능)	지정취소 (지정간판철거 및 지정서회수) 육자금 회수		
○ 판매점내에서 취급품목이외의 쇠고기 보관행위	경 고	지정취소 육자금 회수	
○ 승인된 구입처 및 도축장이외에서 구입 및 도축할 경우 (한우전문판매점만 해당)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육자금회수
○ 판매점을 휴업신고를 않거나 신고않고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경 고	지정취소 육자금회수	
○ 판매점 개설후 육자금 및 지정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 고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 육질둔갑판매 행위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육자금 회수
○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 고	경 고	“

※ 조치기준에서 위반회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계회수임

한우고기 구입처 및 구입방법

< 구입처 >

- 한우전문판매점 경영자는 원료육 구입방법과 구입처, 지정도축장등 구입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곳에서 구입하여 도축을 하여야 함
 - ※ 판매점 관할구역(광역)이외에서 한우를 구입 및 도축할 경우 판매장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 동 판매점경영자는 도매시장, 임의로 정한 구매예정 지역축협(2개시·군이내), 지정된 한우고기 집배센터등 구입처를 정하여 구매해야 함(구입처는 2개소내에서 선정)
 - ※ 동 집배센터는 도매시장, 지역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자기책임하에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동 판매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
 - ※ 농가협업체 및 지역축협은 자기회원 및 조합원의 한우판매가능, 자기가 사육한 한우는 직접 판매가능

< 구입방법 >

- 도매시장에서 원료육을 구매할 경우 중매인 또는 매참인을 통하여 구매
 - 도매시장에서 발부한 축산물공급명세서에는 중매인(매참인) 약호, 구입처의 상호, 소의 품종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전문판매점은 동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신고한 시·군의 지역축협과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당해 지역축협의 가축시장(농가에서 직구매시도 포함)에서 구매하는 경우
 - 축협은 계약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회원농가와 계약등으로 한우전문판매점에 한우육의 원활한 공급에 책임
 - 당해 지역축협 가축시장(농가직구매시 포함)에서 한우를 구입할 경우 해당 축협조합장은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상의 축종과 매수인과의 사실여부를 확인]
- 시·도지사(도축장 검사원)는 도축검사 증명서의 [종류]란에 도축우의 품종을 명시하여야 함
- 전문판매점은 가축매매수수료 영수증과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제출요구시는 언제든지 제시해야 한다.
 - 판매점 관할 행정기관과 한우구입 및 도축장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2조등 고려)

[별첨 5]

간판의 내용 및 규격

< 내부간판 >

-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육)우전문판매점(예 : 서울시)
- 규격 : 30cm × 70cm(가로 또는 세로)

□ □ □ □	지 정
한(육) 우 전 문 판 매 점	

- □□□□는 광역행정기관명(예 :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등)
-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1/2크기로 하여 중앙에 위치토록 할 것
 - 색상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 단 한우는 적색

< 외부간판 >

- 일반식육점의 유사전문판매점과의 구별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간판 통일
- 간판 기본규격

상단	□	시(도) 지 정 한(육) 우 전 문 판 매 점
		한(육)우심벌마크
하단	(지정 제 호)	(전화번호) (상호명 및 브랜드명)

※ 간판을 세워서 설치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크기

- 간판크기는 판매점의 건물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함
- 색 갈
 - 전체바탕색은 주위환경을 어울리는 색깔 활용
 - 상단글씨는 청색(단, 한(육)우는 적색), 하단글씨 자율적으로 선택
- 상·하단 면적비율
 - 상단의 면적은 4/6이상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 한(육)우심벌마크
 - 한(육)우심벌마크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브랜드화된 한(육)우고기 판매시 브랜드마크 사용
- ※ 기본규격 간판은 반드시 주간판으로 하고 판매점당 의무적으로 1개이상 부착

II. 등급판정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동홍)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등급별, 부위별 차등거래로 품질에 의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산 소비 기반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등급화거래지역 확대 실시('99.1.1)
 - 쇠 고 기 : 특별시, 광역시 및 9개도 144개시·군
 - 돼지고기 : 특별시, 광역시 및 7개도 16개시·군
- 소매단계의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지역 확대('99.7.1)
 - 구분판매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7개도 12개 중소도시
- 소매단계의 등급제연계를 위하여 소비자,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4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94~'97	'98	'99(예산안)	2000~2004
축산물등급판정				
- 사업량	1건	1	1	
- 사업비(보조)	25,597	8,894	7,41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축산물등급판정을 주관하고 있는 등급판정소의 인건비, 관리비, 교육·홍보비, 고정자산 확보 등을 지원하여 등급판정사업을 원활히 추진
- 등급판정대상 및 등급기준 : 소·돼지의 도체(소13개등급, 돼지 5개등급)
- 축산물등급화거래 고시지역 사후관리
- 등급판정결과를 출하농가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가축개량 및 사양관리지표로 활용
- 돼지등급판정 기계화 시험사업실시(기계구입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 11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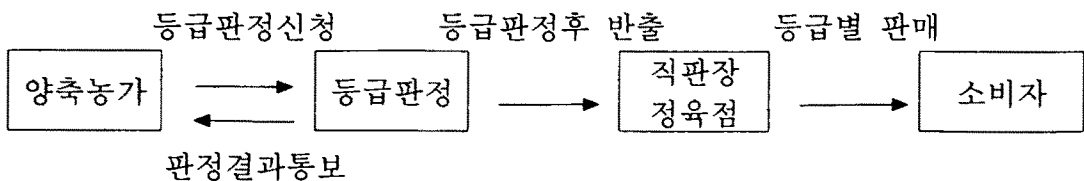
○ '99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7,410	7,410	-	-	-
등급판정소운영	1개소	7,410	7,410			

< 추진체계 >

-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Tel 02-504-9436~7)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2-574-2541~3)
- 등급판정절차



- 등급판정 받지 않은 육류 유통 감시 철저
- 등급화 거래지역 고시확대에 따른 이행 철저

< 행정사항 >

-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 사업추진실적보고 : 월별 등급판정실적을 익월 10일 이내

6. 2000년도 사업신청안내

- 축협중앙회 등급판정소에서 2000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I. 경영상담 및 홍보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최상태, 사무관 김남훈 최염순)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이재용 정병규,) 축산물 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진국 정동홍 신대식)입니다.

1. 목 적

- 양축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실시로 경영개선 도모
-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교육 강화
- 축사표준설계도의 개발보급으로 양축농가 편의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소비등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및 소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기술지도 및 홍보
- 지역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축사모델 개발 보급으로 양축농가 편의제공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1항
 -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4. '98 주요 사업내용

- 양축농가 경영 및 기술교육 실시
 - 양돈전문기술교육, 남은음식물사료화 기술보급, 종합자금지원 대상농가 교육 등
-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가축박람회 개최
- 닭사육관련 정보전달 및 홍보

5. '99년도 경영상담등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자	사업내용	대상	'99예산안
1. 축사표준설계도	축협중앙회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양축농가	123
2. 가축박람회	축협 및 관련단체	가축계량을 위한 품평회 개최, 전시·홍보 행사 등	양축농가 및 소비자등	717
3. 교육홍보	축협중앙회 및 관련 단체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축농가 등에 대한 축산교육 실시 ○ 학술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등 ○ 육류수출촉진 홍보·교육등 ○ 한우 고급육 생산 기술 교재제작 및 거세지도·장비 보급 ○ 양돈컨설팅사업 및 양돈전문기술 교육 ○ 위생적인 식육처리를 위한 기술훈련 실시등 ○ 남은음식물 사료화 홍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기자재 전시회, 평가회, 기술지침 교육 등 ○ 기타일반시책 및 수출관련 교육홍보 등 	양축농가, 축협 중앙회, 축산관련 단체등	998

< 추진체계 >

○사업시행 방법

- 농림부 사업주관과에서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추진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주관과의 승인을 받아 추진. 다만, 별도의 교육실시 요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가축위생과 :
02-500-2688~2691
- 축협중앙회 기금관리부 : 02-224-8608

< 행정사항 >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II. 가축공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동홍)입니다.

1. 목 적

- 폐사축의 시중유통 근절
폐사 가축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폐사축이 시중에 유통되어 국내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를 개선 하고자 함.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생산성 향상 극대화 도모

2. 추진방향

- '97.'98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99부터 전국확대 실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47조 ~ 제5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4~'97	'98	'99 (예산안)	'2000	'2001~'2005
○ 사업량	98천두	35	25	38		
사업비	계	백만원 3,182	1,100	942	1,140	
	보조자	1,641	600	471	570	
	지방비 자부담	1,541	500	471	57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공제금 지급범위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전염병에 의한 폐사는 제외)
- 재해로 인한 폐사(재해대책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 대상은 제외)
- 절박도살우(긴급도축우는 제외)
- 공제요율
 - 한우 : 1.60%
 - 육우 : 2.40%
 - 젃소 : 3.66%
- ※ 농가는 동 공제료의 50%만 부담하고 정부보조 50% 지원
- ※ 축협중앙회는 조합별 또는 농가별로 $\pm 2.0\%$ 범위내에서 할증·할인요율을 적용하여 자율적인 사고율 저하유도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협조 : 시·도(공수의),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대상조합 : 축협중앙회가 조합 신청을 받아 선정
- 사업규모 : 38천두(한육우 23천두, 젃소 15천두)
- 공제대상가축 : 한육우, 젃소(6개월령 이하의 송아지는 제외)
- 가입방법 : 농가 자율가입
- 공제기간 : 1년단위(월단위도 가능)
- 가입범위 : 두당 산지시세를 기준으로 최고 80%까지 선택적으로 가입

○ 지원조건

- 공제료 : 축발기금50%, 농가50%

※ 공제료는 사업비 포함하여 정부50% : 농가50% 부담

(할인, 할증요율 적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99사업비(예산)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140	570	-	-	570
○ 가축공제	38천두	1,140	570	-	-	570

나. 세부사업요령

○ 사업대상 조합선정

- 축협중앙회는 동 사업내용 및 사업조합 선정계획을 해당 회원조합에 통보하여 조합신청을 받아 선정

· 선정완료 : '98.12월까지

· 선정기준 : 신청조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97.'98시범사업 부진 조합은 제외하여 전국 확대시에도 희망조합만을 내실 있게 선정.

- 농가 가입신청
 - 가입자격 : 축협 조합원, 준조합원 자격을 갖춘 양축가, 축협목장
 - 가입범위 : 농가 사육두수중 공제 가입가축은 30%~80%범위내에서 동일비율 가입
 - 공제가입시 농가부담 공제료
 - 공제료(사무비포함) = (공제가입금액×공제요율) - 정부부담(50%)
- 계약후 가입농가가 조합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 개체표시(귀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된 된 경우
 - 거세, 제각, 단미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 방목,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대회, 소등타기대회 등에 출전할 때
 - 가축의 이동이 있을 경우(매매, 교환, 증여등)
 - 가축의 사양장소 등을 변경할 때
 - 5일 이내에 폐사가 예상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경우
 - 전염병(법정전염병포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가축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 되었을 때
 - 의외의 재난이나 위험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 정부지원 공제료의 운용체계
 - 정부지원 공제료는 분기별 자금집행
 - 축협중앙회는 분기별 가입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
 - 농림부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축협중앙회(기금관리부)에 자금 집행 통보
 - 수입공제료보다 지급공제금이 적을 경우
 - 다음연도 요율을 인하조정
 - 수입공제료보다 지급공제금이 많을 경우
 - 축협중앙회에서 지급하고 다음연도 공제요율 산출시 반영

○ 공제금지급

- 손해액=(가축평가액×가입비율)-보상금·이용물평가액·일반가축공제금
공제금 지급은 제반서류가 축협중앙회에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세부실시요령은 동 지침을 기준으로 축협중앙회장이 작성하여 시행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축협중앙회

나. 신청자격 : 축협조합원, 준조합원 자격을 갖춘 양축가, 축협목장

다. 신청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조합이 정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축심사 및 공제료 납부통보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농가공제료 납부 : 공제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제료 수납 및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부 즉시
- 공제책임개시 : 공제증권 발급일로부터 1개월후부터

라.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Ⅲ. 식육처리 전문인력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서기관 정동홍)입니다.

1. 목 적

- 식육의 처리, 가공,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인력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집중양성하여 육류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 육류의 표준규격 및 진공포장 냉장육의 생산, 판매기술 개발

2. 추진방향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부설 식육교육센타를 식육처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기관으로 육성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식육처리기술교육 실시하여 젊고 유능한 식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육류유통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3~'97	'98	'99 (예산안)
사 업 량		1,015	655	180	180
사 업 비	계	백만원 2,690	1,584	571	535
	보 조 용 자	2,139	1,449	369	321
	지 방 비	-	-	-	-
	자 부 담	551	135	202	214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교육주관 : 축협중앙회
 - 교육대상 : 도축장, 육가공업체, 식육유통업체, 식육판매업소 및 관련 단체, 생산자단체 종사자등
 - 교육인원 : 180명
 - 교육기간 : 2개월 과정, 4주과정, 1~2주
 - 교육과정 : 기초과정, 전문과정, 단기과정
 - 교육방법 : 이론교육 및 실습 (실기위주 교육)
 - 교육장소
 - '99상반기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부설 식육교육센터 (경기 안성군)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 지원규모 및 조건
 - 교육비는 축발기금에서 보조 : 인건비, 강사료, 사무용품, 기타 운영 비용
 - 원료육 소모비, 개인장비비, 숙식비는 교육생 부담
 - 교육생 수강료 : 1인당 2개월 1,270천원, 전문과정(4주) 820, 단기(주) 230
 - 원료육 소모비, 개인장비 구입비 (숙식비는 별도 부담)
- ※ 2000년부터 일반경상비는 축협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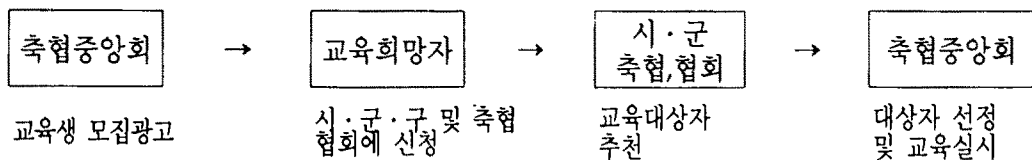
나. '99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80명	백만원 535	321	321	-	-	214
식육처리전문인력 양성	180명	백만원 535	321	321	-	-	21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 사업시행체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02-504-9436~7)
- 시·도 : 축산과
- 시·군·구 : 축산과 (산업과 축산계)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상·하반기 교육을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기초반 : 수출육가공업체 > 생산자단체 > 도축장, 육가공업체, 식육유통업체등
 - 판매점반 : 한우전문판매점 > 식육유통판매업체 > 생산자단체등

라. 사업시행

- 선정된 교육대상자는 축협중앙회의 교육등록안내서에 의거, 교육생 수강료 및 교육등록을 필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주관기관 : 축협중앙회
 - 축협중앙회에서는 교육수료자에 대한 보수교육, 동향 파악, 업계 기여도등 사후관리를 하시기 바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고정자산	'99	2003	사업완료후 5년	

나. 보고 기타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교육 및 자금집행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 이내
- 교육결과 및 정산보고 : 교육완료후 20일 이내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신두리 산 89-1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식육교육센터

나. 신청자격 : 개인, 육가공협회, 백화점협회, 수퍼체인협회회원, 농·축협직원

다. 신청절차

- 교육신청 및 추천 → 대상자선정 → 개인신청자 → 추천기관 → 신청자
- 개인신청자 : 축협중앙회(도지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육가공협회, 백화점협회, 수퍼체인협회 회원사 : 해당협회에 신청
- 농·축협 직원 : 소관부서장이 대상자 추천하며 축협중앙회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신청장소에서 배부)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최상태, 사무관 김남훈)입니다.

1. 목 적

- 축산농가의 전업화추세, 축산물 수입 자유화, 금융 자율화등 축산여건의 변화에 축협조합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양축가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로 육성
-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의 차별화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 및 자구노력을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소액·분산식 및 전조합 균등배분 등의 자금지원 방식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성장 잠재력이 왕성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우수한 조합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자금을 지원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졸업제 도입)
 - 경영상태가 열악한 조합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없으며, 자구노력이 미흡한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을 유도
- ※ '99년부터는 축협개혁방안에 따른 축협조합합병지원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4호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재 원 별		'98	'99(예산안)	2000-2004
음 자	계	백만원 99,956	백만원 99,956	
	축산발전기금	49,978	49,978	
	축협중앙회 자금	49,978	49,978	

※ 동일 운용규모로 회전음자되는 예산임.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필요성

- 축협조합은 축산여건의 변화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축협법시행령 개정('95.6.23)이후 위양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경영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축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로 육성
- 축협중앙회의 지원만으로는 일선 축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워 축산발전기금과 축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기금)에서 출연하여 조합육성자금을 만들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 축협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대상자

-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 500억원, 연 3%
 - 단계별 육성목표에 의거 육성대상 90개조합(참고1)에 '97.9.30부터 지원한 계속사업임. 다만, '99년부터는 일부 회수하여 축협개혁방안에 따른 축협조합 합병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 축 협 자 금 : 500억원, 무이자
 - 2단계(2000년이후)부터 기금예산과 통합지원

※ 융자기간은 1년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경영개선대책상의 주요사항 이행 및 당초 목적사업 수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차년도 예산계상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

○ 자금용도

- 브랜드화 촉진등을 통해 농가생산 축산물의 제값을 받아 주는데 사용하는 자금
- 양축농가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 자금
- 가공공장 운영등 조합경제사업 활성화자금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합계	축발기금 (융자)	축협자금
축협조합육성자금	99,956	49,978	49,978

※ 융자조건 : 연 3%, 1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0-2688)
- 축협중앙회 : 회원지원검사부 경영평가팀(02-224-8391)

다. 사업시행

- 육성대상조합(90개 조합)에 대하여 조합별 모델지표 달성도 평가(참고2)
 - 평가시기 : '99.3
 - 평가주관 : 축협중앙회 회원지원검사부
 - 평가방법 : '98년까지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조합별 모델지표 달성도 평가
- 평가결과 모델지표 초과 조합과 경영개선 부진조합은 지원자금 회수
 - 750점 이상 또는 예수금 1,000억원이 초과하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우수 조합
 - 육성자금을 지원받고도 400점 이하인 경영개선 실적 부진 조합
- 평가결과 계속지원 대상조합에 대하여는 축협조합 육성자금을 1년간 연장 지원하고 지도·관리강화
 - 자금지원 규모 : 지역 1군 4억원, 2군 6억원, 업종 1군 6억원, 2군 8억원
 - 사업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경영개선 대책상의 주요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지원을 중단

○ 부실조합 지도 관리

-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지도
-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하고 이행상황이 부진할 경우
 - 육성대상조합은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정부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앙회의 자체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원된 자금도 상환기일 도래시 전액 회수

○ 교육강화

- 중앙회에 순회교육단 설치·운영 : 중앙회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순회교육단을 설치하여 운영
 - 특정업무반(세무, 회계, 마케팅, 유통등), 양축지도반등
 - 조합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별 자체 교육도 지도
- 조합장 및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경영의식 및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워크-숍, 연찬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전문가를 양성
 - 조합장 연찬회, 간부직원 워크숍, 일반직원 교육

○ 1단계('97 -'99) 사업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2단계(2000-2002) 지원 여부결정 및 지원대상조합 선정 준비

- 1단계 사업추진실적 종합평가
 - 평가시기 : 2000년 3월
 - 평가주관 : 축협중앙회 회원지원검사부
 - 평가방법 : '97~'99 추진실적을 조합별 모델지표 달성도 평가
- 2단계 지원대상 조합선정
 - 사업추진 효과를 미리 분석하여 2단계 지원여부 결정
 - 단계별 육성목표에 부합되도록 모델지표 및 육성대상조합 선정 기준 등을 보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점검 : 농림부장관은 반기 1회이상, 축협중앙회장은 분기 1회이상

나. 보 고(참고3 서식)

- 분기별 지도·점검 실적 : 축협중앙회장은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반기별 경영컨설팅 실시 실적 : “
- 종합평가 : 연도말 기준 3개월이내 평가하고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단계('97~'99) 육성대상조합에 지원('97.9.30)된 자금은 2000년 3월까지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2단계(2000-2002)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육성대상조합 선정
 - 육성대상조합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조합은 모델지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축협중앙회(축협조합경영개선위원회)에 제출 : 세부신청요령 등은 지원여부 확정후 별도 제공
 - 축협중앙회에서는 신청사항에 대한 서류심사와 필요시 현지확인조사 실시
 - 축협중앙회에서는 모델지표에 의한 평가결과와 2단계 육성대상 조합수를 감안하여 육성대상조합을 선정
 - 육성대상조합으로 선정된 조합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앙회의 지도·조정을 받아 확정

<참고1>

축협조합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도별	조합명	지원액	도별	조합명	지원액	도별	조합명	지원액	
서울	서울경기양계	800	충남	당진낙협	800	경북	포항	600	
경기	가평	600			천안낙협		609	달성	600
	고양	600			대전충남양돈		800	구미	409
	양평	409			15개조합		8,654	예천	409
	3개조합	1,609		전북	남원		600	안동	409
강원	양양	600	고창		600	성주	409		
	철원	600	전주		600	칠곡	409		
	인제	600	장수		409	청송	409		
	화천	409	정읍		409	상주	409		
	양구	409	임실		409	경북낙협	609		
	평창	409	임실낙협		800	대구경북우유	609		
	영동양돈	800	전북양계		609	경북중앙낙협	609		
	강원양돈	609	8개조합		4,436	대구경북양돈	800		
	8개조합	4,436	전남		강진	600	대구경북양계	800	
	충북	음성		600	순천	600	19개조합	10,490	
제천		600		광주광역시	600	경남	하동	600	
충주		600		영광	600		고성	600	
괴산		409		구례	600		거창	600	
영동		409		장흥	600		사천	600	
청주우유		609		함평	409		의령	600	
충북양계		800		담양	409		거제	600	
7개조합		4,027		화순	409		함양	409	
충남	논산	600		고흥	409		양산	409	
	부여	600	곡성	409	통영		409		
	서천	600	해남	409	남해		409		
	금산	600	광주전남우유	800	창녕	409			
	당진	600	광주전남양돈	609	경남낙협	800			
	서산	600	광주전남양계	609	12개조합	6,445			
	예산	409	15개조합	8,072	제주	남제주	600		
	아산	409	경북	청도		600	제주	409	
	공주	409		군위		600	2개조합	1,009	
	보령	409		고령	600				
대전	409	의성		600					
홍성낙협	800	영천		600	총계	90개조합	49,978		

<참고2>

지역조합 모델평가표

(축협)

구 분	항 목	배 점 (A)	1단계지표 (B)	산 식	평가율 (C)	달성율 (D=C/B)	평 점 (E=A* D)
I. 경영관리 (300)	○1인당 납입출자금	60	800천원	천원 / 명			
	○자기자본비율	50	2.2%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times 100$			
	○고정장기적합율	50	250%	$【 250 /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 \text{만원})) \times 100] \times 100$			
	○직원공개채용	50	70%	$(\text{명} / \text{명}) \times 100$			
	○자기자본이익율	30	10%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times 100$			
	○사업채권회전율	30	2.5회	백만원 / 백만원			
	○임직원교육	30	15회	회			
II. 경제사업 (300)	○경제사업 규모	100	150억원	억원			
	○1인당 취급액	50	3억원	억원 / 명			
	○경제사업참여도	50	30%	$(\text{명} / \text{명}) \times 100$			
	○판매사업	40	80억원	억원			
	○축산물브랜드판매	30	10%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times 100$			
	○인공수정 사업	30	40백만원	백만원			
III. 신용사업 (200)	○집포당예수금규모	70	120억원	억원 / 개소			
	○1인당 취급액	50	17억원	억원 / 명			
	○신용대손충당금	50	0.5%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times 100$			
	○연체대출금비율	30	10.0%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times 100$		※	
IV. 지도사업 (200)	○지도사업비	100	11.5%	$(\text{백만원} / \text{백만원}) \times 100$			
	○조합원 경영 및 기술 지도	50	30%	$(\text{명} / \text{명}) \times 100$			
	○양축지도 관련학과 전공직원 채용 여부	50	50%	$(\text{명} / \text{명}) \times 100$			
V. 감점 (100)	○분식결산	△20		건×20	-	-	
	○검사지적사항 미정리	△20		건×2	-	-	
	○신용사업자금 타사업 전용	△20		$(\% - 20\%) \times 5$	-	-	
	○여유자금 타기관 예치	△20		$(\text{백만원} / 50\text{백만원}) \times 10$	-	-	
	○사고발생	△20		건×10	-	-	
계							

※ 는 달성율 산출시 D= B/C로 계산

낙농조합 모델평가표

(축협)

구 분	항 목	배점 (A)	1단계지표 (B)	산 식	평가율 (C)	달성율 (D=C/B)	평 점 (E=A* D)
I. 경영관리 (300)	○ 1인당 납입출자금	60	8,000천원	천원 / 명			
	○ 자기자본비율	50	7%	(백만원 / 백만원) × 100			
	○ 고정장기적합율	50	120%	【120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100] × 100	-		
	○ 직원공개채용	50	70%	(명 / 명) × 100			
	○ 자기자본이익율	30	5%	(백만원 / 백만원) × 100			
	○ 사업채권회전율	30	2.5회	백만원 / 백만원			
	○ 임직원교육	30	15회	회			
II. 경제사업 (300)	○ 경제사업 규모	100	500억원	억원			
	○ 유가공 시설	60	시설보유	시설명 :	-	-	
	○ 1인당 취급액	50	5억원	억원 / 명			
	○ 경제사업참여도	50	30%	(명 / 명) × 100	-		
	○ 판매사업	40	90억원	억원			
III. 신용사업 (200)	○ 점포당예수금규모	70	120억원	억원 / 개소			
	○ 1인당 취급액	50	16억원	억원 / 명			
	○ 신용대손총당금	50	0.3%	(백만원 / 백만원) × 100			
	○ 연체대출금비율	30	10.0%	(백만원 / 백만원) × 100		*	
IV. 지도사업 (200)	○ 지도사업비	100	14.0%	(백만원 / 백만원) × 100			
	○ 조합원 경영 및 기술지도	50	30%	(명 / 명) × 100			
	○ 양축지도 관련학과 전공 직원 채용 여부	50	50%	(명 / 명) × 100			
V. 감점	○ 분식결산	△20		건 × 20	-	-	
(100)	○ 감사지적사항 미정리	△20		건 × 2	-	-	
	○ 신용사업자금 타사업 전용	△20		(% - 20%) × 5	-	-	
	○ 여유자금 타기관 예치	△20		(백만원 / 50백만원) × 10	-	-	
	○ 사고발생	△20		건 × 10	-	-	
계							

*는 달성율 산출시 D= B/C로 계산

양돈조합 모델평가표

(축협)

구 분	항 목	배점 (A)	1단계지표 (B)	산 식	평가율 (C)	달성율 (D=C/B)	평 점 (E=A *D)
I. 경영관리 (300)	○ 1인당 납입출자금	60	4,000천원	천원 / 명			
	○ 자기자본비율	50	2%	(백만원 / 백만원) × 100			
	○ 고정장기적합율	50	220%	【220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100 }】 × 100	-		
	○ 직원공개채용	50	70%	(명 / 명) × 100			
	○ 자기자본이익율	30	5%	(백만원 / 백만원) × 100			
	○ 사업채권회전율	30	2.5회	백만원 / 백만원			
	○ 임직원교육	30	15회	회			
II. 경제사업 (300)	○ 경제사업 규모	100	500억원	억원			
	○ 1인당 취급액	50	6억원	억원 / 명			
	○ 경제사업참여도	50	30%	(명 / 명) × 100			
	○ 판매사업	40	220억원	억원			
	○ 축산물브랜드판매	30	20%	(백만원 / 백만원) × 100			
○ 도축·가공 시설	30	시설보유	시설명 :	-	-		
III. 신용사업 (200)	○ 점포당예수금규모	70	100억원	억원 / 개소			
	○ 1인당 취급액	50	16억원	억원 / 명			
	○ 신용대손충당금	50	0.6%	(백만원 / 백만원) × 100			
	○ 연체대출금비율	30	9.0%	(백만원 / 백만원) × 100		※	
IV. 지도사업 (200)	○ 지도사업비	100	8.0%	(백만원 / 백만원) × 100			
	○ 조합원 경영 및 기술 지도	50	30%	(명 / 명) × 100			
	○ 양축지도 관련학과 전공 직원 채용 여부	50	50%	(명 / 명) × 100			
V. 감점 (100)	○ 분식결산	△20		건 × 20	-	-	
	○ 검사지적사항 비정리	△20		건 × 2	-	-	
	○ 신용사업자금 타사업 전용	△20		(% - 20%) × 5	-	-	
	○ 여유자금 타기관 예치	△20		(백만원 / 50백만원) × 10	-	-	
	○ 사고발생	△20		건 × 10	-	-	
계							

※는 달성율 산출시 D= B/C로 계산

양계 · 기타조합 모델평가표

(축협)

구 분	항 목	배점 (A)	1단계지표 (B)	산 식	평가율 (C)	달성율 (D=C/B)	평 점 (E=A* D)
I. 경영관리 (300)	○ 1인당 납입출자금	60	4,000천원	천원 / 명			
	○ 자기자본비율	50	2%	(백만원 / 백만원) × 100			
	○ 고정장기적합율	50	190%	【 190 /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100 }] × 100	-		
	○ 직원공개채용	50	70%	(명 / 명) × 100			
	○ 자기자본이익율	30	5%	(백만원 / 백만원) × 100			
	○ 사업채권회전율	30	2.5회	백만원 / 백만원			
	○ 임직원교육	30	15회	회			
II. 경제사업 (300)	○ 경제사업 규모	100	350억원	억원			
	○ 1인당 취급액	50	6억원	억원 / 명			
	○ 경제사업참여도	50	30%	(명 / 명) × 100			
	○ 판매사업	40	170억원	억원			
	○ 축산물브랜드판매	30	10%	(백만원 / 백만원) × 100			
	○ 유통(도계·집하장) 가공시설	30	시설보유	시설명 :	-	-	
III. 신용사업 (200)	○ 점포당예수금규모	70	100억원	억원 / 개소			
	○ 1인당 취급액	50	15억원	억원 / 명			
	○ 신용대손충당금	50	0.3%	(백만원 / 백만원) × 100			
	○ 연체대출금비율	30	9.5%	{ (백만원 / 백만원) × 100		※	
IV. 지도사업 (200)	○ 지도사업비	100	8.0%	(백만원 / 백만원) × 100			
	○ 조합원 경영 및 기술지도	50	30%	(명 / 명) × 100			
	○ 양축지도 관련학 과 전공 직원 채용 여부	50	50%	(명 / 명) × 100			
V. 감점 (100)	○ 분식결산	△20		건×20	-	-	
	○ 검사지적사항 미정리	△20		건×2	-	-	
	○ 신용사업자금 타사업 전용	△20		(% - 20%) × 5	-	-	
	○ 여유자금 타기관 예치	△20		(백만원 / 50백만원) × 10	-	-	
	○ 사고발생	△20		건×10	-	-	
계							

※는 달성율 산출시 D= B/C로 계산

<참고3>

육성대상조합 및 부실조합 점검·지도결과

1. 점검·지도 개요

- 축협조합육성자금 지원조합
- 부실조합

2. 점검·지도 결과

육성조합(/)분기 모델지표 달성정도

구분	항 목	지 역			낙 농			양 돈			양 계			평균 달성율
		지 표	실 적	달 성 율	지 표	실 적	달 성 율	지 표	실 적	달 성 율	지 표	실 적	달 성 율	
경영관리	7개항목별													
경제사업	7개항목별													
신용사업	4개항목별													
지도사업	3개항목별													

부실조합 경영개선계획 대비 이행정도

항 목	우 수		정 상		부 진		조합수	비 고
	조합수	점유율	조합수	점유율	조합수	점유율		
경영개선이 행주요항목								

육성대상조합 평가

1. 조합별 모델지표 달성도

구분(지역, 업종)	조 합 명	달 성 도(평점)	비 고

※ 조합별 평가표 : 별도붙임

2. 평가결과 분석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4. 향후 조치계획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이재용)입니다.

1. 목 적

- 축산시설의 자동화 촉진 및 국내여건에 적합한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공급
- 양질의 저렴한 기자재 공급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쟁력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중심의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축산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추진
- 축산시설 종합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자재업체의 콘소시엄 구축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96까지	'97	'98	'99예산안	2000-04
사 업 량		26개소	10	15	7	
사 업 비	계	백만원 7,670	2,500	3,021	1,250	
	용 자	5,371	1,750	2,115	875	
	자 담	2,301	750	906	375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분처리기등)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공장시설 및 축산기자재상설전시장 설치자금

(2) 지원대상 : 축산기자재 생산업체

(3) 사업기간 : 2개년('98~'99년)

나. '99 사업비 내용(예산안)

년 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축발기금융자	자 부 담
'98계속	7개소	1,250	875	375

※ '99년에는 '98년사업의 2년차 사업만 추진

○업체당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조건 :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사)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협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9434~5)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추진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전용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별표1)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후 변경하여야 함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세금계산서 포함)

나. 자금집행 및 정산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 비치 (간이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제외)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정산에 포함 불가

다. 보고

- 사업계획 보고(협회→농림부) : 별표1
- 사업추진결과보고(협회→농림부): 별표1
 - 미완료된 사업체 포함

6. 2000사업신청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협회→시·도로 변경)
- 나.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99년 사업요령과 동일함
- 다. 사업기간 : 2000년(2개년사업→당년도 사업으로 변경)
- 라.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업체별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이내
 - 지원조건 : 연리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마. 사업신청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신청자격

- 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자
- 연구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S가 양호한 자
-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
(적용대상 품목일 경우)

(3)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 →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계획서를 2000. 1월까지 제출(사업희망자)→검토후 축산기술연구소에 2월 15일까지 심사요청(시·도)→2월말까지 사전심사(축산기술연구소)→3월말까지 사업예산신청(시·도)→예산배정(농림부)
-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은 시·도에서는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사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업계획 심의요령을 마련하여 심의한다.
-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전심사를 할 경우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심의결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의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 [별표 제1호 서식] 참조

바. 대상자 우선순위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전심사 결과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한다
- 대상자선정시 우선 순위 고려사항
 - 생산기자재의 검사 및 규격화,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축산시설종합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콘소시엄을 구축하려는 업체

[별표 1]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계획 실적) 및 정산

1. 일반현황

- 업체명 :
- 사업선정연도(사업기간) : 년(년~ 년)
- 소재지 :
- 대표자(전화) :
- 주생산품목 :
- 시설규모 : 부지면적_____평, 공장면적_____평
 - 설치한 기계·기구명 :
- 정책자금 지원액 : 총_____천원(융자_____천원, 자담_____천원)

2. 사업비 추진실적

구분	계 획					실 적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합계	융자	보조	자담		합계	융자	보조	자담
합 계										
○ 시설내역별 - 기계·기구별 - 건축공사 등										

3. 경영성과

- 주요취급품목 :
 - 업체매출액('96~'97년)
 - 연간 매출량 및 금액, 경영비, 소득
- ※ 정책사업 추진결과 사진첨부 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박병호, 이재용)입니다.

1. 목적

- 사료제조시설(남은음식물 사료화 시설 포함)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사료원료 수입자금을 지원하여 국제사료원료 가격불안에 따른 수급안정과 사료제조업체의 경영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지원
- 축협이 노후화된 사료제조시설을 보강·확충
-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원료 수입자금 지원
-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92-'95	'96	'97	'98	'99 (예산안)	2000-2004
사업량		38	-	11	7(2)	102	
사업비	계	8,230	50,000	65,913	73,232	58,294	
	보조 용자	-	-	-	-	-	
	지방비	4,115	50,000	62,658	67,651	53,407	
	자부담	-	-	220	-	-	
		4,115	-	3,035	5,581	4,887	

-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 축협 배합사료제조시설 개선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가자가배합사료 제조
- ② 사업량 ()내서는 '98 계속사업임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 지원배경

- 반추가축의 능력발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섬유질사료는 부피가 큰 조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

○ 지원대상자

- 축협·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315백만원(지원단가는 150~45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지원단가는 지원하는 용자금액 기준임
- 지원기준
 - 시설비의 70% 용자지원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시설비 지원

(2)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 지원배경
 - 남은음식물을 사료화 함으로써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유도 및 환경오염 방지
 -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배합사료의 수입 의존도 경감 및 외화절감
- 지원대상자 : 전업규모 양축농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협업체)
- 지원단가 : 개소당 300백만원이내(단가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 농가가 결정)
- 지원조건
 - 용자 70% 이내, 자담 30% 이상
- 지원시설의 종류
 - 기계·기구류 : 발효제조장치, 원료탱크, 콘베어, 교반기, 저장로, 급이배관 등
 - 건축 : 제조시설 건물, 부대시설(창고) 등
 - ※ 제조시설이 아닌 발효제조기계등 장비만 구입하는 경우도 가능함

(3) 축협 배합사료 제조시설개선

- 지원배경
 -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료공장중 그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개·보수 및 확충이 시급한 공장에 대하여 정부에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을 현대화 추진

- 지원대상자
 -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
- 지원조건
 - 배합사료제조 시설비의 50% 용자지원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시설비 지원

(4) 사료원료 수입자금

- 지원배경
 - 환율 및 국제사료원료 가격의 불안정에 대응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
 - 배합사료 산업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자
 - 축협중앙회(지역조합 및 계열화업체 포함)
 - 한국사료협회 회원사
- 지원조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 자금을 수입사료 원료구매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3회이상 회전 운용토록 하여야 함.

(5) 농가 자가배합사료 제조

- 지원배경
 - 대부분 농가에서는 배합사료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사료를 급여하고 있어 축산물의 경쟁력 저하
 - 가축의 생산비중에서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 생산·이용이 필요
- ※ 배합사료제조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옥수수등 수입사료 원료를 '98. 4월부터 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도 공급가능토록 조정함

- 지원대상자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제조시설 : 315백만원
 - 제조장비 : 23백만원(지원단가는 장비의 능력에 따라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조건
 - 제조시설 및 장비의 70% 융자지원
- 지원시설의 종류
 - 제조시설 : 건물, 기계 및 시설비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제조장비 : 분쇄기, 배합기, 발효기, 원료계량 및 투입장치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건축비는 제외)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102	백만원 58,294	53,407	-	53,407		4,887
○ 농가자가배합 사료제조	72	3,224	2,257		2,257		967
- 제조시설	2	900	630	-	630	-	270
- 제조장비	70	2,324	1,627		1,627		697
○ 섬유질사료 제조 시설	10	4,500	3,150	-	3,150	-	1,350
○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20	8,570	6,000	-	6,000	-	2,570
○ 축협배합사료 제조시설개선	-	-	-	-	-		
○ 사료원료 수입자금	-	42,000	42,000	-	42,000	-	-

-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축협 배합사료시설 개선,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농가자가배합사료제조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② 사료원료 수입자금 : 연리 8%, 1년 거치 일시상환
- ③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의 사업량은 신청량에 따라 추후 확정 계획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 제조시설, 남은음식물 사료화, 축협배합사료 제조시설, 농가자가배합사료 제조) : 시·도지사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섬유질사료 제조시설사업, 축협 배합사료 제조시설 개선사업,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농가자가배합사료 제조사업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축산(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산업)과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 립 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
 - 축협중앙회 : 사료사업부
 - 한국사료협회 : 업무부

다. 사업시행

(1)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농조합법인(협업체 포함), 생산자단체, 농가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 능력의 보유 여부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가능여부, 자부담능력, 사업의 효율성 여부 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

-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추천자의 사업계획서 및 시·도지사의 사업타당성 검토내용,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변경, 신축에서 개축등 주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2)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

- 사업신청 : '99.2월말까지 시·군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희망자 신청(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예산요구(시·도지사) → 시·도지사 의견서 첨부하여 3월말까지 예산배정 요구(농림부)
- 동일자치단체(시·군·구)내에 기 선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료확보 차원에서 신규 선정을 지양할 것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자부담능력, 사업의 효율성 여부 등을 실제 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양축가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1일 3톤이상 남은음식물 확보가 가능한 자
 - 자체 원료를 수거·운반하여 원료확보가 가능한 자
 - 원료공급자(자치단체, 전문처리업자)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우선순위

- ① 원료의 자체확보 및 계약등으로 원료확보가 가능한 자
- ② 축종별 우선순위 : 돼지 → 소 → 가금류 → 기타가축
- ③ 사업장 부지확보 및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자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부지확보, 시설공정, 투자계획서 등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후 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소요자금을 제출받아 사업비를 지원

○ 기술지도

- 사업주관 기관에서는 대상자선정 명단을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하고 기술지도 협조를 요청
- 축산기술연구소는 남은음식물의 제조공정, 사양관리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 및 시·군에 통보하고 시·도에서 요청시에 현지기술지도 협조
- 농촌지도소장은 기술지도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월 1회이상 현지기술지도

(3) 축협 배합사료 제조시설개선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점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변경, 신축에서 개축등 주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광주광역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4) 사료원료 수입자금

○ 사업비 지원방법(사업비 배정)

① 농 립 부

- 사료협회와 축협의 최근 2년간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로 배정

② 축협중앙회

- 중앙회 공장, 지역조합 및 계열화 업체의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③ 한국사료협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배정비율은 50:50으로 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에서의 업체별 배정은 각각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 추진일정

- 농림부장관은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99.1.31)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월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축협중앙회장 (축산발전기금부서)에게 통보('99.2.15)하고, 1부를 농림부에 제출
-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희망시기 및 금액을 사전 파악·조정

(5) 농가자가배합사료 제조

○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덧붙임)를 '99.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

※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조합원 수, 가축사육두수)
- 사업계획(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자가배합사료 생산능력, 원료 확보방법, 자가배합사료제조방법, 사업수지 분석, 담보능력 등)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자가배합사료 이용능력, 사업의 효율성 여부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 검토내용을 종합평가하고 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대상자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상황과 사업추진여건, 시·도별 가축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비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조정, 신축에서 개축, 제조장비의 능력변경등 주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대상자별로 기성고 또는 장비 및 시설의 장치 완료후 월별로 자금 배정

< 행정사항 >

(1)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제조시설, 남은음식물사료화사업, 축협배합사료 제조시설개선, 농가자가배합사료 제조)

가. 사업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장비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시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추진
- 사업계약시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등으로 구분입찰할 경우에는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함

나.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조하여 합동실시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
- 여신관리 계좌입금액에 대한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

다. 보고(가26-60)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서식 1>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시·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시·도)
 - 사업대상자는 정산보고시 축발기금운영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타용도로 사용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나. 보고(가26-60)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자금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에게 이 규정과 관련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함.
- 자금의 대출 및 상환절차 등은 축발기금 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888호, '97.2.6)에 따르되,
 - 이 규정에 의한 대출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대출 가능함.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

나. 신청자격

-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섬유질사료 제조업체, 양축농가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영농조합법인(협업체 포함), 생산자단체, 농가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 능력의 보유 여부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사업비 조달능력·기대효과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
- 농림부장관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라.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시·군 경유)

나. 신청자격

- 전업규모 양축농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협업체)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

- 신청자 자격요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절차 : '99.5월말까지 시·군경유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희망자 신청(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시·군)→사업대상자선정·예산요구(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대상자별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까지 농림부에 예산 요청

(3) 축협 배합사료 제조시설개선

- 해당없음

(4)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 림 부

나. 신청자격

- 축협중앙회(지역조합, 계열화 업체 포함)
- 한국사료협회(비회원사 포함)

다. 신청절차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원료 수입자금의 계속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99.3.31까지 목적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2000년 예산요구액 및 산출내역, 기타 국제곡물가격 및 수급전망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축산경영과)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료관리법에 의한 양축용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
 - 용자후 1년이상 사료제조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자
-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이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
 - 축협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규모를 확정·통보

마.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자 신청을 할 수 있음.

(5) 농가 자가배합사료제조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

나. 신청자격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협업체, 양축농가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가축의 사육규모,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능력, 자가배합용 사료원료 구입 가능성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덧붙임)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선정기준 항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 상황과 사업추진 여건, 시·도별 가축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확정

<서식 1>

○○○○ 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사업추진실적(분기)

분 기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실적	공 정 도(%)
1/4			
2/4			
3/4			
4/4			

※ 사업추진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업추진 실적란에 기재

<서식 2>

○ ○ ○ ○ 사업완료 및 정산서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계	응자 (축발기금)	자담	계	응자 (축발기금)	자담	
백만원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 시설명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합계									

I.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위생과(과장 이홍길, 사무관 임경중 김창섭 이길홍 양홍구)입니다.

1. 목 적

- 주요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기여 및 국민보건향상
- 축산물(육류 및 우유등)의 위생검사 및 안전성확보로 국민보건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 전염병 조기근절을 위해 예방주사 및 검진 대폭 확대실시
- 지역별·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활성화 추진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지역방역센터로 육성·지원
- 도축장의 방역관리 강화 및 혈청검사 확대실시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산축산물의 차별없는 검사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의 검사장비 조속 확보
-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 및 처리를 위한 위생검사 관리강화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비용의 부담) 및 제34조(보상금)
 - 주사, 검사, 투약, 소독실시 소요비용 : 국비 50% 이상 부담
 - 살처분보상금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시설, 장비 보조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 수당 및 여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검사), 제15조(수입 축산물의 신고등) 및 제19조(출입·검사·수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분	'90~'91	'92~'96	'97	'98	'99	2000~2004	비고
사업량	15,388	20,618	16,639	146,830	114,895		
예산	4,703	59,441	11,716	14,347	13,850		

5.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 가축방역	천두 326,821.6	23,140	13,850	4,441	4,849
- 재료비·수당(201)	-	1,450	1,450		
- 보상금(301)	202	2,900	2,900		
- 민간경상보조(304)	400명	40	40		
- 자치단체경상보조(305)	326,619.6	13,901	9,460	4,441	
- 공동방역사업단지원	50개소	1,750			1,750
- 도축장 소독시설지원	30개소	3,040			3,040
- 가축방역교육·홍보비	5,000명	59			59
○ 축산물검사		14,250	7,275	6,975	
- 검사재료비(201)	-	300	300		
- 자치단체자본보조(412)	-	6,975	3,487.5	3,487.5	
· 검사장비(26종)	-	6,000	3,000	3,000	
· 기동방역차량(19대)	-	285	142.5	142.5	
· 소독시설(23개소)	-	690	345	345	
합 계		37,390	21,125	11,416	4,849

6. 사업개요

가. 가축방역사업

< 방역예산내용 >

(단위 : 천원)

예산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기금
201	○가축방역대책수당	10명	1,000	1,000		
	○ 진단액·긴급방역비	-	1,449,000	1,449,000		
301	○보상금(살처분·도태)	202천두	2,900,000	2,900,000		
304	○수의사연수교육	400명	40,000	40,000		
305	○자치단체경상보조					
	- 예방주사	322,831.18천두	7,958,629	5,237,649	2,720,980	
	- 검진	685.34 "	727,870	408,412	319,458	
	- 기생충구제	2,412 "	1,769,400	1,208,580	560,820	
	- 가축혈청검사사업	334.62 "	260,990	239,990	21,000	
	- 오제스키병근절사업	294 "	558,600	499,800	58,800	
	- 유방염방제사업	62.46 "	156,150	156,150		
	- 공수의수당	252명	1,520,640	760,320	760,320	
	- 본부유보		949,419	949,419		
기금	○공동방역사업단지원	50개소	1,750,000			1,750,000
	○도축장 소독시설	30 "	3,040,000			3,040,000
	○가축방역교육	5,000명	59,000			59,000
	가축방역합계	326,821.6	23,140,698	13,850,320	4,441,378	4,849,000
412	○가축위생시험소지원					
	- 기동방역차량	19대	285,000	142,500	142,500	
	- 소독시설	23기	690,000	345,000	345,000	
	소계	42(대·기)	975,000	487,500	487,500	
	합계	326,821.6	24,108,698	14,337,820	4,928,878	4,849,000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시행기관 (농림부, 시도, 시군자치구)

-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 시장·군수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검진·혈청검사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공동방역사업단 : 농림부, 축협
- 도축장 소독시설지원 : 시·도지사

3) 사업시행절차

(가) 예방주사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약품등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대상농가의 가축에 예방주사 실시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축종별 해당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 지원하여 사업단에서 실시)

- 예방주사내역 :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부루세라병,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 오제스키병, 광견병, 진도견디스토펜퍼등(DHPPL), 뉴캐슬병]
- 뉴캐슬, 부루세라병 등의 세부지침은 별도송부

※ 시도별 물량 : 별첨(1)

(나) 검진 :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전염병별 검사 실시(채혈후 실험실 검사 또는 진단액 접종등)

- 검진내역 : [우결핵, 부루세라(MRT), 부루세라(Plate), 부루세라(Rose-Bengal), 추백리]

(다) 기생충구제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구제약품을 대상 농가에 지원

- 구제약품의 구입은 시도 형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할 수 있음

기생충 구제사업 내역 : 소진드기, 소간질충,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 꿀벌구제약품은 시·도지사가 한국양봉협회 시도지회와 협의하여 약품 선정, 배정방법 결정

※ 검진·기생충구제·기타사업 시도별 물량 : 별첨(2)

(라) 살처분보상금지급

- 세부내역 : 별도송부

(마) 공수의 운영

- 시도별 공수의 배치 및 수당예산 : 별첨(3)
- 공수의 운영 세부지침 별도송부

(바) 가축위생시험소등 지원사업

- 시도별 방역장비등 지원내역 : 별첨(4)

(사) 공동방역사업 운영지원

○ 사업내용

- 지원배경
 - '96. 6. 8 : 주요 가축전염병근절대책 수립-지역별 공동방역사업 추진
 - '96.12.31 :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요령 훈령제정

- 지원대상자

-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에 의거 설치한 사업단

- 지원규모 : 개소당 지원한도 : 35백만원이내(예방약냉장고, 방역차량 연막분무기 PC등)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담 30%

- '99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대출	보조		
계	50개소	2,500	1,750		1,750		750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방역장비지원	50개소	2,500	1,750		1,750		750

- 세부내역 : 별도송부

(아) 도축장 소독시설지원

○ 사업내용

- 지원배경 : 주요 가축전염병근절대책위원회 건의에 따라 추진대책에
작업장 소독시설 지원계획 포함
- 지원대상자 : 도축장·닭도축장 경영자(도축장 106개소, 닭도축장 48개소)
- 지원규모
 - 도축장 : 개소당 35백만원이내(차량세척·소독시설)
 - 닭도축장 : 개소당 280백만원이내 (차량세척·소독시설, 닭 수송용기
수송용기 자동세척·소독설비)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이상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99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대출	보조		
계	30	4,920	3,040	3,040			1,880
○ 도축장차량세척소독 시설	20	920	640	640			280
○ 닭도축장차량등 세척 소독시설 및 수송용기	10	4,000	2,400	2,400			1,600

- 세부내역 : 별도송부

4) 사업실적 보고

- 보고기한 : 2000. 1. 15까지
- 보고서식 : 가축방역사업 실적보고서식에 의함

나. 축산물검사

1) 검사장비 및 검사재료비 지원

○ 사업주체 : 시·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검사장비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장 비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계	국 비	지 방 비
가공품검사	농축기	10	150	75	75
	시료전처리기	15	525	262.5	262.5
	회화로	2	20	10	10
	굴절계	8	80	40	40
	HPTLC	6	300	150	150
	유해가스배출장치	12	180	90	90
	실험실자동화장치	8	320	160	160
	초순수제조기	8	160	80	80
	초저온냉동고	11	220	110	110
	자동초자세척기	11	385	192.5	192.5
소 계	10종	91	2,340	1,170	1,170
잔류물질 검사	GC/MS	1	130	65	65
	HPLC	2	130	65	65
	GC	3	180	90	90
	무정전장치	15	150	75	75
소 계	4종	21	590	295	295
원유검사	원유성분분석기	5	550	225	225
	빙점검사기	8	160	80	80
	바코드장비	9	540	270	270
	항생제간이검사기	9	45	22.5	22.5
소 계	4종	31	1,295	647.5	647.5
미생물 검사	자동회석분주기	10	400	200	200
	미생물검사기	9	315	157.5	157.5
	현미경	6	180	90	90
	협기성인큐베이터	10	300	150	150
	PCR	9	270	135	135
소 계	5종	44	1,465	732.5	732.5
기 타	자동조직절편기	5	150	75	75
	ELISA 판독기	3	60	30	30
	원심분리기	5	100	50	50
소 계	3종	13	310	155	155
합 계	26종	200	6,000	3,000	3,000

< 축산물검사 재료비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비 고
농장단계 잔류물질검사	10,000건	300	시도별 사업물량 확정후 배정
도축검사	12,000천두		
미생물검사	4,000건		
원유검사장비검증	2종		
유해잔류물질검사	80,000건		
계		300	

2) 사업내용

가. 축산물검사 장비지원

- 농장에서 가축내 항생제, 합성항균제 잔류여부 예비검사 실시위한 장비지원
 - 검사대상 : 돼지 500두이상 사육농장 5,000여 농장 년 2회 실시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검사세부사항 : “ ’99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검사요령“ 참조
- 도축장에 도축신청되는 전두수에 대해 검사실시를 위한 장비지원(년 12백만두)
 - 일반 도축검사 : 생체·해체검사 및 합격검인후 출고까지 전과정에 대한 일반검사 실시
 - 검사대상 : 소 900천두, 돼지 11,000천두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육류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 대장균군, Salmonella enteritidis, 대장균 O-157:H7
 - 검사방법 : 도축장별 도체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조사
 - 전체 시·도별 사업량 : 년 4,000건 이상(세부내역은 ’99미생물검사요령 고시에 수록)
 - 검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 미생물오염도조사(monitoring) :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탐색조사 실시

- 잔류물질검사

- 도축시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실시
- 검사대상 : 소, 돼지, 닭에 대하여 년 80,000두(수)이상 검사
- 세부실시요령 : “'99 육류중 유해성잔류물질검사요령”에 고시
- 감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미생물검사 실시위한 장비지원

- 대상 미생물 : 살모넬라균,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
- 검사품목 : 햄류, 소시지류, 우유류
- 세부실시요령 : '99 축산물중 미생물검사요령 참조
- 감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국내 유통중인 식육(수입식육 포함)에 대한 미생물검사 실시위한 장비지원

- 대상 미생물 : 살모넬라균,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
- 세부실시요령 : '99 축산물중 미생물검사요령 참조
- 감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나. 재료비 지원

○ 농장단계에서 가축중 유해잔류물질 예비검사위한 지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재료구입 및 장비검증비 지원

- 도축검사용 재료비 지원

- 일반도축검사용 도축정인 및 검인용 색소 구입비
- 미생물검사 및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위한 시험기구, 시약등 구입비

- 원유검사장비 검증

- 사업추진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사업기간 : '99. 1 ~ '99.12
- 자동검사장비 검증대상 : 집유장의 원유중 세균수 및 체세포수 자동검사 측정기기
- 검증회수 : 정기검증 - 년 3회, 수시검증 - 필요시
- 기타 참고사항 : 기타의 세균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유대지급을 위한 원유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집유장에서 보정계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농림부를 통해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사용가능

-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가공품 미생물검사 위한 재료구입 지원
- 국내 유통중인 식육(수입식육 포함)에 대한 미생물검사 위한 재료 구입 지원

3) 추진체계

- 사업시행 방법
 - 시·도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 검사장비 지원 : 별첨 5
 - 기타 세부사업내용 : '99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검사요령 및 '99 축산물중 미생물검사요령 참조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또는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가축위생과 02-500-2693/4
 - 시·도 : 농정과 또는 축산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검사기획과 0343-467-1721~35

<별첨1>

○ '99 시도별 예방주사물량

(단위 : 천두·수)

구분	탄저기종저	전염성기관지염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TGE	오제스키	광견병	부루세라	진도견디스토펙파	뉴캐슬	야생동물광견병
서울	0.4	-	-	-	2	1	-	-	60			-	
부산	0.5	-	-	-	80	40	8	-	40			300	
대구	2	1	1	0.2	100	10	10	-	20			-	
인천	7	1.5	3	1	200	20	20	-	30			-	
광주	0.5	1.5	2.5	0.5	20	8	2	-	5			800	
대전	0.5	1	1.48	0.5	10	6	2	-	3			400	
울산	0.5	1.5	2.4	1	88	13	8	-	8			-	
경기	200	30	60	30	4,000	202	406	300	404			105,000	10
강원	60	15	20	5	700	30	74	-	140			4,500	10
충북	40	22.5	45.2	15	900	54	80	-	73			22,000	
충남	150	28	51	10	3,000	276	286	200	112			74,000	
전북	50	15	40	5	1,500	80	174	-	100			60,000	
전남	70	25	50	10	1,500	160	168	-	126		20	8,000	
경북	150	30	60	10	2,100	120	188	-	78			14,000	
경남	80	25	70	30	2,300	200	168	-	89			10,000	
제주	-	3	30	5	-	40	66		12			1,000	
계	811.4	200	436.58	123.2	16,500	1,260	1,660	500	1,300		20	300,000	20

<별첨2>

○ '99 시도별 검진, 기생충구제, 기타사업 물량

(단위 : 천두·수·건)

시 도	우결핵	Br. MRT	Br. Plate	Br. Rose Bengal	추백리	소진드기	꿀 벌 응애류	꿀 벌 노제마병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유방염 방 제
서 울	0.2	2	0.1		-		13	13	8	-
부 산	2	2	0.2		-		9	9	3	-
대 구	4.5	2	0.2		-		6	6	3.4	0.5
인 천	7	3	0.3		0.3		4	4	4.2	0.5
광 주	1.5	2	0.1		-		9	9	3	0.5
대 전	0.6	2	0.1		1.2		2	2	4	-
울 산	1.8	0.72	0.12		-		9	9	2.2	0.96
경 기	144	23	6.4		42.5		45	45	81.7	16
강 원	20	8	3		1.5		63	63	15.4	6
충 북	20	6	3		3.8		62	62	22	5
충 남	57	15	4.2		45.2		60	60	40.1	8
전 북	25.5	4	4.5		18.7		40	40	22	5
전 남	23	2	2		5.7		72	72	30	5
경 북	40	12	4.5		4.7		172	172	25	9
경 남	36	5.2	3		4		118	118	24	5
제 주	3	-	-	50	1	1,000	22	22	6	1
계	386.1	88.92	31.72	50	128.6	1,000	706	706	294	62.46

<별첨3>

○ '99 국비 공수의 배치 및 수당예산

구 분	배 치 인 원			수 당 예 산		
	계	일반지역	특별지역	계	국비	지방비
계	252명	247	5	1,520,640	760,320	760,320
대 구	1	1	-	5,880	2,940	2,940
인 천	4	3	1	31,296	15,648	15,648
광 주	1	1	-	5,880	2,940	2,940
울 산	2	2	-	11,760	5,880	5,880
경 기	29	29	-	170,520	85,260	85,260
강 원	24	24	-	141,120	70,560	70,560
충 북	20	20	-	117,600	58,800	58,800
충 남	32	32	-	188,160	94,080	94,080
전 북	27	27	-	158,760	79,380	79,380
전 남	36	33	3	235,008	117,504	117,504
경 북	39	38	1	237,096	118,548	118,548
경 남	32	32	-	188,160	94,080	94,080
제 주	5	5	-	29,400	14,700	14,700

○ 배치기준 및 월수당

구 분	배치기준	월 수 당		
		계	국비	지방비
일반지역	읍·면 소재지이상	490	245	245
특별지역	도서 및 특수오지	1,138	569	569

- 지방비 소요예산을 확보한 시도에서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수당증액 지급 가능
- 국비 공수의 부족한 시도에서는 지방비 공수의를 위축·운용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별로 공동방역사업단을 우선으로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양축농가의 가축방역 업무 지원을 강화할 것.

<별첨4>

○ '99 시도별 방역장비 구입 예산내역

(단위:대, 백만원)

품 명	가격	사업량	금액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방역 장비	기동방역 차량	15	19	285	-	-	-	-	-	-	4	2	2	3	2	-	3	2	1
	소독시설 (시험소)	30	23	690	-	-	1	1	-	-	3	2	3	3	3	-	3	3	1
합 계	4종		42	975 (국비) 487.5	-	-	1	1	-	-	7	4	5	6	5	-	6	5	2

- 방역장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
- 시도별 차량구입,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지침 별도 송부

< 별첨 5 >

○ '99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예산내역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장 비 명	가격	단 가	물 량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가 공 품 검 사	농축기	150	15	10	-	-	-	1	-	1	-	1	-	1	2	-	1	1	-
	시료전처리기	525	35	15	-	1	2	1	-	-	2	1	1	1	1	1	1	2	1
	회화로	20	10	2	-	-	-	-	-	1	-	-	-	-	1	-	-	-	-
	쿨결계	80	10	8	-	1	-	1	1	-	-	1	1	-	1	1	-	1	-
	HP TLC	300	50	6	-	1	-	1	1	1	1	-	-	-	-	-	-	-	1
	유해가스배출장치	180	15	12	-	1	1	-	1	2	1	1	2	1	1	-	-	1	-
	실험실자동화장치	320	40	8	-	-	-	-	-	-	1	1	1	1	1	-	1	1	1
	초순수제조기	160	20	8	1	-	1	-	1	-	2	1	1	1	-	-	-	-	-
	초저온냉동고	220	20	11	-	-	-	1	1	1	1	-	1	1	1	1	1	1	1
	자동초자세척기	385	35	11	1	1	1	1	1	1	1	-	1	1	1	-	1	-	-
소계	10종	2,340	-	91	2	5	5	6	6	7	9	6	8	7	9	3	5	7	4
잔 류 물 질 검 사	GC/MS	130	130	1	-	-	-	-	-	-	-	1	-	-	-	-	-	-	-
	HPLC	130	65	2	-	1	-	1	-	-	-	-	-	-	-	-	-	-	-
	GC	180	60	3	-	1	-	-	-	-	-	-	-	1	-	-	-	1	-
	무정전장치	150	10	15	-	1	1	2	2	2	2	1	-	1	-	1	1	1	1
소계	4종	590	-	20	-	3	1	3	2	2	2	-	2	-	1	1	1	1	1
원 유 검 사	원유성분분석기	550	110	5	-	-	-	-	-	-	2	-	-	1	1	-	-	1	-
	빙점검사기	160	20	8	-	-	-	-	-	-	2	1	1	1	1	-	1	1	-
	바코드장비	540	60	9	-	-	-	-	-	-	2	1	1	1	1	-	1	1	1
	항생제간이검사기	45	5	9	-	-	-	-	-	-	2	1	1	1	1	1	1	1	-
소계	4종	1295	-	31	-	-	-	-	-	8	3	2	4	4	4	1	3	4	1
미 생 물 검 사	자동회석분주기	400	40	10	1	-	1	-	1	1	-	1	1	1	1	1	-	1	-
	미생물검사기	315	35	9	2	1	1	-	1	1	-	-	-	-	1	1	-	-	1
	현미경	180	30	6	-	-	-	1	-	-	1	-	1	-	1	-	1	-	1
	혐기성배양기	300	30	10	1	-	1	1	1	1	1	-	-	1	1	-	1	1	-
	PCR	270	30	9	-	-	-	-	-	-	2	1	1	1	1	1	1	1	-
소계	5종	1465	-	44	4	1	3	2	3	3	4	2	4	3	5	3	3	3	2
기 타	자동조직절편기	150	30	5	-	-	-	-	-	-	1	-	1	-	1	-	1	1	-
	ELISA 판독기	60	20	3	-	-	-	-	-	-	-	-	1	1	-	-	-	-	1
	원심분리기	100	20	5	-	1	1	-	-	-	-	-	1	1	1	-	-	-	
소계	3종	310	-	13	-	1	1	-	-	-	1	-	3	2	2	-	1	1	1
물량 합계(26종)				199	6	10	10	11	11	12	24	13	18	17	20	8	14	16	9
총액금액		6,000			195	335	275	310	275	285	830	430	515	515	605	185	390	555	300

※ - 축산물검사장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재료비 : 축산가공품검사 실시등 업무량증가를 고려하여 '98년도 대비 200% 이상 확보

7. 2000년도 사업시행 안내

< 가축방역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시행기관 : 농림부, 시도, 시군자치구

다. 사업시행절차

- 예방주사 : 시도지사(시군) 예방약구입 → 공수의사 동원 예방주사 실시
- 검진 :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대상농가 검진
- 기생충구제 : 시장·군수가 구제약품을 대상농가에 지원

< 축산물검사 >

가. 사업주체 : 시·도지사(가축위생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

나. 사업내용 : 축산물검사장비 및 재료비 지원

< 서식 2 >

심사제외

‘99. ()분기 가축방역 실적보고

1. 가축 혈청검사

(시)
(도)

축종	병류별	연간계획 두수	검사실적		검사결과			검사방법	양성판정 항체가
			검사 건수	검사 두수	양성	음성	계		
○○	○○ (농장) (도축장)	○○ () ()	() ()	() ()	() ()	() ()	() ()		

2. 도축장 출하돈 일제 검사결과

(시)
(도)

검사기관 (시험소별)	출하지역 (시·군별)	검사두수	검사결과			비고
			양성	음성	계	

※ 양성축에 대하여 농장명, 사육명, 소재지, 사육두수, 양성두수를 별도 명기할 것

3. 종돈장·양돈장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시)
(도)

종돈장 (양돈장)	성명	주소	사육 두수	검사 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4. 유방염 방제사업

(도)

(단위 : 두)

시험소별	년간계획 두수	검사결과				감염율(%)		비 고
		검사목장수 (등의판정)	검사 두수	양성 두수	양성분방수	임상 (두수)	준임상 (두수)	

5. 공수의

공수의 배치실적

군별	해 촉			위 촉						비 고	
	성명	동물 병원 명칭	배치지 (읍면)	면허 번호	성명	동물 병원 명칭	배치지 (읍면)	지역·수당			위촉 일자
								지역	수당		
계	국비 : 일반지역 명 특별지역 명			지방비 : 일반지역 명 특별지역 명							
	계 명			계 명							

※ 지역란에 일반·특별, 비고란에 국비·지방비 구분 기재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

동물병원 명칭	공수의 성명	면허 번호	배치 지역	예찰 실시회수	사업실적 (예방주사) 두수	업무보고 적정여부	업무평정 실시결과	비 고

< 작성요령 >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

II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1. 목 적

- 도축위생시설의 현대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HACCP 제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도축위생시설의 신규도입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향상을 통한 국민보건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2000. 7 부터 2003. 7까지 작업장 규모별로 연차별 의무적용 확대
- HACCP 의무적용시기 이전에 동제도의 적용을 희망하는 도축장부터 우선 하여 자금지원
- 식육수출작업장등 HACCP 적용필요성이 높은 도축장부터 우선 자금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위생시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
 - HACCP제도 적용대상 작업장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49호 : '98.8.10)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9	2000	2001	2002
사업량	50 개소	10	15	15	10
사업비	25,000	5,000	7,500	7,500	5,000
- 용 자	17,500	3,500	5,250	5,250	3,500
- 자 담	7,500	1,500	2,250	2,250	1,500

※ 개소당 500백만원(용자 350, 자담 150)

5. 위생시설지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지 원 사 유	지 원 내 역	
		금 액	산출근거
돼지이송체인컨베어	도체자동이송으로 도체오염 사전예방	100	100×1대
소이송체인컨베어	"	100	100×1대
손칼세척기	작업자 위치마다 온수 세척·소독설비 설치하여 도체간 오염방지	30	2×15대
장화세척기	작업장 출입시 장화소독	10	5×2대
앞치마세척기	작업장 앞치마세척	20	2.5×8대
트로리 및 훅세척기	도체이송라인 세척으로 위생도축	20	10×2개
공조시설	작업장내 먼지, 수증기 등에 의한 도체 오염방지	100	100×1대
냉동차량내 현수시설	도체현수로 도체의 바닥접촉 오염방지	20	20×1대
지육상차시설	위생적인 지육상차작업 실시	20	20×1대
항문결찰기	항문과열로 인한 대장균등 병원성미생물 오염방지	80	40×2대
계		500	10종, 33대

6.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6조(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과 적용대상) 및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규정에 도축장이 부합되기 위하여는 일부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현재 위생시설 지원없이 규제제도만 운영되고 있어 개선애로)
-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설비가 필수
- 도축장에 병원성미생물(E. coli O-157:H7등) 등의 오염방지시설 설치
- 위생적인 도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축위생시설·기구 설치

나.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1년
 - 수출작업장 및 전년도 1일 평균도축실적 소50두, 돼지 500두이상 또는 닭 50천수이상 작업장 지원
- 총사업비 : 개소당 500백만원(용자 70%, 자담 30%), 5년거치 10년상환(5% 이자율 적용)
- 지원대상 시설 : 돼지이송체인컨베어등 10종
 - 단, 지원대상작업장에 지원대상시설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비를 여타 위생시설 설치등의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는 본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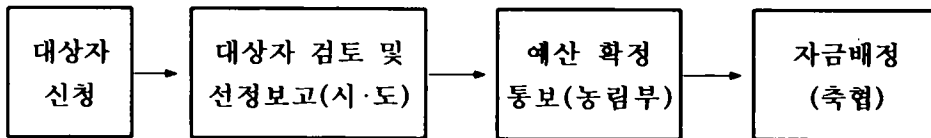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위생과(02-504-9438~9)
- 시·도 : 축산(축정·농산)과
- 축협중앙회 : 기금관리부

다. 사업시행절차

- 도축장 영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사업계획서(별첨참조)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 대상 도축장 1개소 신청
 - 사업신청도축장이 총 10개를 넘는 경우는 농림부에서 대상작업장 결정
 - 1개 시·도 1개작업장 지원원칙이나 지원신청 시·도가 적은 경우는 1개 시·도에 1개이상 지원가능
- 사업비는 시·도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집행



< 행정사항 >

- 사후관리 : 시·도에서 반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대상자는 전분기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해당도에 보고, 시·도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등)

7. 2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 나. 신청자격 : 도축장
-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
- 라. 대상자 선정기준 : '99년 사업요령과 동일

사 업 계 획 서

1. 도축장 개요

- 도축장명 및 허가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종업원수 :
- 도축능력(두/일)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위생시설 구입 및 설치계획

시설명	소요금액	용 도	구입예정 시 기	설치예정 시 기	비 고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 위생시설 설치이전과 이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도축장 위생관리프로그램(위생적인 도축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래)

< 별첨 7 >

사업비정산보고

(단위 : 백만원)

작업장명	시설명	사업비 지원 대 정산			비 고 (설치일자등 기입)
		계	축발용자	자부담	
	합 계				

※ 상단, 하단 구분하여 상단: 정산액, 하단: 예산액을 지원

49	학교우유급식사업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사무관 송인곤) 입니다.

1. 목적

- 우유 소비기반을 저변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극빈·불우 초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비 전액 보조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극빈·불우 초등학생에 대해 우유 급식비 전액 보조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5조(정부지원)
 - 낙농진흥에 필요한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	2001-2004	
사업량	천명/일 177	170	154	185	185	740	
사업비	계	백만원 30,222	6,630	7,215	7,043	8,695	34,780
	보조	30,222	6,630	7,215	7,043	8,695	34,780
	용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	-	-	-	-	-

* '96년의 경우 지원일수 162일('99.2~'99.10 기간중) 적용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 경
 - 성장기의 어린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개선, 체위향상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교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생 등)
-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교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초등학교생을 추가 선정 가능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생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학교우유 급식	천명/일 185	백만원 7,043	7,043	7,043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 도 :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 시 군 : 축산과(산업과)

다. 급식기간 : '99.2~'99.10월(162일) 기준(개학기간중에 급식)

라. 보조급식계획(일평균) : 185천명(일반급식 3,315천명)

마. 사업실시방법

○ 보조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자부담으로 급식

- 초등학교 : 보조급식과 같은 용량 및 가격으로 급식

- 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용량 및 가격결정 가능

바. '99 지원계획 : 7,043백만원(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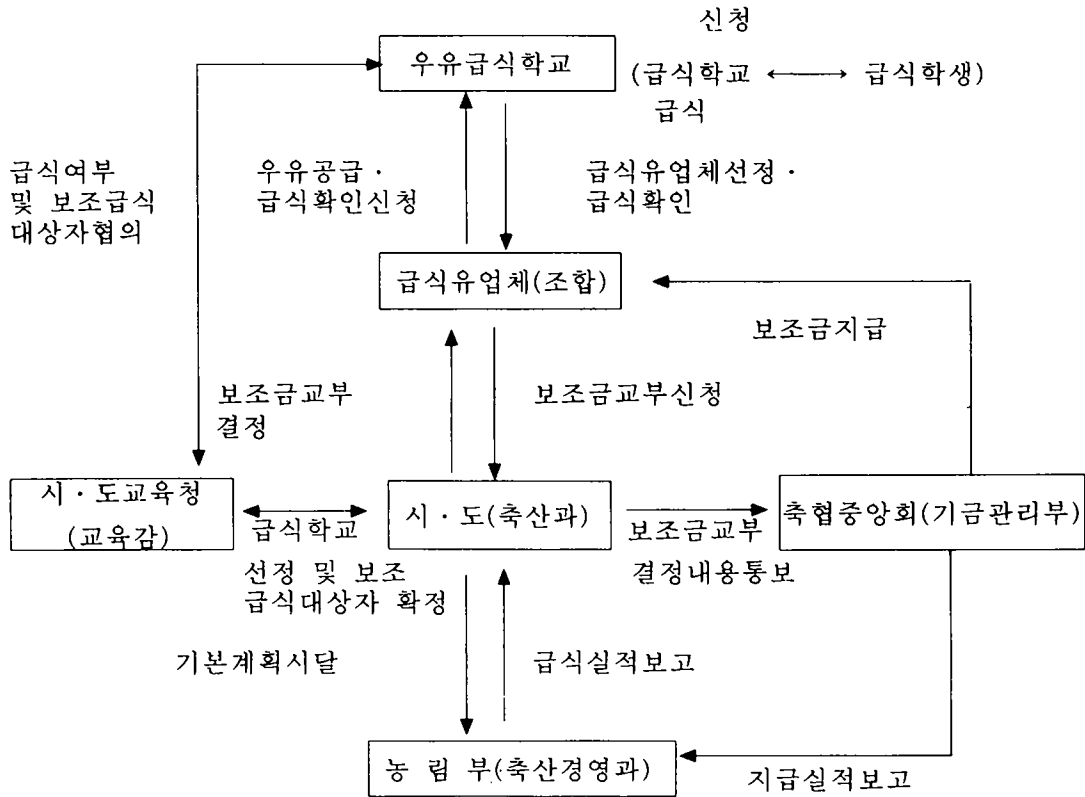
○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 <별표1> 참조

사. 보조급식 우유용량 및 가격기준 : 235원이하/200ml

단, 도서벽지는 분유급식가능 : 22g 100원

※ 급식우유의 용량(200ml)은 변동 할 수 없음. 다만, 공급가격은 235원 이하로 조정 가능

아. 사업추진체계도



자. 급식학교 및 급식유업체 선정

- 급식학교 :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선정
- 급식유업체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시·도에서는 급식유업체등 안내)

차. 보조금 교부등 절차

- 보조신청(보조사업자) : 급식유업체(대표)
- 보조금 교부결정자 : 시·도지사
- 보조금 지급기관 : 축협중앙회장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급식우유가 백색시유만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유업체가 급식 중단 및 급식품목 변경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실시
 - 급식유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가공유·발효유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급식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시 급식유업체 변경등 시정조치
- 시·도지사는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류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그 내용을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보조금교부결정내역에 의하여 급식유업체의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오류·착오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나. 보고·기타

- 시·도 및 축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보)	시·도	매익월 20일한	가 26 - 60
학교우유급식보조금지급실적보고(월보)	축협중앙회	매익월 20일한	가 26 - 60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교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 등)

나.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 초등학생을 추가 선정
 - * 급식보조금 지급대상 : '99.11~2000.2 기간중 기 급식 실시학생과 2000.3~2000.10 기간중 급식대상 선정 학생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다. 기타사항

- 급식품목 : 백색시유
- 급식규격 및 가격
 - 초등학교 : 200ml를 기준하여 235원(상한가)
 - 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 단, 도서벽지는 분유급식 가능 : 22g 100원

(별표 1)

'99학교우유 보조급식 시·도 지원계획

(단위 : 명/일, 천원)

구 분	급 식 대 상 인 원			보 조 금
	보조급식	일반급식	계	
서 울	13,000	714,000	727,000	494,910
부 산	3,400	450,000	453,400	129,438
대 구	10,100	123,000	133,100	384,507
인 천	1,900	259,000	260,900	72,333
광 주	5,000	100,000	105,000	190,350
대 전	2,800	146,000	148,800	106,596
울 산	700	106,000	106,700	26,649
경 기	13,600	94,000	107,600	517,752
강 원	13,900	168,000	181,900	529,173
충 북	16,500	126,000	142,500	628,155
충 남	17,000	165,000	182,000	647,190
전 북	34,000	82,000	116,000	1,294,380
전 남	26,000	229,000	255,000	989,820
경 북	17,000	270,000	287,000	647,190
경 남	7,400	240,000	247,400	281,718
세 주	2,700	43,000	45,700	102,789
합 계	185,000	3,315,000	3,500,000	7,042,950

※ 연간 162일('99.1~'99.10까지) 급식 기준

(별표 2) : 시·도지사 농림부 보고서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월)

○○시·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개소	명	원				
당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누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 보조금액은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방비 보조등은 일반급식란에 기재

※ 학생수는 당월 및 누계 인원을 해당기간중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되

학교수는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지 말것

(별표 3) : 축협중앙회의 농림부 보고서식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실적보고(월)

1. 시·도별 보조금 지급실적

시도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명	원				

2.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유업체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천명	천원				

※ 보조금액 = 학생수 × 급식단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과장 김남철, 사무관 정병규) 축산물유통과(과장 최형규, 사무관 신대식) 입니다.

1. 목적

- 생산자단체의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등을 통한 축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업 발전
-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수급 및 소비 정보제공을 통해 축산업의 균형성장 도모
- 축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92-'95	'96	'97	'98	'99 (예산안)	'2000-2004
사업량(개소)		8	-	2	2	2	
사업비	계	백만원 1,114	400	600	504	501	
	보조	341	133	200	168	167	
	자부담	773	267	400	336	334	

5. '99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사업대상자
 -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로서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 지원내용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축산물 수급 및 소비에 대한 조사 연구
 - 생산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지원규모
 - 협회가 조성한 자조금의 100분지 50% 범위내 보조지원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자조금 지원사업	개소 2	백만원 501	167	167	-	-	33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축산물유통과(02-504-9436~7)
- 한국낙농육우협회(02-588-7055)
- 대한양돈협회(02-553-3942-7)
- 대한양계협회(02-588-7651-4)

다. 사업시행

- 추진방식 : 자조금 구성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 추진
- 추진내용 : 사육조절, 수매비축·판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

< 행정 사항 >

- 생산자 단체(협회)는 자조금에 관한 '99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업추진
- 축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협회)의 보조금 신청시 항목별 승인내용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보 고

보 고 내 용	보 고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사업운영계획 승인요청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보고서식 붙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1월말 까지 ○ 익년 1월말 까지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부

나. 신청자격

-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다. 신청절차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은 축산자조금의 계속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99.3.31일까지 목적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2000년 예산요구액 및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축산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1. 사업추진기관 :
- 2. 대 표 자 :
- 3. 사업기간 : 199 ~ 199
- 4.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계 획(A)			실 적(B)			B/A (%)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계	
합 계							

상기와 같이 '99축산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금액을 제출합니다.

1999. . . .

(사) 협회장(인)

농림부장관 귀하

여 백

Ⅲ. 가 축 개 량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최상태, 사무관 노수현)입니다.

I. 한우개량사업

1. 목 적

- 순수개량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
- 우량종우 생산기반 구축,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보증종모우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여 한우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가중심의 "개량사업"으로 추진
 -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로 개량촉진
 - 정확한 개체능력 조사 및 기록유지
- 개량농가와 한우능력검정 연계추진
 -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생산 및 당·후대검정을 통해 우량종모우 선발
 - 선발된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및 정액생산공급
 - 한우개량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2	2	2	2		
사 업 비	계	112,903백만원	24,505	23,698	19,602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67,903 45,000	24,505	23,698	19,602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가) 한우개량농가 육성

○ 사업추진배경

- 한우의 순수혈통을 보전하면서 우량 육용우로 개량하여 최고기 공급
자원으로 육성
 - 1979 : 한우순수계통번식사업지구 확정(각 도당 1개소씩 8개지구)
 - 1988 : 한우개량단지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95 : 단지밖의 규모화된 한우번식 농가를 「개량농가」로 참여 허용
 - 1998 : 한우개량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등록우 관리조합을 중심으로 개량
농가 위주의 사업실시
- 연도별 개량단지조성 현황

	'79	'87	'88	'89	'90	'91	'92	'95	계
단지조성(개소)	8	4	20	32	36	21	79	50	250

○ 사업내용

- 등록우관리조합은 관내 농가중에서 개량농가를 선정하고 등록된 한우를 관리
- 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등록우관리
- 추천종모우에 의한 등록우 계획교배
-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 관리 및 등록
- 등록우에 대한 발육조사 및 번식실태 조사 실시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숫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에 대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육능력검정 및 도체평가로 보증종
모우 선발

○ 한우정액생산공급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개량농가 등 양축
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가) 한우개량농가

- 농가조사 사례비 지원

나) 한우 등록우 관리조합

- 등록우관리비 지원

다)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시설, 검정축구입등 고정투자와 인건비, 재료비등 소요자금 지원

라)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보조사업비,기금사업비, 고정자산비)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9,602	19,602	19,603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180천두	10,793	10,793	10,793			
- 보조사업비		10,337	10,337	10,337			
- 기금사업비		436	436	436			
- 고정자산비		20	20	20			
○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1 개소	8,810	8,810	8,810			
- 기금사업비		586	586	586			
- 고정자산비		8,224	8,224	8,22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 협조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한우개량부(전화 0455-63-8635)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한우등록우관리조합 운영 및 개량농가 운영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99사업계획

농 가	등록우관리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40천호	180	100	75

< 사업추진방법(별표 2) >

○ 등록우관리

- 관리대상

- 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것

- 등록우 관리카드 작성·보존

- 종축개량협회장은 종축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소산업정보화사업의 바코드 귀표번호로 대체
- 개량농가 관리조합에서는 개체표식을 바코드 귀표번호로 통일하여 개체별 등록우 관리자료를 PC로 작성관리 하되 Back-Up화일로 보존
- 년 2회이상 농가에 개체별 등록우관리 자료를 제공
- 이동, 도태등 관리제적우의 관리자료는 별도 보존(5년)

- 귀표부착

- 대상, 시기 : 기존등록우, 신규등록우(수송아지 포함) 및 기존귀표 탈락시 부착
- 귀표종류 :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공급하는 바-코드 귀표
- 부착방법 : 한우개량농가 등록우에 대한 귀표는 “소산업 정보화사업” 방식으로 개량단지 지도원이 부착

- 등록우 자질관리

- 기존 관리우중 자질이 불량한 등록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혈통등록우중 고등등록 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한우개량농가 추가지정 및 정비

- 지정요건 : 1세이상 한우암소를 심사결과 5두이상 등록된 농가
2000년부터는 혈통등록우만 사업대상으로 참여를 허용하되, 참여희망농가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등록우 1두이상을 포함하여 농가의 총 등록우가 5두 이상이어야 함.
- 정비방법 : 기존 개량농가에 대하여 수시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농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교배종모우 추천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개량농가별로 등록우의 체형을 조사·분석하여 등록우 결점 보완 및 근친교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종모우 10두이상을 추천하고 축협중앙회장에 통보. 단, 농가 희망시 특정종모우 정액사용을 허용하되 친자 확인등 검증체계 확립
- 등록우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추천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 및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 인공수정

- 농가별 추천종모우 정액 공급
- 등록우에 대해 추천종모우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야 하며 인공수정증명서 발급 및 인공수정대장 기록 비치

- 송아지생산·관리

- 등록우에 추천종모우 정액으로 인공수정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즉시 생시체중을 측정하여 어미소의 개량자료 조사표에 기재하여 조사사례비 지급 신청서와 해당조합(또는 농가지도원)에 송아지생산 신고
- 관리조합은 어미소의 등록여부(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추천종모우 정액에 의한 수정여부, 수정일과 분만예정일 적합 여부, 시술자와 수정상황 및 농가·조합비치 관리카드 정비여부, 개량자료 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한 측정·기재여부 등을 확인

- 생산된 송아지 관리

- 후대축은 분만후 5일 이내에 확인하여 등록우 관리자료에 생산내역을 기록하고 3개월령 이내에 심사하여 합격축은 혈통등록과 동시에 귀표부착후 관리
- 우량 후대축 매각방지를 위해 송아지생산 확인시 예비심사하여 합격이 가능한 후대축은 이동 억제토록 지도

○ 송아지 등록

-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후대축으로 심사에 합격한 전두수를 대상으로 등록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등록규정에 의함

○ 참여농가의 규모화 및 정예화

- 개량농가중 소규모 사육농가는 연차별 관리대상에서 제외. 단, 고등등록우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관리두수에 포함

	'96	'98	2000	2002
지원제외 규모	1두사육농가	2두	3두	4두

- 개량정도가 낮은 기초등록우는 연차별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단지 지정해제여부 관계없이 추진)
- 단,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기초등록우에서 생산된 혈통등록우 및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기초등록하여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은 포함

	'96	'97	'98	2001	2002	2003
지원제외 단지 및 개량농가	'90조성단지 (36개소)	'91조성단지 (21개소)	'92조성단지 (79개소)	'95조성단지 (50개소) '95개량농가	'96~'97 개량농가	'98~'99 개량농가

○ 등록우 조사사업

- 발육능력조사 : 송아지생산시 조사사례비와 함께 농가가 작성한 개량자료 조사표의 내용을 사례비 지급시 당일 PC입력
- 조사내용 :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등록(혈통, 고등, 육종)시
- 등록우 개량추세 조사를 위한 월령별 표본조사(년 1회 이상)
- 번식능력조사
- 조사내용 : 초종부일령, 초산일령, 번식간격, 수태당 종부회수등

○ 개량농가 관리

- 지역축협은 등록우 이동방지와 세대축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 도 종축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년 1회이상 단지내 농가 및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 실시
- 축협중앙회는 참여농가의 개량자료 조사편의를 위하여 리·동 단위에 배치되는 우형기 및 체척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달

< 사업비 지원방법 >

○ 개량자료 농가조사사례비

- 지원대상 : 계획교배로 송아지를 생산한 등록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기초등록우 : 35천원(인공유 100kg 및 번식우사료 현물지급)
 - 혈통등록우 : 50천원(인공유 100kg 및 번식우사료 현물지급)
 - 고등등록우 : 70천원(인공유 100kg 및 번식우사료 현물지급)
- 지원방법
 - 등록농가는 송아지생산시 개량자료 조사표, 송아지생산 신고 및 조사사례비 지급신청서를 해당조합에 제출

- 조합에서는 동 조사표 및 신청서가 추천종모우 교배등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공유 및 번식우사료 지급
- 지도원 등록우 관리비 지원
 - 지도원의 등록우 관리실적에 따라 두당 36천원 지원(분기별로 분할지원)
 - 등록우 관리두수에 대한 경제형질조사, 송아지 생산, 번식관련기록의 분기별 전산입력 결과에 따라 관리비 지원.
 - 분기별 개체관리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후대검정에 공시할 후보종모우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당대검정기관의 검정개시 시기를 조정추진 가능

< 사업추진방법(별표4) >

- 당대검정
 - 검정기관 : 축협한우개량부
 - 검정목표 : 당대검정 500두, 후보종모우 선발 60두
 - 당대검정축 및 당대검정우 생산용 빈우 확보 : 축협 자체생산우, 개량기관 및 개량농가에서 매입 확보(산지평균시세의 130% 수준에서 매입)
 - 검정방법 및 검정성적 통보
 - 검정방법 : 한우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18호, '97.3.6)에 의하여 실시
 - 검정성적 : 검정기관장은 검정 완료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에 통보
- 후보종모우 선발 및 확보
 - 축협중앙회장은 당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평가)하여 후보종모우를 선발하고 선발된 후보종모우를 산지평균시세의 150% 수준에서 매입
- 후대검정
 - 검정기관 : 축산기술연구소(남원지소, 대관령지소)
 - 검정목표 : 후보종모우 공시 60두, 후대검정 700두, 보증종모우 선발 20두
 - 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대상축) 확보
 - 축협중앙회 한우개량부와 축산기술연구소간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확보 하되 산지평균 시세의 130% 수준에서 매입하여 확보

- 검정방법 및 검정성적 평가
 - 검정방법 : 한우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18호, '97.3.6)에 의하여 실시
 - 성적평가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후대검정대상우의 성적을 후보종모우별로 종합 정리하여 분석·평가
- 보증종모우 선발
 -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위원회) 자문 및 후보종모우별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보증종모우 선발
- 당·후대검정 사료의 생산·공급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검정사료 소요량을 축협 청주배합사료공장에 신청
 - 동 사료공장은 한우검정요령 중 농후사료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기준을 준수한 검정사료를 일괄 생산·공급
- 정액생산 및 공급
 -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선발된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를 성실히 관리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및 공급
 - 축협중앙회장(한우개량부)은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비경흑색등) 생산여부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민원방지

< 사업비 지원방법 >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 집행
- 축산기술연구소(남원지소)의 후대검정 비용에 대하여는 국고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축협중앙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간의 용역 계약에 의거 집행
 - 축발기금부담 : 검정축구매관련 비용, 사료비, 검정축 관리인부임 등
 - 국고부담 : 소모성 비품비등
 - 검정축의 소유권은 축협중앙회이며 검정 종료된 도체는 판매하여 기금에 납입

(2) 기타사항

- 한우개량사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참여농가 및 관리조합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 계획
- 한우능력검정 참여기관의 역할 조정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가축개량종합대책('93.12)에서 제시한 한우 후대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축사건축비, 검정축구입, 검정사업비등) 확보에 최대한 노력 경주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공급으로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개량농가 관리를 위한 장비 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조합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9세부사업추진계획서 : '99.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 완료후 1개월이내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 선 발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총괄기관장은 농가 및 관리조합 지원내역에 대한 검정 및 정산실시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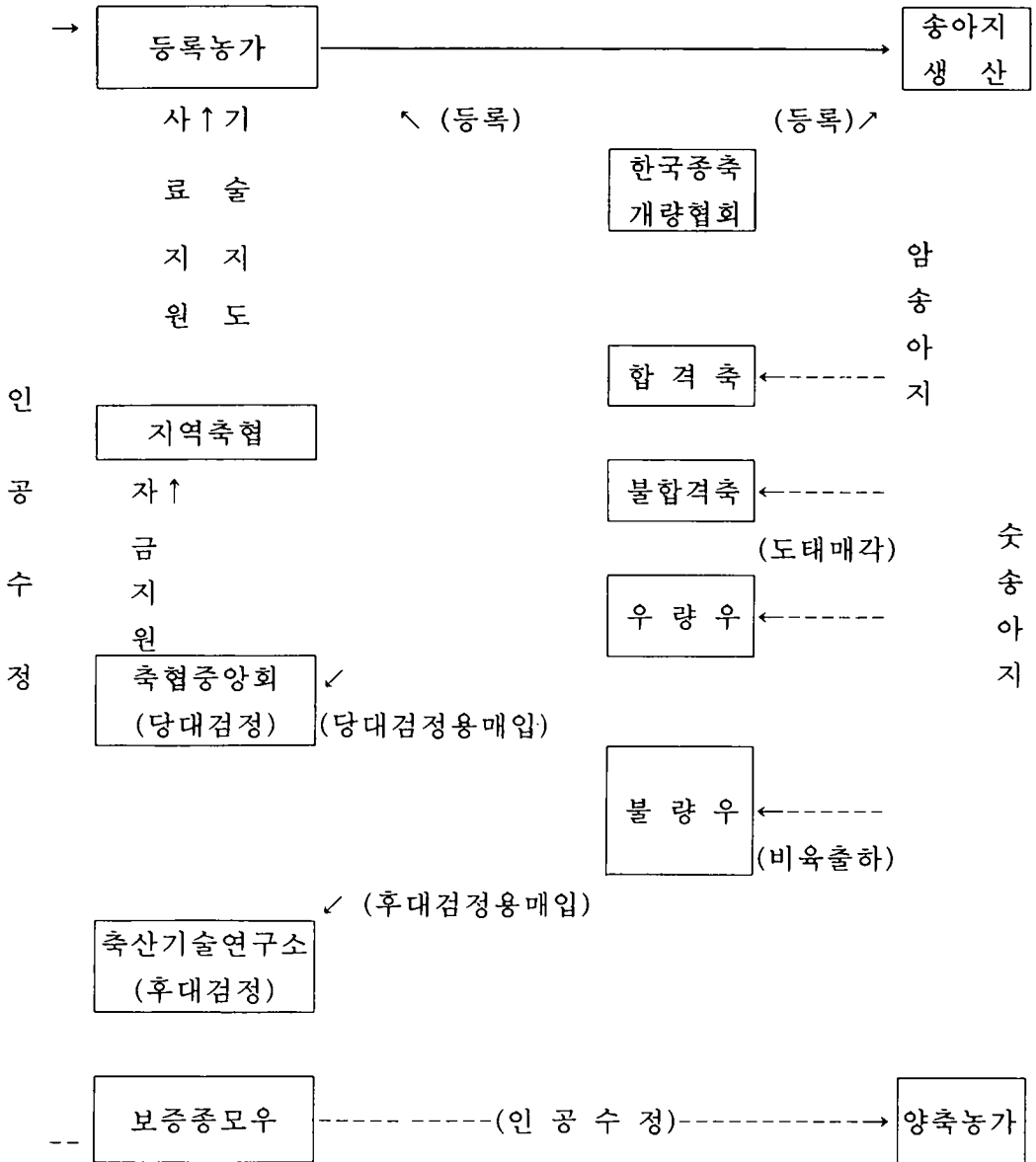
< 연도별 한우개량단지 조성현황 >

		년 도 별			
		'79	'87	'88	'89
개소 도별	250	8	4	20	32
경 기	11	양평군 양동		포천군 창수 · 신북 가평군 창설악	
강 원	27	양양군 강현	춘천시 동면 · 신북	홍천군 서석계 정선군 서임계	평창군 대화천 · 청일 화성군 대갑천 · 청일
충 북	23	청원군 오창		옥천군 청산척강 충주군 대강	괴산군 청초 진천군 청평
충 남	34	공주시 이인	예산군 산양	공주시 의당산 청양군 정산	부여군 외산 · 내산 서산시 갈산연곡동 · 전의 청양군 성안군
전 북	25	장수군 천천		남원시 보절 진안군 부귀치 순창군 부쌍치	완주군 화산외 정읍시 화산외
전 남	42	고흥군 두원	보성군 울어 · 겸백	해남군 삼산전 순천시 상황전	강진군 칠량도동 · 장평 신안군 지장동 · 토청 장흥군 간이현 · 평지 구례군 이현 · 양정 화순군 화순군
경 북	44	의성군 금성		상주군 사벌 예천군 지보 문경시 산일 안동시 산일	김천시 문성 구미군 울봉성영 진천군 화주 군위군 화주 군위군 화주 군위군 화주
경 남	44	울산시 상북	합천군 합천	남해군 남면 양양시 단장	하동군 양곡 진령군 유곡 산청군 유곡 고성군 유곡 사천군 유곡 거창군 유곡 합천군 유곡

년 도 별													
'90	'91	'92				'95							
36	21	79				50							
		여가양	주평평	군군군	북하청	내,면,운	가평평	군군군	북면월	여주군	대신,광	양평군	지제
원삼인고양	주척제성구	시시군	부미기토동	론로린성면	양성주	군군시	손안문	양홍막	춘평화삼	시군군	동진상노	상,부,서,곡	남현둔
영제음보	동천성은	군시군	심수소회	천산이북	괴음제	산성천	군군시	칠원백	성남운	원천주	북이이	이,원,류,	소산
부흥서당금	여성천진산	군군군	은구판송북	산향교산수	논연청	산기양	군군군	광금장	석남평	기성령산	연홍보금예	면,마,포,산,술,	면산봉
임무고남	실주창원	군군군	삼설고아	계천수영	부순장	안창수	군군군	상복계	서홍남	완무임정	주주실읍	고무청용	번구
장영여완영진	성암천도광도	군군군	삼덕화완불입	계진양도갑회	곡광고	성양홍	군군군	주곡도	곡룡덕	담여보강무영진	양천성진안광도	대돌미군해묘지	강두탄해
경영고청울의	주천령송진성	시시군	산화덕진북다	내산곡보면인	영청경	일도주	군군시	신매서	광전면	군영경고구예봉상	위덕산령미천화주	효지용운장유물화	경기천양
울산거거남의	산청창제해령	시군군	두신가연서봉	동등초초면수	창고함	령성양	군군군	성구지	산만곡	의창울통사하함진	령령산영천동양주	정,성,서,산,명,교,의,반	대마양마
		삼인양	척제양	시군군	근북현	덕,면,북,	영고회	월성성	군군군	남현둔	수양산	군군군	암림
		천천	제옥	시군	봉안	양,내,	괴영	산동	군군	소산	수양산	군군	면산봉
		금노보홍	산산령성	군군시	부상청서	리,월,라,부	연서청	기천양	군군	동마비	면산봉	군군	면산봉
		진임고	안실창	군군	백신해	운,덕,리	장순	수창	군군	번구	암림	군군	면산봉
		순곡보완강	천성성도진	군군	승목북청성	주,사,내,산,전	나고무신	주홍안안	시군	동포몽압	강두탄해	시군	면산봉
		경예상성	주천주	시군	내용외수	남,문,서,륜	영포안의	천향동성	시시	고장풍봉	경기천양	시시	면산봉
		합창남산	천령해청	군군	초고장금	개,암,선,서,	함고하거	안성동창	군군	대마양마	산암보리	군군	면산봉
		수도전화현초양	법청진회고생대	군군	안양산성해청천	함밀마고남산합	정,성,서,산,명,교,의,반	지계두도곤진안이	군군	의창울통사하함진	령령산영천동양주	정,성,서,산,명,교,의,반	대마양마

[별표 2]

< 사업시행 체계도 >



[별표 3]

개량자료조사표

분만우내역	개체번호	등록번호	바코드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번식상황	수 정 내 역					분 만 내 역			
	산차	수정회수	수정종모우	최초수정일	마지막수정일	분만일	성별	생시체중	분만상태
송아지특징	모 색	비 경	면 선	미 선	배 선	이모색	이상형질		
분만우 발육상황	구 분	생 시	이유시	혈통등록시	12개월령	고등등록시	육중등록시		
	조 사 일								
	체 중								
	체 고								
	십자부고								
	체 강								
	흉 폭								
	흉 심								
	요 각 폭								
	곤 폭								
	좌 골 폭								
	고 장								
	흉 위								
	전 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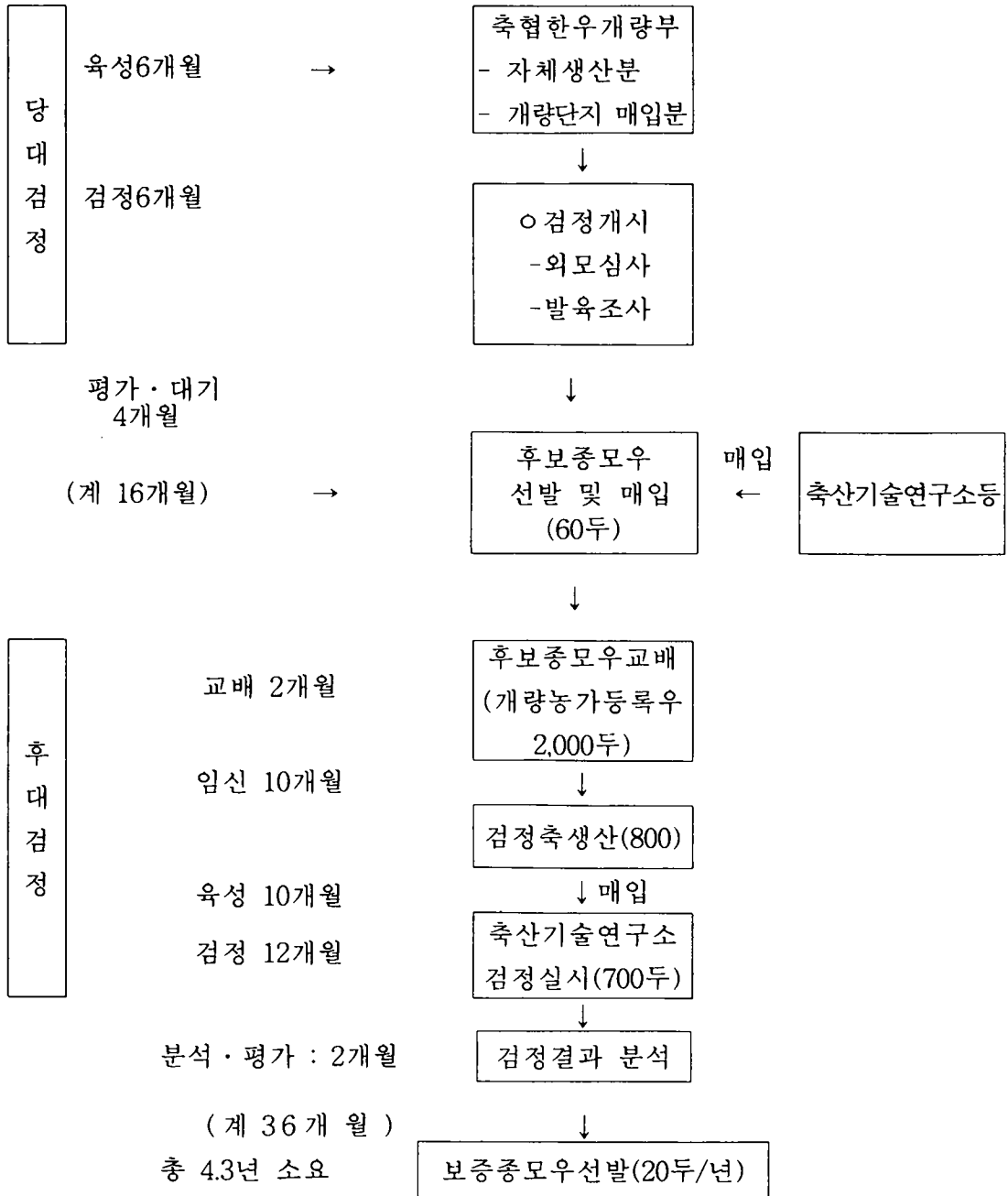
※ 소를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량자료조사표 작성요령 >

- 개체번호 : 등록우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써 귀표를 확인하여 기재
- 등록번호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써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바코드번호 : 소산업 정보화산업에서 부여한 번호로써 귀표를 확인하여 9자리 수를 기재
- 생년월일 :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등록구분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시 명시된 기초, 혈통, 보통, 고등등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번식사항 : 처녀우는 최초 종부부터, 경산우는 최종 분만이후 금번 분만까지의 기간중 종부상황 기재
- 산 차 : 분만한 회수를 기재 예) 초산, 2산, 3산 등
- 수정회수 : 인공수정시 종모우명 기재
- 수정종모우 : 인공수정시 종모우명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하되 쌍태임 경우는 암1, 수2, 암·수중 선택기재
- 생시체중 : 송아지 출생시 체중을 측정하여 기재
- 분만상태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송아지 특징 : 분만시 송아지의 특징 기재(혈통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예) 모색 : 황, 면선 : 하, 미선 : 결, 배선 : 후, 비경 : 황,
이모색 : 백반, 이상형질 : 프리마틴
- 조사일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한 연월일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우형기, 세척기, 캘리퍼, 줄자를 이용한 측정기를 기재
 - 생시, 이유시, 혈통등록시, 12개월령, 고등등록시, 육종등록시로 구분하여 체중 및 체위 등 12개 형질 조사

[별표 4]

< 단계별, 기관별 사업추진방법 >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한우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1. 당대검정							
o 교배	두	사업량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 축산연	"						
o 수송아지생산	"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 축산연	"						
o 검정	"						
o 후보종모우선발	"						
2. 후대검정							
o 검정축생산	"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o 검정	"						
o 보증종모우선발	"						
3. 정액생산 공급							
o 종모우 사육	두						
- 보증종모우	"						
- 후보정모우	"						
o 정액생산	천st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o 정액공급	"						

〈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응 자	합계(B)	보 조	응 자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향후과제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단위	평가 구분	계획 (A)	/4 분기까지		진도 (%)	
				계획 (B)	실적 (C)	C/B	C/A
○ 등록우 관리운영 - 개량농가	조 합	사업량					
○ 등록우관리 - 개량농가	두	"					
○ 인공수정 - 개량농가	"	"					
○ 송아지 생산 - 개량농가	"	"					

< 사업비 집행실적 >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 (A)	보 조	용자	합계 (B)	보 조	용자	
종축등록사업							40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향후과제

II. 젓소개량사업

1. 목 적

- 젓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젓소개량을 위한 기반확충 및 인식도 제고와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젓소보증종모우 도입 및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여 젓소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우균능력검정과 젓소 후대검정 연계추진
 - 국내 우량종빈우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생산
 - 당·후대검정을 통한 우량종모우 선발과 도입, 확보된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및 정액생산공급
- 유우균능력검정은 검정소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두당 일정액 보조지원
 - '97년도 두당 월별보조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액하여 10년후에는 자담으로 전환
 - 정확한 개체능력 조사 및 기록유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2	2	2	2		
사업비	계	28,211백만원	6,542	6,447	6,368		
	보조	24,611	6,542	6,447	6,368		
	용자 지방비 자부담	3,60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유우군산유능력검정
 -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 축협중앙회장은 검정희망 검정소 및 농가에 대하여 "젓소산유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축정 51530-823, '96.12.9)상의 구비요건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정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각 검정소장은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설명 및 경영지도
-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젓소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숫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암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심사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유능력검정으로 보증종모우 선발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양축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 유우군능력검정 : 연간 두당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 젓소정액생산공급 : 시설, 검정축구입, 인건비 및 재료비등 지원
- 지원대상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축발기금보조(기금사업비, 고정자산비)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6,368	6,368	6,368			
○ 산유능력검정	70천두	2,520	2,520	2,520			
○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1개소	3,848	3,848	3,848			
- 기금사업비		2,806	2,806	2,806			
- 고정자산비		1,042	1,042	1,04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
- 협조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전화 0344-965-9587)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축협중앙회장은 유우군산유능력검정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및 검정항목 : 젖소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19호, '97.3.6)과 젖소산유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실시
-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농가사양관리 및 경영개선지도등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대상 : 검정업무를 수행중인 단체등 검정소
- 지원조건 : 검정우 두당 년 36천원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 ※ 단, '97년도 월간 두당보조금(3,700원)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축하여 10년 후에는 자부담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획적인 사업참여 및 추진유도
- 지원방법 : 각 검정소 검정결과 검정성적 통보서상의 검정두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두당 36천원을 월별(월 3,000원) 분할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 : 검정에 참여되는 등록우 전 개체
- 보조금 지급제외대상 :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검정이 실시된 후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 ※ 단, 질병치료, 품평회등 공식행사 참여 및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월에 검정이 안될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중지우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허용

- 축협중앙회장은 젖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사업추진방법 > (별표 1)

- 당대·후대검정 기간 및 방법

- 젖소능력검정기관 : 축협중앙회 젖소개량부
- 검정방법 : 젖소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19호, '97.3.6)에 의하여 실시

- 당대검정

- 검정목표 : 당대검정 30두, 후보종모우 선발 15두
- 당대검정축 확보 : 고능력 정액도입 및 수정란에 의한 국내 송아지생산 매입과 낙농선진국의 Young Bull도입 확보
- 후보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점수, 발육상태, 정액 성상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젖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 후대검정

- 검정목표 : 보증종모우 선발 3두
- 후대검정용 낭우(검정대상축) 확보 : 젖소산유능력 검정우를 활용한 계획 교배를 통하여 생산·확보하고 축산기술연구소와 도 종축장은 각각 독립된 축군(Herd)으로 간주
- 보증종모우 선발 : 가축개량 협의회(젖소분과위원회) 자문 및 후대검정성 적, 외모심사 점수등을 종합한 유전능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선발

- 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선발된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및 공급

- 축협중앙회장은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송아지(이모색, 유전적결함등)생산 여부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민원방지

< 사업비 지원방법 >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집행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은 연간 산유능력검정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각 검정소, 관련 기관등에 배포
- 축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
 - 젓소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19호, '97.3.6)에 의거 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능력검정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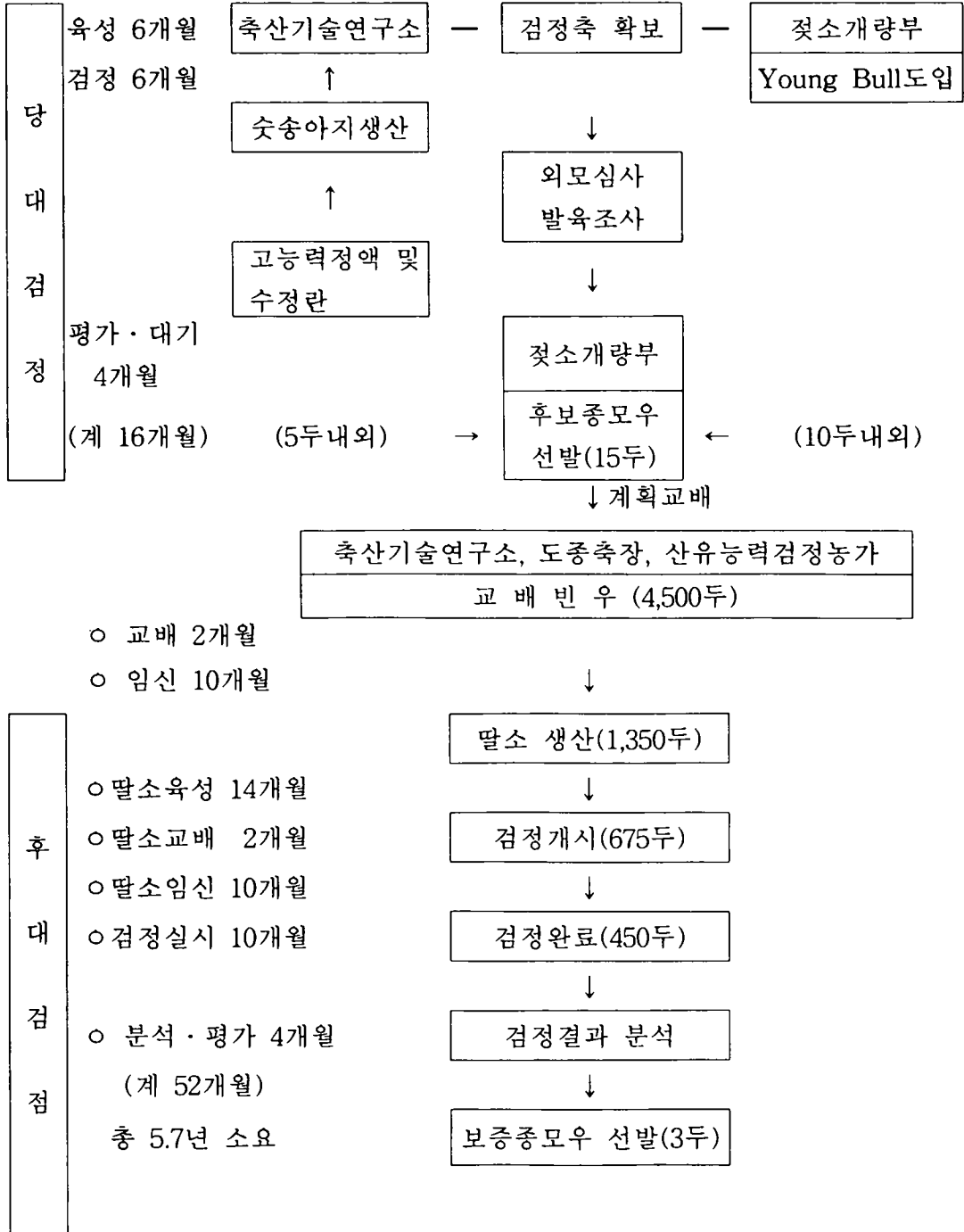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조합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축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9세부사업추진계획서 : '99.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완료후 1개월이내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 선발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총괄기관장은 농가지원내역에 대한 검정 및 정산실시

[별표 1]

< 단계별, 기관별 사업추진방법 >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유우군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단 위	평가구분	계획 (A)	2/4 분기까지		진 도 (%)	
				계획 (B)	실적 (C)	C/B	C/A
○ 검정소 운영	개소	사업량					
○ 검정원	명						
○ 검정농가	호						
○ 검정두수	두						

〈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 (A)	보 조	용 자	합계 (B)	보 조	용 자	
젓소산유능력검정							

* 검정성적 분석후 보조금 정산처리하므로 보조금 집행이 익월에 처리됨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3. 향후과제

젓소후대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단 위	평가구분	계획 (A)	2/4 분기까지		진 도 (%)	
				계획 (B)	실적 (C)	C/B	C/A
1. 후보종모우 확보							
o 정액도입	st	사업량					
o 수정란 도입	"						
o 종빈우 교배	두						
o 수정란 이식	"						
o 후보우 확보	"						
2. 후대검정							
o 후보우 선발	"						
o 빈우 선정	"						
o 낭우 생산	"						
o 검정두수	"						
o 보증종모우선발	"						
3. 정액생산 공급							
o 종모우사육	"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 종모우 도입	"						
o 정액생산	천st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o 정액공급							

<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도 (B/A)
	합계 (A)	보 조	응 자	합계 (B)	보 조	응 자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향후과제

Ⅲ. 돼지개량사업

1. 목 적

- 종돈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의 생산·공급으로 질병피해 방지
- 고능력 종돈의 인공수정 활용으로 우수유전자 보급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능력검정
 - 검정소 검정, 농장검정 병행 추진
 - 종돈의 경우 격리조기이유(SEW)방식 도입 추진
 -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돈 선발 보급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공정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돈구입 편의 증진
 - 능력검정결과 우수종돈의 정액처리업체 활용 유도
- 전문종돈업육성
 - 원종돈(GGP)농장과 종돈(GP)농장의 분리 및 상호연계로 전문성 제고
 -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Site)으로 질병감염기회 차단
 - 2000년대 종돈소요 두수의 40% 수준을 전문종돈업체에서 생산·공급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2	2	2	2		
사업비	계	9,420백만원	19,614	12,954	25,547		
	보조	1,673	246	362	263		
	용자 자부담	7,747	19,368	12,592	25,284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능력검정

- 시·도지사에 종돈장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 종돈의 격리조기이유(SEW)병행 실시로 청정돈 공급
- '99년도 검정계획
 - 종돈 : 검정소 검정 4,680두(격리조기이유 : 2,400두)
 - 농장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 전문종돈업육성 내용

- 종돈사육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원종돈(GGP)농장을 운영하면서 계약된 종돈(GP)농장에게 GP종돈을 공급하는 한편,
- 사양관리, 개량관리, 위생관리등을 협의·지도하므로써 능력이 우수하고 위생 수준이 높은 종돈 및 모돈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농장
- 정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종돈업 등록업체중에서 원종돈농장을 선정하고 이들과 GP종돈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2~3Site)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유형
 - 원종돈(GGP)농장 : (I형) 모계·부계 동시사육
(II형) 모계만 사육하고 부계는 계약 또는 수입충당
 - 종돈(GP)농장 : (I형) 1인이 2~3Site 단독 경영
(II형) 다수인이 각각의 Site를 분담 경영
- 의무사항
 - 각각의 원종돈농장 및 종돈농장은 별도로 격리된 2단계 또는 3단계 분리사육(2~3Site)을 하여야 하며 자돈의 이유시기는 가급적 생후 2주령 이내로 하여 모체감염 방지
 - 원종돈농장은 종돈관리전산시스템 도입 및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종돈농장에 종돈관리, 위생관리 및 사양관리 기술지도 실시
 - 종돈농장은 질병오염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종돈농장이 종돈공급을 할 수 없는한 계약기간중에는 원종돈농장으로부터 종돈공급을 받아야함
 - 원종돈 및 종돈농장은 하이브리드(Hybrid)종돈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육성돈사의 일부에 검정시설을 갖추어 생산된 자돈에 대해서 검정소 검정 또는 농장검정을 받아야함

(2) 지원내용

○ 능력검정

- 검정소 검정시설 및 장비등 지원
- 돼지정액처리업체에서 검정소 및 농장검정돈을 구매할 경우 낙찰가격의 10% 지원
- 지원대상 : (사)대한양돈협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 종돈검정소 : 검정소 시설 및 개보수 사업비보조
 - 고능력 인공수정활용 검정돈 낙찰가격(농장검정돈 구입비)의 10% 보조

○ 전문종돈업육성

- 격리조기이유(SEW)방식도입 및 자돈, 육성돈, 성돈의 분리사육(2~3Site)을 위한 돈사건축비에 한하여 축발기금 융자 지원
 - 기존돈사 활용시에는 지원단가 80%이내에서 내부구조 개보수비 지원
 - ※ 분뇨처리시설비는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신청시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부지구입비, 원종돈 및 종돈구입비, 부대시설등은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선정된 전문종돈업육성 사업대상자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0% 융자, 30% 자부담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농장별 융자액 산정
 - 농장별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한 종모돈, 종빈돈, 후보돈, 육성돈, 자돈의 상시사육두수를 확정하고 두당 융자액 적용
 - 두당 융자지원액

	종모돈, 종빈돈, 후보돈	육성돈	자돈
당초 ('96~'97)	1,700천원	192 (230)	219
조정('98~2000)	1,938	219 (262)	250

※ ()내는 원종돈(GGP)농장분임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계	보조	융자			
계		36,383	25,547	263	25,284		10,836	
○ 돼지능력검정	4,680두	263	263	263	-		-	
○ 전문종돈업육성	34 개소	36,120	25,284	-	25,284		10,83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 능력검정
- 시·도지사 : 전문종돈업육성
 -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사업장시설(Site시설)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선정된 사업 대상자의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주관기관이 됨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전문종돈업육성
 - (사)대한양돈협회 : 돼지능력검정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시·도 축산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대한양돈협회(전화 : 협회 02-553-3942, 제1검정소 0336-32-2426)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한양돈협회장은 연간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돼지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20호, '97.3.6)에 의하여 실시
- 전문종돈업육성
 - 농림부(사업총괄 및 예산확보) → 시·도(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및 축산기술연구소(사업추진상황 점검·지도 및 평가) → 사업대상자(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축협중앙회(자금지원 및 관리)

(3) 사업비 지원방법

- 능력검정
 - 검정시설 및 장비등 사업비 지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이 보조금 지원
 - 대한양돈협회 검정소 검정 및 농장검정을 필한 고능력종돈 인공수정 활용 지원
 - 돼지정액처리 허가업체는 낙찰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종돈 인수
 - 양돈협회가 일괄하여 매월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관련서류(구매계약서, 농장검정 또는 검정소검정능력확인서등) 확인을 받아 축협중앙회장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전문종돈업육성

- 자금지원기간 : '96~2000년(5년간)
- 선정된 농장별 총융자액은 3~4년에 걸쳐 분할지원을 원칙으로 함
 -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단, '96사업대상자는 4개년에 걸쳐 분할 지원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30%, 4년차 20%)
 - 축정 51530-609('97.9.8)호로 시달한 보완대책에 의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 승인한 세부사업추진계획서상의 연도별 농장별 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
융자금 확보 지원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집행된 융자액의 타용도 사용,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대상자(개별농장 기준)가 사업초년도말까지 부지확보 및 축사
건축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
 - 배정된 융자금의 불용조치 및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농장 선정
불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돈검정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품종별 검정성적 공표
- 종돈 검정성적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고 혈통에 명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 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 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 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 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 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 수처분할 수 있음

○ 전문중돈업 육성사업 사후관리지침

< 사후관리기관 >

- 농림부 : 사업총괄, 소요예산 확보 및 자금지원
- 축산기술연구소 : 세부사업추진계획 승인, 중돈개량체계 확립등 기술적사항
- 도지사 : 사업관리, 사업추진진도 확인·점검, 각종 인허가등 행정적 사항

< 사후관리기간 >

-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대상자 확정일부터 사업완료후 5년간
- 도지사 :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 사업대상자의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변경 승인 >

- 선정된 사업대상자(GP농장을 포함하며 이하같은)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소, 사업량, 사업비(융자금 포함), 융자금 소요시기등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세부사업추진계획서(당초 승인된 계획서 참고)를 수립하여 축산기술연구소장(종축개량부)에게 승인 요청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당초 승인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원종돈농장 및 종돈농장)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전문중돈업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등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그룹별 GGP농장, GP농장별로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변경 승인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한후 GP농장 및 GP농장의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도지사와 농림부 및 사업대상자에게 변경 승인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서 1부를 송부

< 소요예산 확보, 배정 및 자금집행 >

-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년차별 소요예산은 기 승인된 세부사업추진계획서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 추진
- 농림부장관은 기 승인된 세부사업추진계획서상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분기별, 월별 자금집행계획 및 사업대상자별 자금배정내역을 축협중앙회장 및 사업대상자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
- 기 승인된 세부사업추진계획서상의 '98사업대상그룹의 사업대상자는 부지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사실확인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서와 비교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진도를 사업대상자 및 자금대출 기관에 통보하여 원활한 융자금 대출이 되도록 조치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조치 >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애로사항등이 포함된 " 전문종돈업육성사업 추진실적보고 " 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상기 서식에 의거 매분기 실적을 익월말까지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사업완료후 5년동안 년 1회이상 사업대상그룹별로 기 승인된 세부사업추진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이행 여부, 종돈개량 및 질병방역체계확립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지도 실시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집행된 용자액의 타용도 사용,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액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사업대상자 대표 및 도·시군 축산과장, 축협중앙회, 종돈개량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추진협의회 " 운영
- 동 협의회는 추진방향 설정, 애로사항 해소, 종돈개량 촉진, 질병방역등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여 사업대상자 지도등 필요한 조치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세부사후관리지침을 수립·작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시행

나. 보 고(대한양돈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전문종돈업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9세부사업추진계획서 : '99.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지원사업이 완료될 경우 완료보고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서식에 의거 사업검정 및 정산실시

돼지능력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o. 검정소 검정 (sew 검정) o. 농장검정 - 양돈협회 - 종개협	두 " " "	사업량					

<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돼지 능력검정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향후과제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 및 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소계 ○○○ ○○○						거래처등 기타필요한 사항
○○○○	소계 ○○○ ○○○						
○○○○	소계 ○○○ ○○○						
합 계							

IV. 닭개량사업

1. 목 적

- 종계의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지표 제공
-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검정소 검정 및 일반검정 병행 추진
 -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계의 선발 보급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공정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계구입 편익 증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1	1	1	1		
사업비	계	1,378백만원	301	246	173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1,378	301	246	173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도지사에게 종계장 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 및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
 - '99년도 검정계획 :
 - 검정소 검정 42,480수(산란계 30,000, 육용계 12,480)
 - 농장검정 및 종계일반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 검정소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등 지원
 - 지원대상 : (사)대한양계협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 검정사료비, 시설 및 장비등 검정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42,480수	173	173	173			
○ 닭능력검정	42,480수	173	173	173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 능력검정
- 사업시행기관 : (사)대한양계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시·도 축산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대한양계협회(전화 : 협회 02-588-7561, 검정소 0334-675-7139)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한양계협회장은 연간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닭검정요령(농림부 고시 제97-21호, '973.6)에 의하여 실시

(3) 사업비 지원방법

- 양계협회의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닭능력검정에 한함)등 사업비 지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축협중앙회장이 보조금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계검정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계종별 검정성적 공표
- 종돈 검정성적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고 혈통에 명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 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 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9세부사업추진계획서 : '99.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총괄기관장은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한 검정 및 정산실시

닭경제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o 검정수수	수	사업량					
- 육용계	"						
- 산란계	"						

<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닭 능력검정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향후과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최상태, 사무관 노수현)입니다.

1. 목 적

- 우량종축의 혈통보존 및 활용도 제고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보급 확대를 통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에 대한 농가 인식도 제고
- 가축개량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축등록
 - 종축의 등록, 심사 및 검정사업 확대 추진
 -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개량교육·지도 강화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소 수정란 생산·이식 및 가축인공수정기술 교육
 - 가축인공수정기술 향상을 위한 수정사 보수교육
 - 능력검정관련 기술 교육 등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진흥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 가축의 혈통·능력·체형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등록
- 축산법 제15조(가축의 인공수정) 및 제17조(수정사의 교육)
- 축산법 제57조(자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99년	2000~2004
사업량		2	2	2	2		
사업비	계	4,440백만원	1,444	825	535		
	보조	4,090	1,076	825	535		
	용자 지방비 자부담	350	368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등록, 심사, 검정 및 부대사업 추진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수정란생산·이식기술교육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교육
 - 기타 개량총괄기관에서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지원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등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비등 소요자금중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지원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성비용등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종축등록)
 축협중앙회(수정란생산·이식,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기타)
 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35	535	535			
○종축등록	1개소	287	287	287			
○가축개량기술교육		248	248	248			
- 수정사보수교육	700명	33	33	33			
- 수정란생산·이식	110	47	47	47			
- 돼지인공수정교육	100	25	25	25			
- 자가인공수정	360	143	143	143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등록

- 축협중앙회 : 수정란생산·이식,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기타

- 가축인공수정사협회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협조기관 : 각 도지사(소 자가인공수정기술교육), 축산기술연구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7-580-3330)

○ 시·도 축산과, 도 종축장

○ 축협중앙회 가축개량본부(전화 0455-63-8635), 축산경영지원부(전화 02-224-8433)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전화 02-586-9408)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종축등록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사업시행기관장은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99년도 교육계획

사업명	교육대상자	교육인원(명)	교육기간
○가축인공수정사보수교육	○축산법 제1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소속 수정사	700	1회 8시간이상
○수정란생산·이식기술교육	○양축농가, 수정사, 수의사, 축산공무원등	110	1회 5일이상 1회 30일이상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전업규모 소사육농가	360	1회 40시간이상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양축농가, 수정사, 수의사, 축산공무원	100	1회 4일이상

(2) 사업추진방법

○ 종축등록

- 축종별 종축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하여 실시
 - 등록요원, 등록물량 확대에 필요한 위축등록요원 확보
 - 위축등록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및 등록업무 교육
- 종축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바코드 귀표번호로 대체
 - 외국에서 도입된 정액 또는 종축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선대 혈통은 외국의 종축등록번호를 사용
 - 바코드 귀표장착을 거부하는 농가의 소는 종축등록대상에서 제외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 가축인공수정사는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의 교육통지에 의거 매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함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교육과정, 교육이수증, 관련서류등 교육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함
- 수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할 때에는 교육장소, 시간등 교육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일 이전 1개월까지 교육대상자('99정기대상자, '98교육연기 및 불참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함
-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교육이수자가 소속된 정액등처리업체 및 가축인공수정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육이수자 명단을 통보하여야함

- 수정란생산 및 이식 기술교육

- 교육시행기관 및 협조기관장은 세부교육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교육계획 홍보를 통한 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함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축산기술연구소장 또는 축협중앙회장이 교육이수증 발급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 축협중앙회장은 도지사와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용역계약 체결
- 도지사는 교육계획 홍보 및 교육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함
- 각 도지사가 요청하는 교육용기자재는 품목, 수량등을 축협중앙회장이 일괄 구매하여 도지사에게 위탁관리

- 교육실습용 한우암소(경산우)는 교육생 3명당 1두를 교육개시전까지 축협중앙회장이 구입하여 도지사에게 위탁하고 당년도 최종 교육이 완료된 때에 도지사는 축협중앙회장에게 반환하며 반환된 한우는 축협중앙회장이 판매하여 축발기금에 납입
- 교육회당 15명씩 년 40시간이상(강의 10, 실습 30)실시하되, 교육담당은 강의의 경우 대학등 외래강사, 실습은 내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교육시기는 효과적인 교육실시 및 성과거양을 위하여 가급적 혹서기 및 혹한기를 피하여 실시
- 축협중앙회장은 도종축장의 교육시작이전에 교제제작배포
- 도별 자가 인공수정기술 교육계획 및 소요예산

	년간교육인원 (명)	교육회수 (회)	소요예산
경 기	30	2	14
강 원	45	3	17
충 북	30	2	14
충 남	90	6	27
전 북	30	2	14
전 남	60	4	21
경 북	45	3	17
경 남	-	-	-
제 주	30	2	14
축 협			5
계	360	24	143

(3) 사업비 지원방법

- 종축등록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교육비용은 교육예정인원 및 예산단가에 의거 분기별로 개산불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에 정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축등록
 - 등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교육으로 등록종축의 활용도 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계획교배방법 및 필요성, 종축의 이동신고 및 등록증의 인수인계 등
- 정액혈통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실태조사·지도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회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함
-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교육이수증 발급대상등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함
 - 대상자의 최근 2년간 교육이수 및 연기여부가 표시되어야함
-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축협중앙회장은 가축개량관련 기술교육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등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교육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 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조합 또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사업시행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99세부사업추진계획서 : '99.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총괄기관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정 및 정산실시

종축등록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1. 등록							
o 한우	두	사업량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o 젖소	"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o 돼지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2. 심사	"						
o 한우	"						
o 젖소	"						
o 돼지	"						
3. 한우 번식능력 및 발육조사	"						
4. 종돈F1 증명	"						

<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응 자	합계(B)	보 조	응 자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향후과제

가축개량신기술보급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사업량					

< 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3. 향후과제